

建築

大韓建築士協會誌 JULY 1985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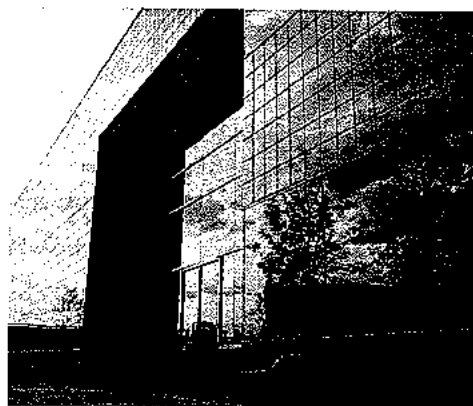
1985. 7



세계는 지금 대형타일의 시대!

삼영정보타일은 종전의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대형 타일을 국내최초로 삼영요업에서 개발시판하여 우수한 대형타일의 새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 자기질 내한성 타일로서 혹한에도 동파현상이 없습니다.
-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나 비위생적인 곰팡이나 잡균·벌레의 서식을 막아주므로 주거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해줍니다.



(280mm×300mm) 리모델링공사에 예

- 규격이 균일하여 시공이 정확하며 시공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P·C 공법이 용이합니다.
- 천연 화강석, 대리석의 대체효과가 높은 고급건축자재이며, 세계적인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진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은 미를 추구하는 당신에게 큰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 수입대형타일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150×150mm, 144×194mm, 200×200mm
200×300mm, 300×300mm, 400×400mm
300×600mm,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300×600mm,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타일증합메이커

삼영요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02) 757-2295~6

부산사무소 ☎ (051) 44-6390, 463-6390

공 장 : 경남 김해군 진영읍 하계리

☎ (0525) 5-2017-3792

[illegible]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7月 15日 発行

1985.7 NO.196

目次

發行人 = 吳雄鎬
編輯 = 出版事業部

編輯委員會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全麟
委員 姜哲求
委員 金琪禎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02)交 581-5711(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第라-1251
登錄日字 = 1967年3月23日
U. D. C.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全允珪
(洸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 一. 建築士는 建築의 藝術, 實用人으로서 社會力을 發揮하여 建築環境을 創造하여 나가기 위하여,
- 一.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의 義務을 履行한다,
- 一. 建築士는 技術的, 經濟的, 社會的 的의 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사한다,
- 一. 建築士는 公道와 信義를 바탕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同하여 榮譽과 信譽를 保持한다,
- 一. 建築士는 科學과 自然을 가지고 環境의 改善이 되어 國家와 社會에 貢獻的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표지설명 : 금성사(주) 평택공장 공용회관
●설계 : 간삼건축사사무소 사진 : 정정웅

회원작품

- 성심여자대학지하성당
강석원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 금성사(주) 평택공장 식당동
간삼건축사사무소
- 금성사(주) 평택공장 공용회관
간삼건축사사무소
- 용진빌딩
표상관 / 표상관건축사사무소
- 백이빌딩
조구현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 평창동 J씨댁
서진우 / 건축사사무소 하나

회원 PLAZA

- 22 ● 협회소식
- 24 ● 지부소식
- 30 ● 지부순례 ㉠ / 충청북도지부편
- 52 ● 일하며 생각하며 / 김기석, 김영수
- 77 ● 정화칼럼 / 권도웅
- 33 ● 특집 / '88서울올림픽선수촌 · 기자촌 국제현상설계당선작
 - 최우수당선작 (1점)
 - 황일인 · 우규승 계획안
 - 가작 (2점)
 - 신동해 · 강기효 · 이경주 · 김병현 계획안
 - 박홍길 · 양재현 · 안건혁 계획안
 - 입선 (8점)
 - 조성룡 · 문정일 · 이종상 계획안
 - 김창수 · 박 승 계획안
 - 유춘수 계획안
 - 김종업 계획안
 - 이영희 계획안
 - 이규창 · 김영일 계획안

연구논문

- 54 ● 인테리어 디자인 · 부엌 / 조성룡
- 58 ● 외부환경설계 · 옥상정원 / 최기수
- 62 ● 한국설계경기의 문제점 / 박영건
- 66 ● 건축과 환경조각 / 안영배
- 70 ● 한국현대건축의 기본방향 / 조영무
- 74 ● 창조공간의 도전 / 한도룡
- ✓ 78 ● 황금비의 극치 이조가구 / 배만실

자료·기타

- 80 ● 건축사법 시행령중 개정령
- 82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개정령
- 85 ● 건축계 뉴스
- 86 ● 회원동정
- 88 ● 하와이 LOA 대학에 대한 국제설계현상모집
- 90 ● 도서신고면적변동추세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6 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第三의 물결

이 강 식

본회 감사 (주)완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전에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사무자동화기기 전시회를 둘러보고 날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을 실감한바 있었다. 1년전 전시회에서는 별로 볼수 없었던 캐드캠(CAD/CAM) 시스템을 경쟁하듯 많은 회사들이 출품하고 있었다.

2년전 전임 윤 옥 감사님과 지부감사를 다니다 찻간에서 「제삼의 물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침 감사출장이 임기만료에 즈음한 감사라하여 헤어지는 선물로 「제3의 물결」 책자를 선물받게 되었다. 이책을 읽다가 컴퓨터가 우리생활에 파급될 것을 공감하게 되었고 마침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8비트 퍼스널컴퓨터가 개발되어 한창 시판 중 이었다.

이에 흥미를 느껴 컴퓨터 월간지를 몇달 보고 16비트 컴퓨터와 우리가 이용할 주변 기기가 개발 시판되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간 베이직이나 익히자고 8비트 애플기종을 구입 틈틈이 그래픽을 즐겨 왔다. 즐기다 보니 그러는 속도가 너무 느려 빠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그결과 기계에서 브루틴을 이용하면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내친김에 어셈블리를 배우게 되었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16진수를 피엠피엠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내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분석하며 이용하는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려면 요원해야 함을 느끼고 있던차 이번 전시회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명령만 내리면 자동제도가(프러터)가 무엇이든 그려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베이직이나 어셈블리를 알 필요조차 없이 명령선택에서 골라 「문을 그려라」, 「창을 그려라」하고 몇가지 조작만 할 수 있으면 족하다.

국내에서 이를 시도하는데가 몇군데 아니되고 소프트웨어도 구하기가 어려웠

던 것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간 나는 우리 주변의 정보에 밝지 못했으랴 아니라 기계라는 거부반응이라든가 고가의 설치비용 등등으로 인하여 인간적이지 아닌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다. 허나 이번전시회를 통하여 이 개념이 무너졌다. 컴퓨터는 우리의 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이용가치가 많은 도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에서는 건축사가 계획을하고, 모형을 만들어 보고, 예술의창조, 기계 전기적인 기능을 고려, 계획안을 확정한다음 컴퓨터이용 회사에 실시설계를 의뢰하면 컴퓨터로 구조계산, 도면, 물량, 내역 공정표까지 작성하여 일괄 납품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번 사법시행령의 변경에서도 건축사보는 몇명이상이어야 하고 건축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야만 하는지? 그에 따라서는 법령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너무나주 바뀌는 법령은 법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이번 사무소 등록갱신에도 큰 도시에서는 그런대로 건축사보를 구하기 순조롭지만 지방에서는 그 지방에 모자라는 건축사보를 타지방에서 모셔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조건이 상반되어 논란의 요소가 된다.

가뜩이나 요즈음 졸업생들은 건축사무소에 가면 빚일을 받듯듯이 하고 급여는 쥐꼬리만큼 밖에 받지못한다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배워야할 것이 허다하다. 또한 졸업후 건축사보로 바로 되는것이 아니라 졸업후 몇년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자라 건축사가 되는데 그나마 건축사면허를 따려면 그 경력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어서 면허를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것이다. 더구나 지방에서 오라하면 자기자신 앞날의 발전을 생각하여 망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해서 지방에서는 건축사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 고생끝에 면허를 득하였다 하자. 건축사는 주어진책임, 자신이 원한 책임이 아닌 책임 등등 부여된 책임에 짓눌려 위축된 속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책임에 쫓기다 짜증내는 건축사에게 면허소지 건축사보가 새로운 사무실 개설자로 등장하여 고객유치의 경쟁자로 경쟁하게되며, 받는입장에서 주어야하는 입장에 서며 사무소 운영유지라는 주어진 책임에 허덕이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쫓고 쫓기는 악순환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였으면 말걸줄 아는 여건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열량이 많으면 자연히 건축사보를 두사람 아닌 수십사람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이 적을 때에는 최소의 사람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한계선을 그어 뜻을 막고 이에 준하게하니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현등록개설한 건축사의 평균연령은 40대로서 이들은 6.25를 통하여 고생이라는것을 알고 살아 왔으며 작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알지못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전후세대인 건축사보에 해당되는 연령층은 어려움게 처리하는것을 피하며 쉽게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고생으로 생겨진 결과의 진가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자기일생을 망칠 수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마저 든다. 노력의 끝에 얻는 결과에 회의를 느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기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건축계를 이끌고 나아갈 참된 일꾼이 되어줄 것을 믿는다. 사무소마다 급속히 발전하여 자동제도가앞에 여사무원이 작동을 감시하며 펜에 먹물을 갈아끼우며 웃으면서 밤늦게 일하는 모습이 착각이 아니기를 바란다.

회 원 작 품

성심여자대학 지하성당
SUB SANCTUARY OF THE SACRED HEART
WOMEN UNIVERSITY

강 석 원
건축사무소 그룹가

금성사(주) 평택공장 식당동
THE GOLDSTAR CO., LTD
DINING HALL OF PYUNG TAIK FACTORY

간삼건축사 사무소

금성사(주) 평택공장 공용회관
THE GOLDSTAR CO., LTD
COMMUNITY CENTRE OF PYUNG TAIK FACTORY

간삼건축사 사무소

용진빌딩
YONG JIN BUILDING

표 상 권
표상권건축사사무소

백이빌딩
BAEK-YEE BUILDING

조 구 현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평창동 J씨댁
PYEONGCHANG-DONG J'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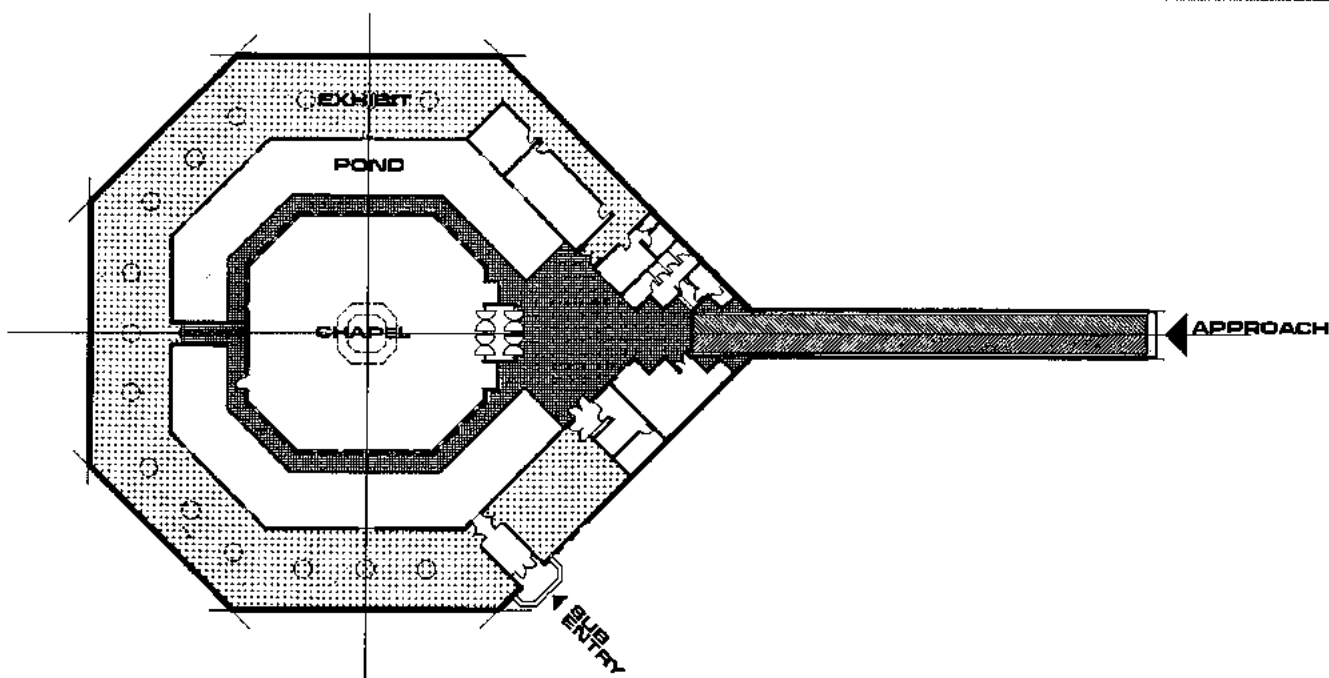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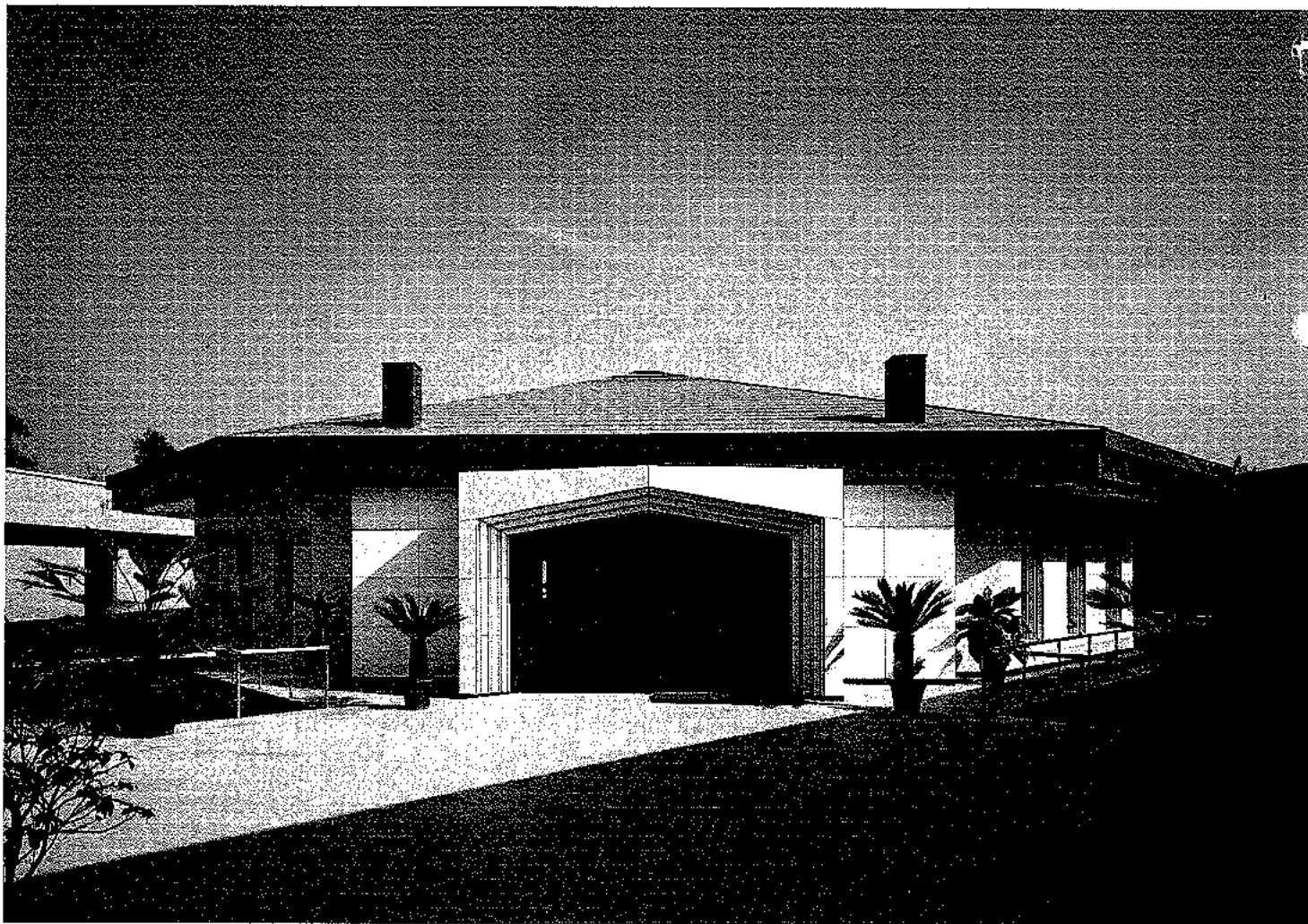
서 진 우
건축사사무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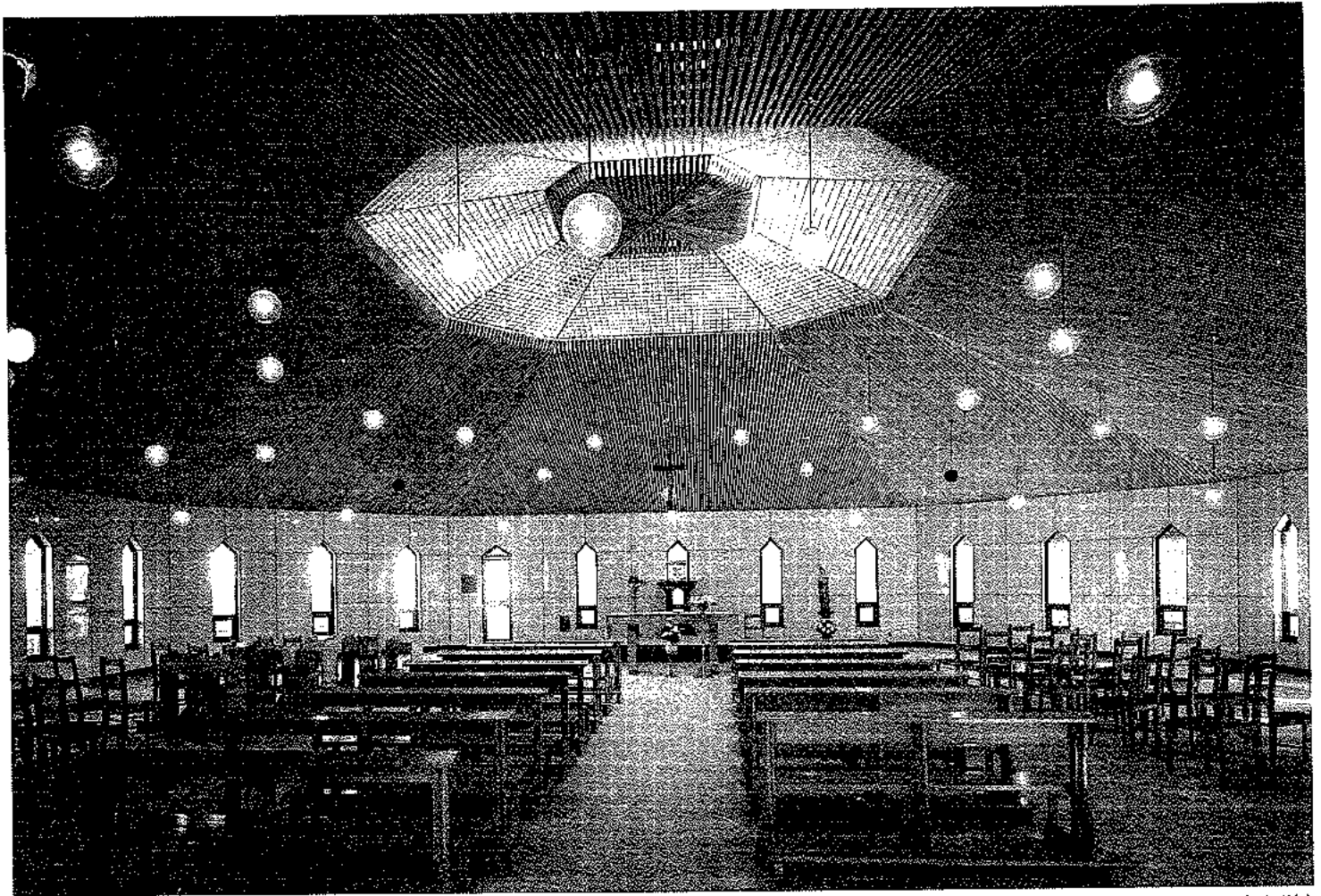
성심여자대학 지하성당

SUB SANCTUARY OF THE SACRED HEART
WOMEN UNIVERSITY

강석원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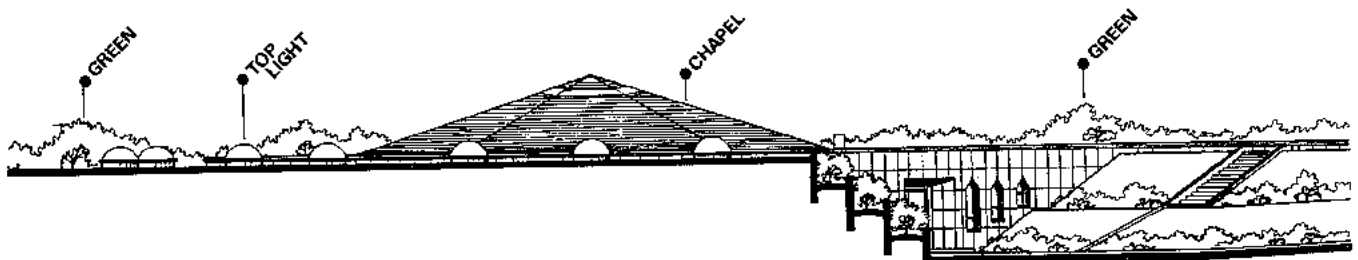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대지면적 : 244, 625㎡
○건축면적 : 340. 52㎡
○연 면 적 : 1, 184. 74㎡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절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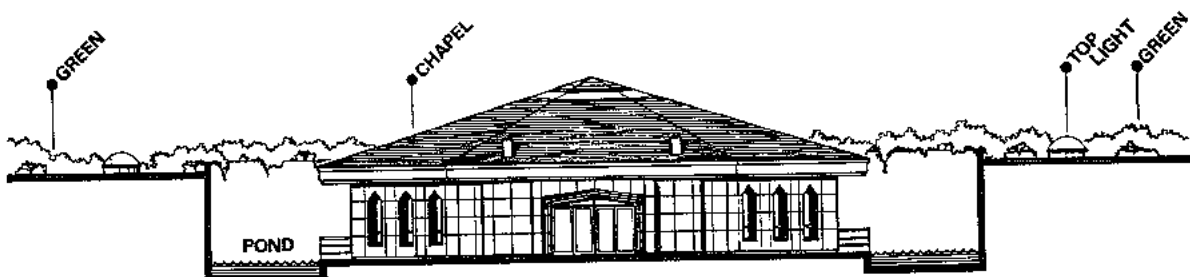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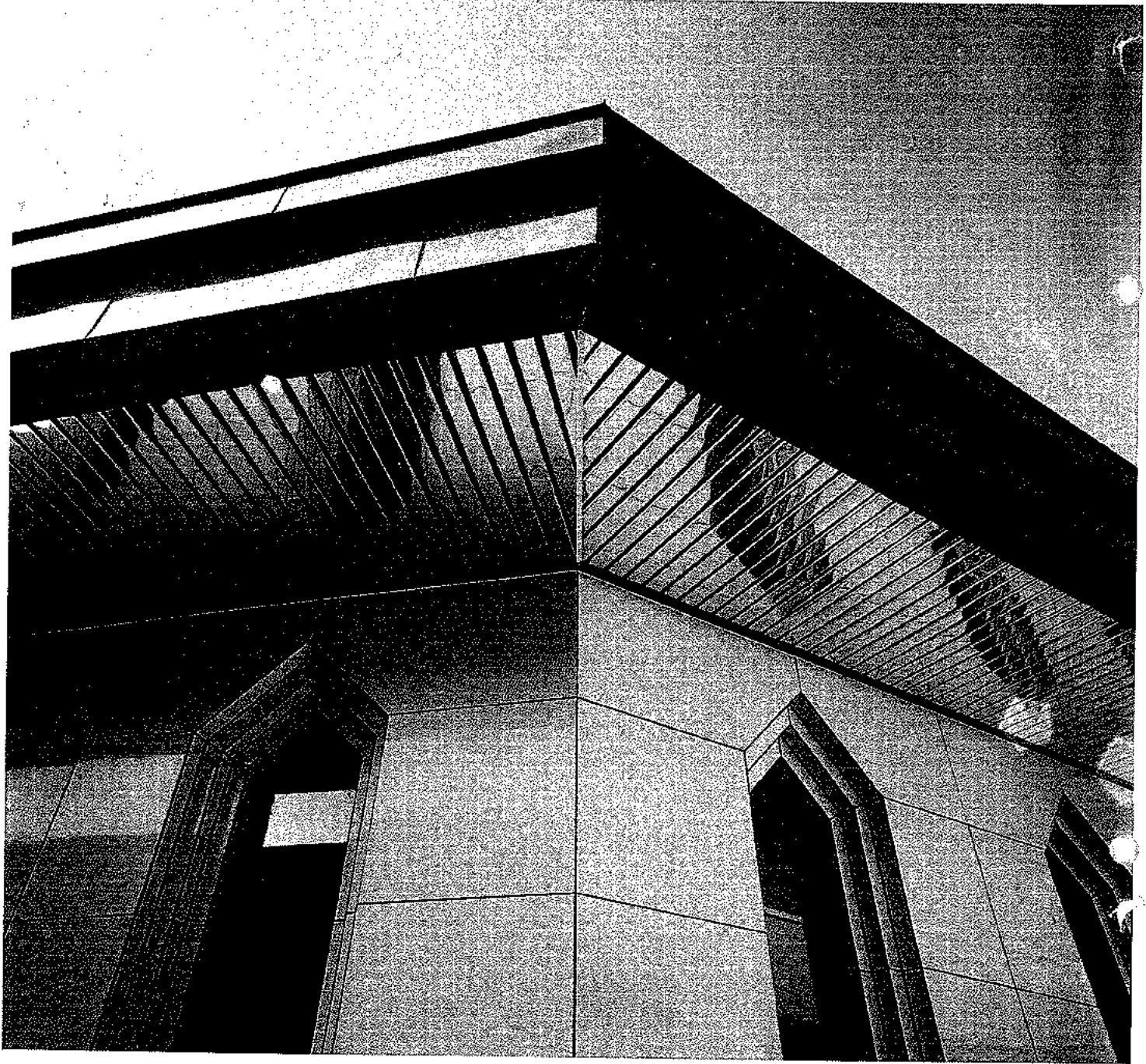
성당내부

● SIDE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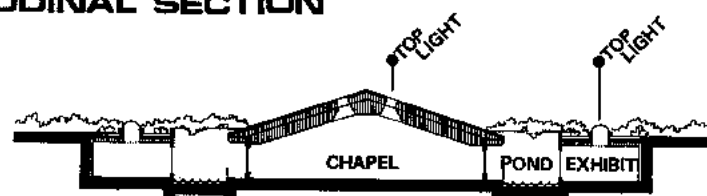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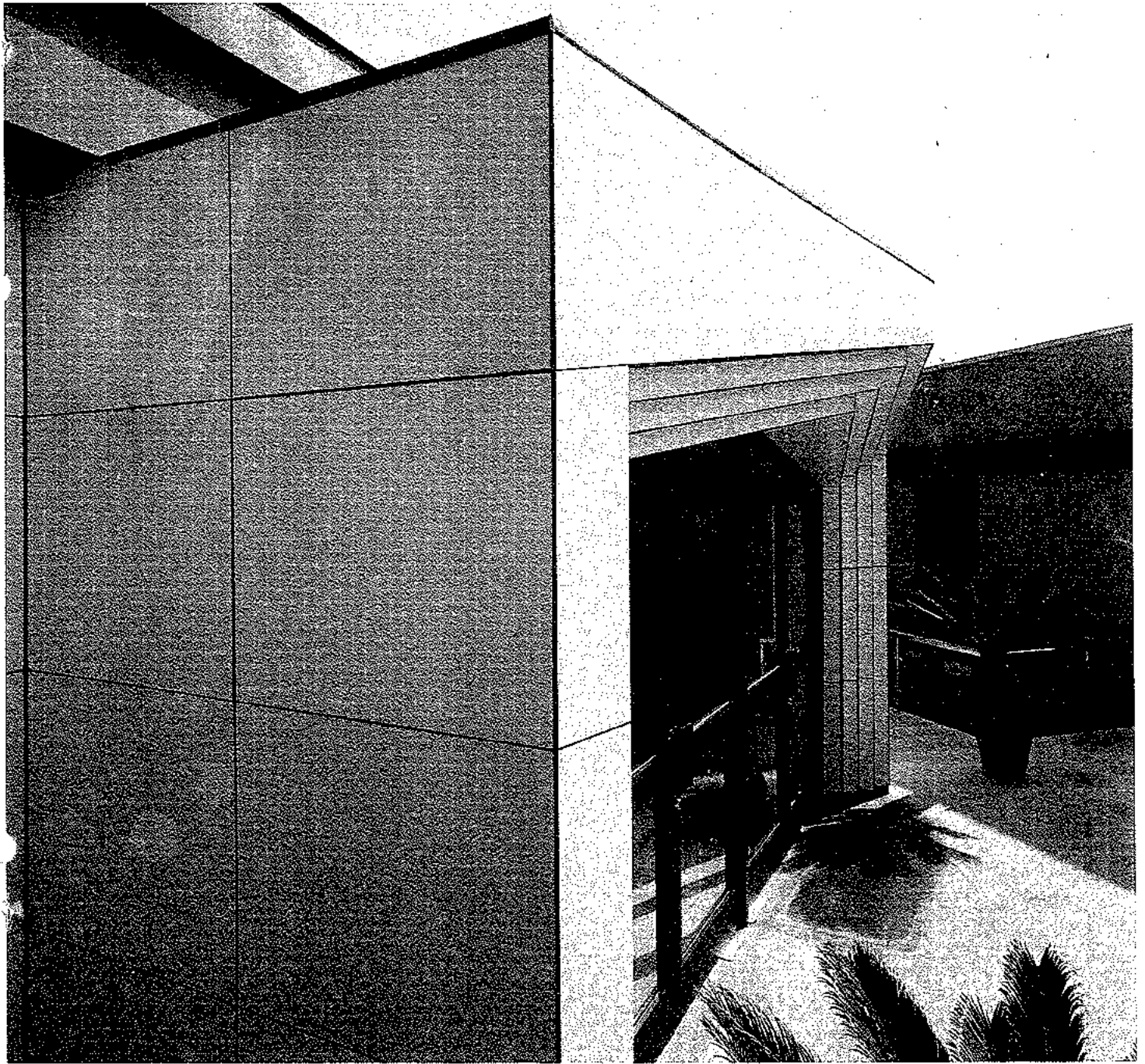
● FRON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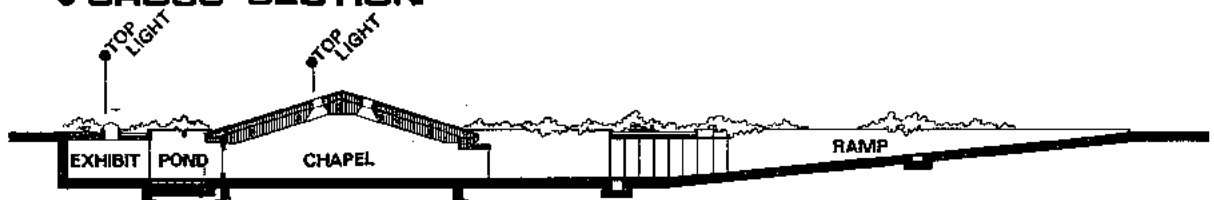


● LONGITUDINAL SECTION





● CROSS SECTION



금성사(주)평택공장 식당동

THE GOLDSTAR CO., LTD DINING HALL OF
PYUNG TAIK FACTORY

(주)간삼건축연구소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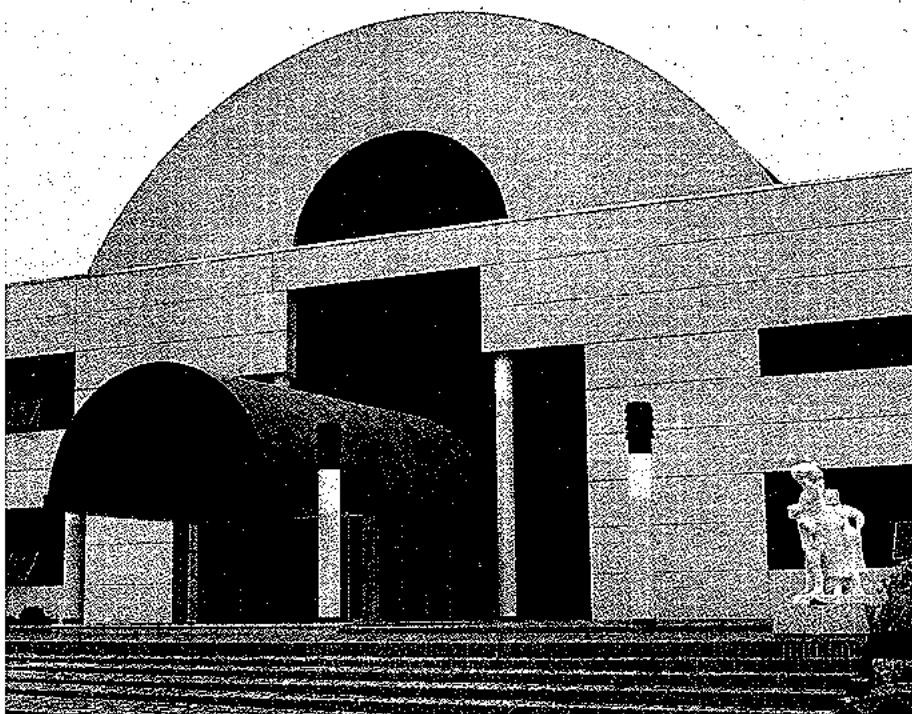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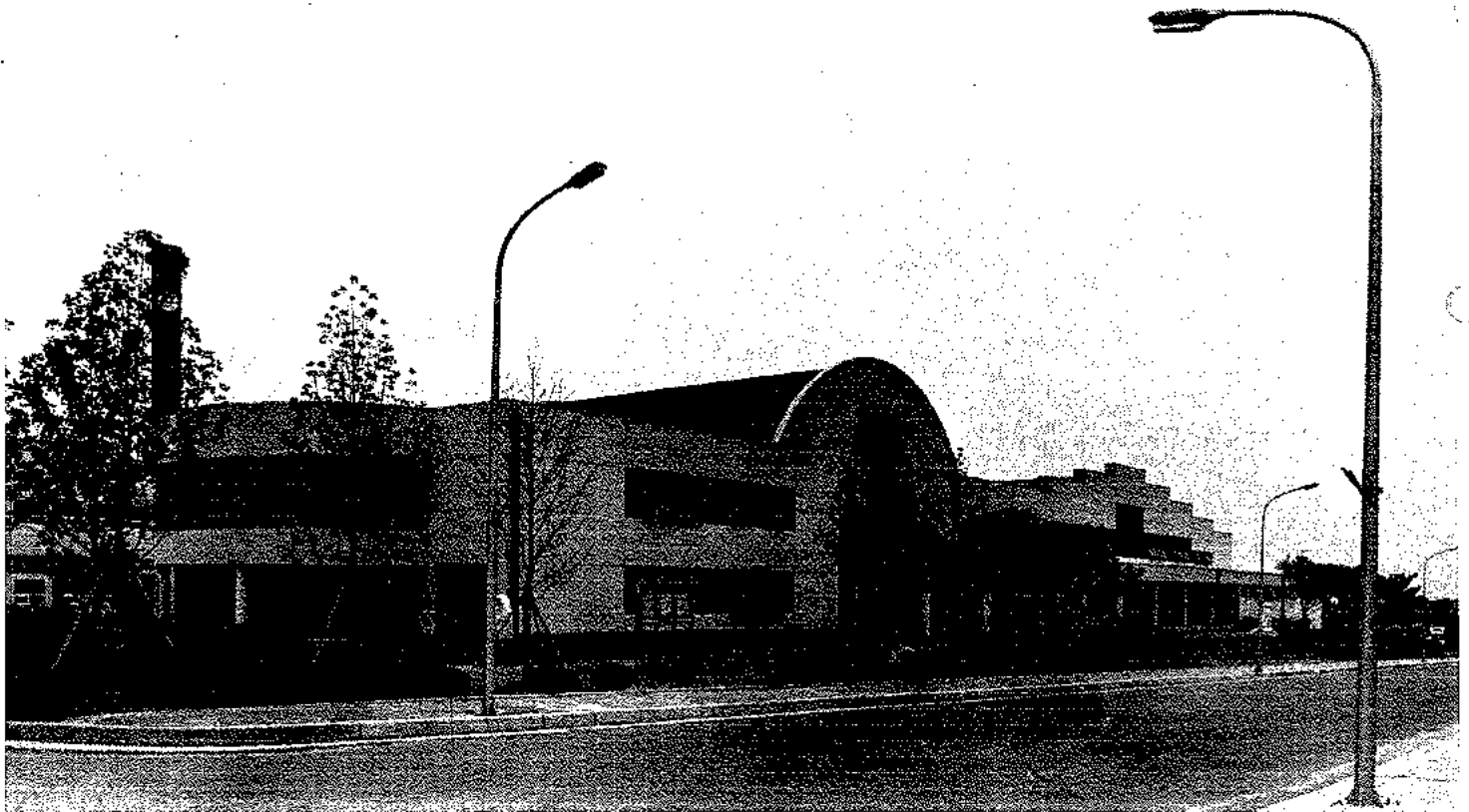
○대지면적 : 393,683㎡

○연 면 적 : 5,870㎡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 P.C 조

○외장재료 : P.C 위 수성페인트



현관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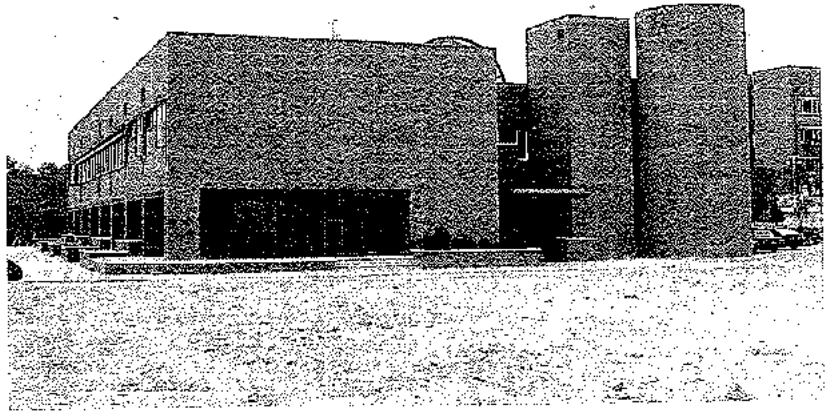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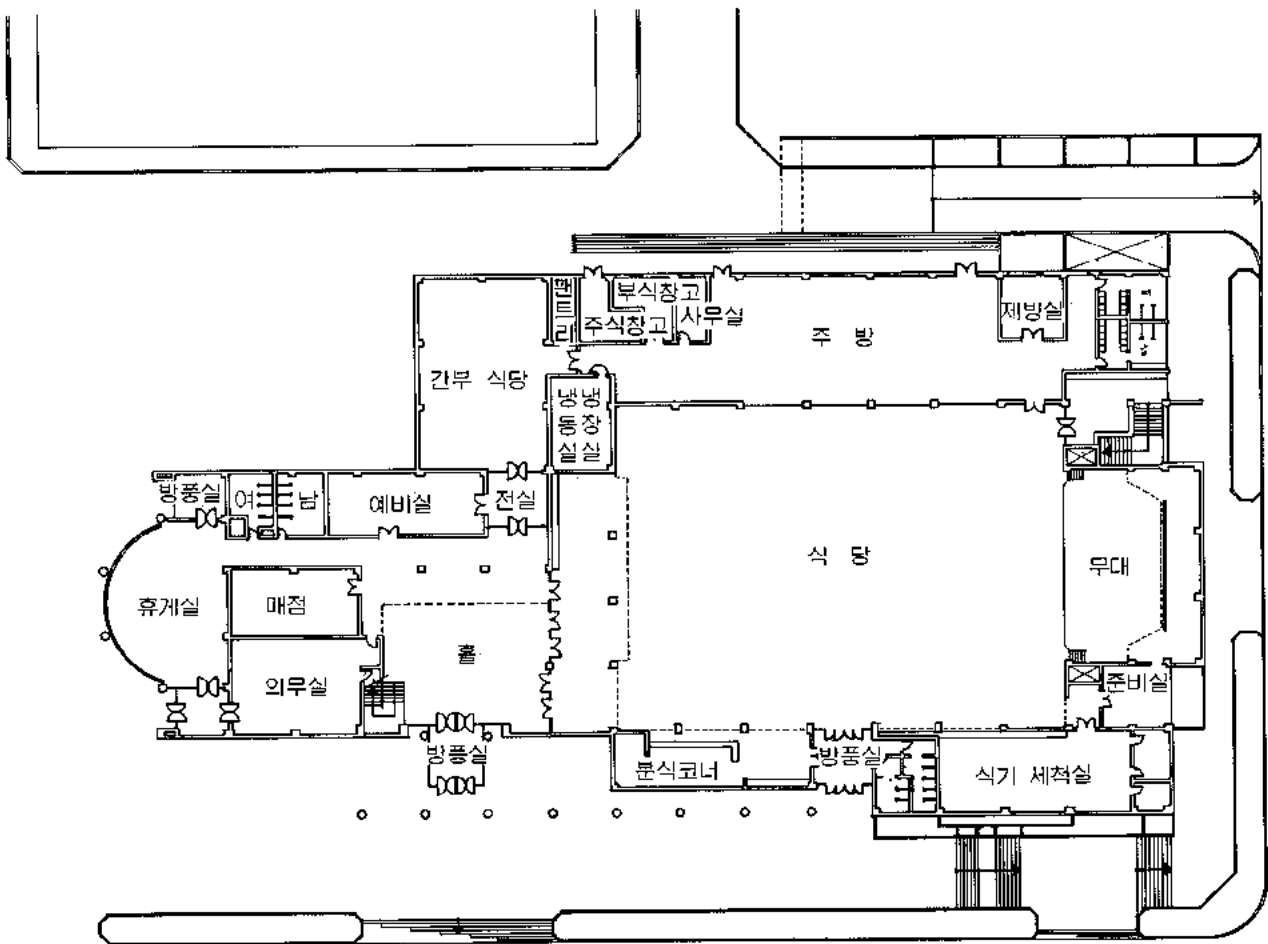
설계소요

설계개념의 이원성, 상징적이기를 바라는 건축적 표현요소의 구현과 격식없이 친밀감을 주는 곡면과 표현의 평형적요소, 건물 중심에 뚫린부분, 채색된 기둥의 이미지표현등 대중적 친화력 성분이 그것이다.

상징적 비격식 건물로 표현된 FACADE는 건물의 안팎으로 통하는 일련의 동선에 양면적 가치를 보여준다. P.C를 붙인 벽체와 대비되는 원형요소, 현관의 캐노피, 햇기둥의 색채, 그라스브럭의 원형형태, 이러한 요소들이 상징적 외관에 서로 엮달린 반응을 나타내게 한다.



서측 전경



1층 평면도

금성사 (주) 평택공장 공용회관

THE GOLDSTAR CO., LTD

COMMUNITY CENTRE OF PYUNG TAIK FACTORY

(주) 간삼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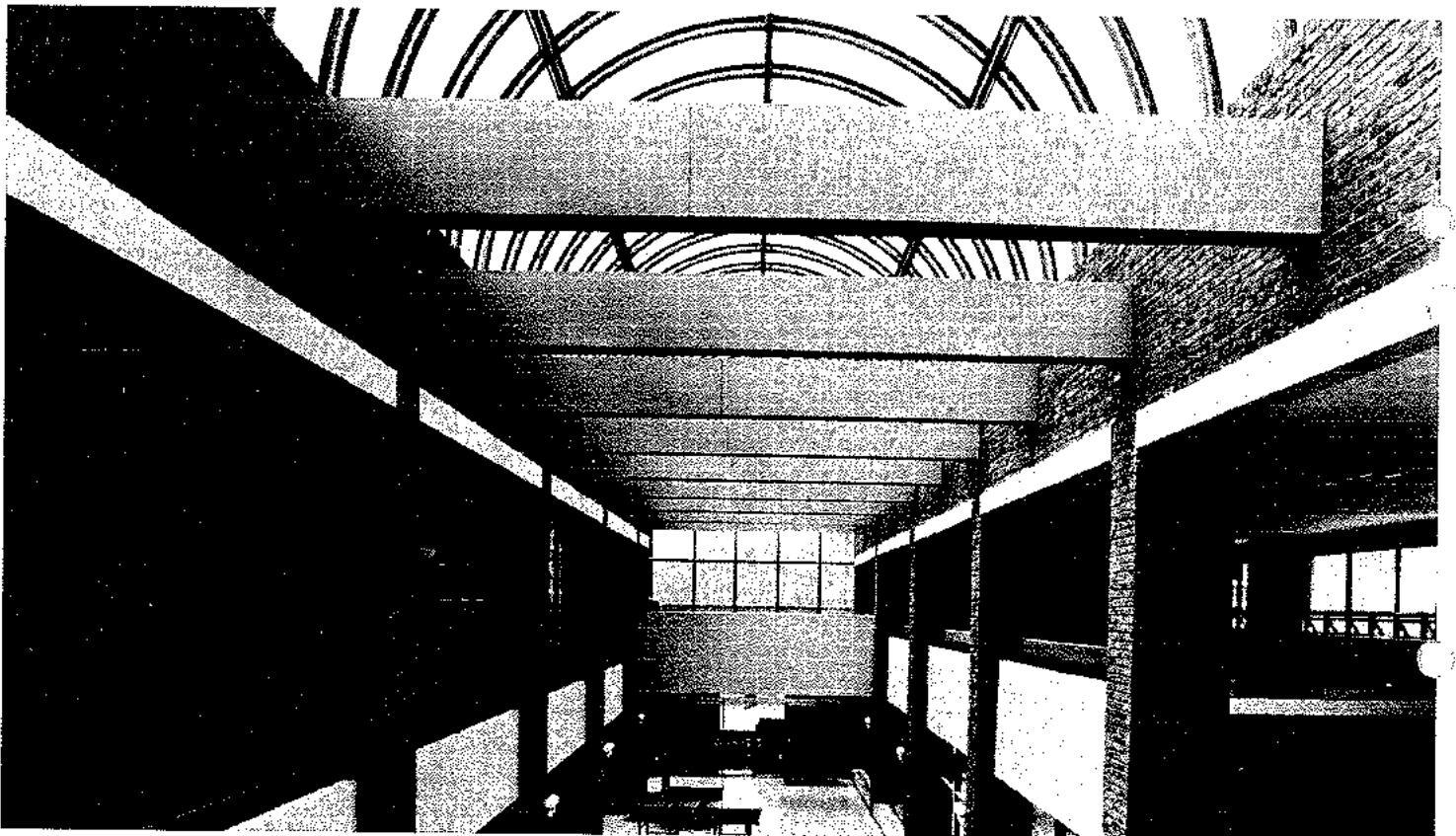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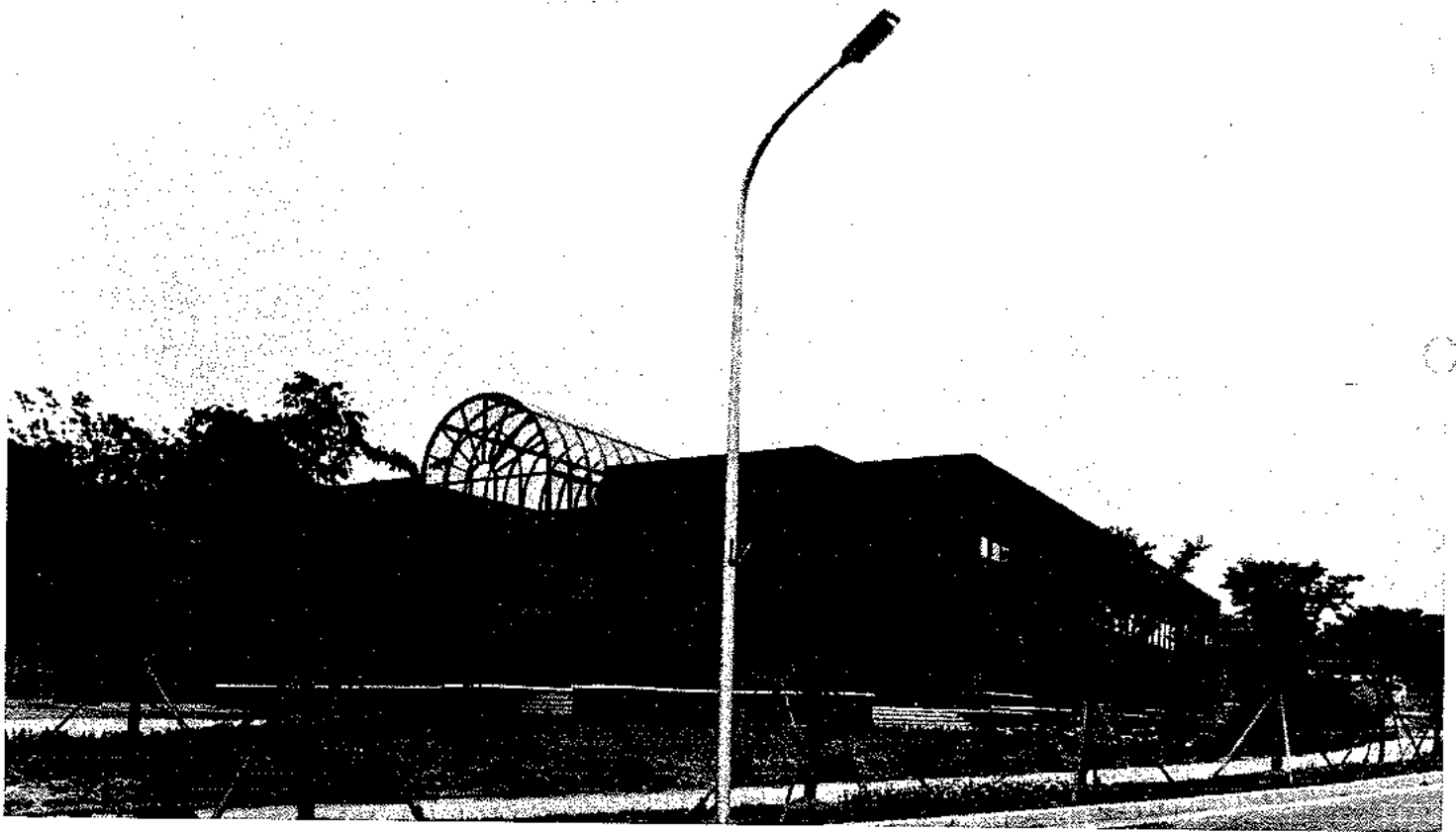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대지면적 : 393,683㎡

○연 면 적 : 5,230㎡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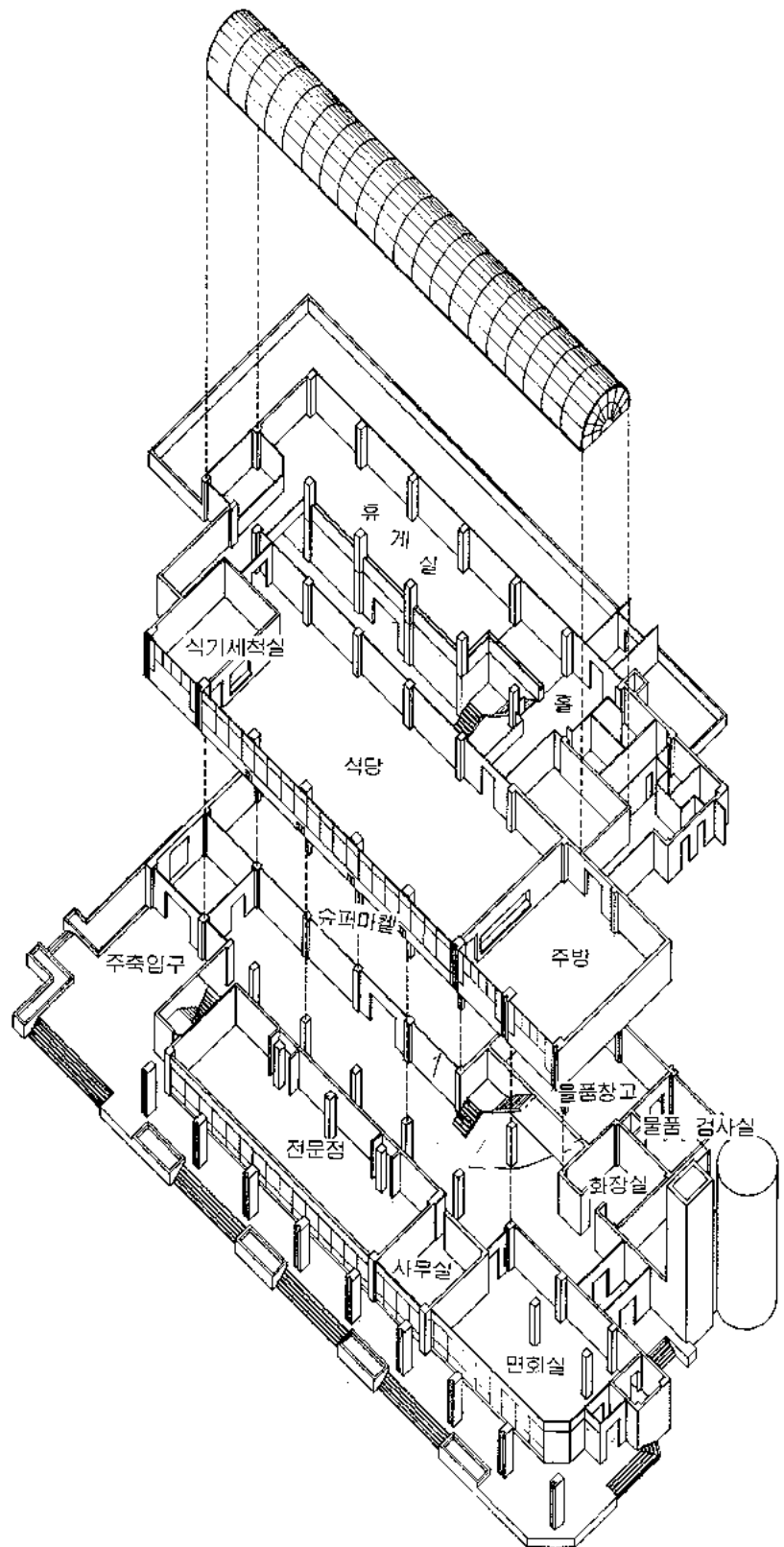
○구 조 : R.C 조



설계소요

공장의 진입부에 위치한 본 건물의 개념설정은 진입축과 일치되는 포용성에 두었다. 단지내 기숙사의 만남의 공간으로 전문상가, 전시공간으로 내부공간은 단지 및 방문객에게 공간의 포용성으로 표출되었다.

도로축과 일치된 원형천장은 벽돌건물의 볼륨으로 표현된 두 매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조형적 요소로 표현하였다.



용진빌딩

YONG JIN BUILDING

표상권 / 상현건축연구소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방배동 77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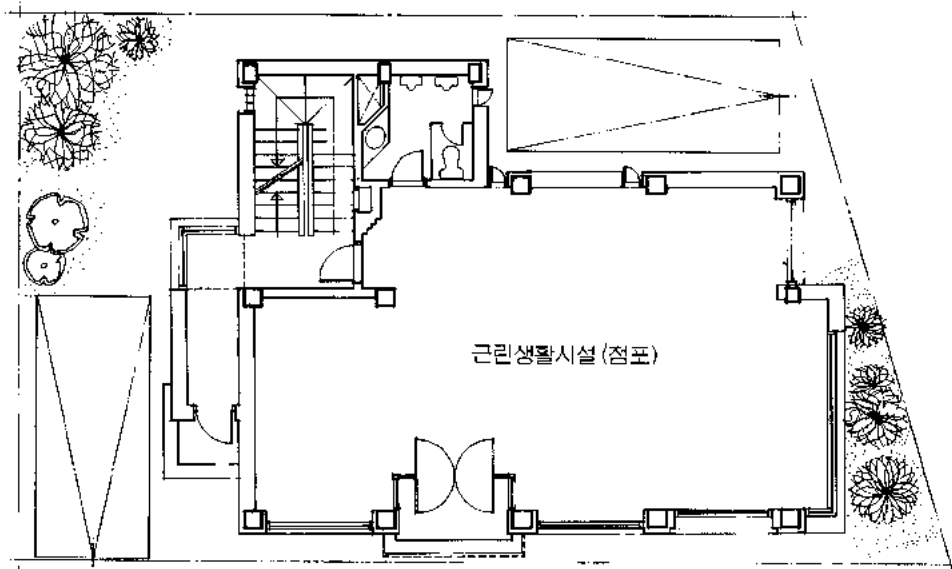
○대지면적 : 226.8㎡

○건축면적 :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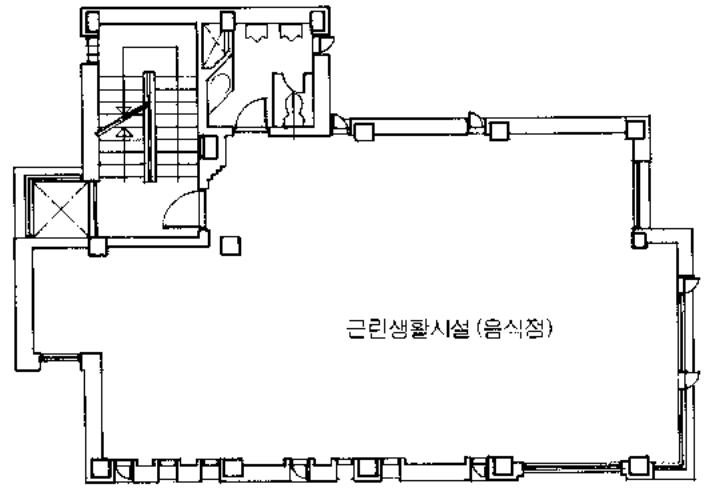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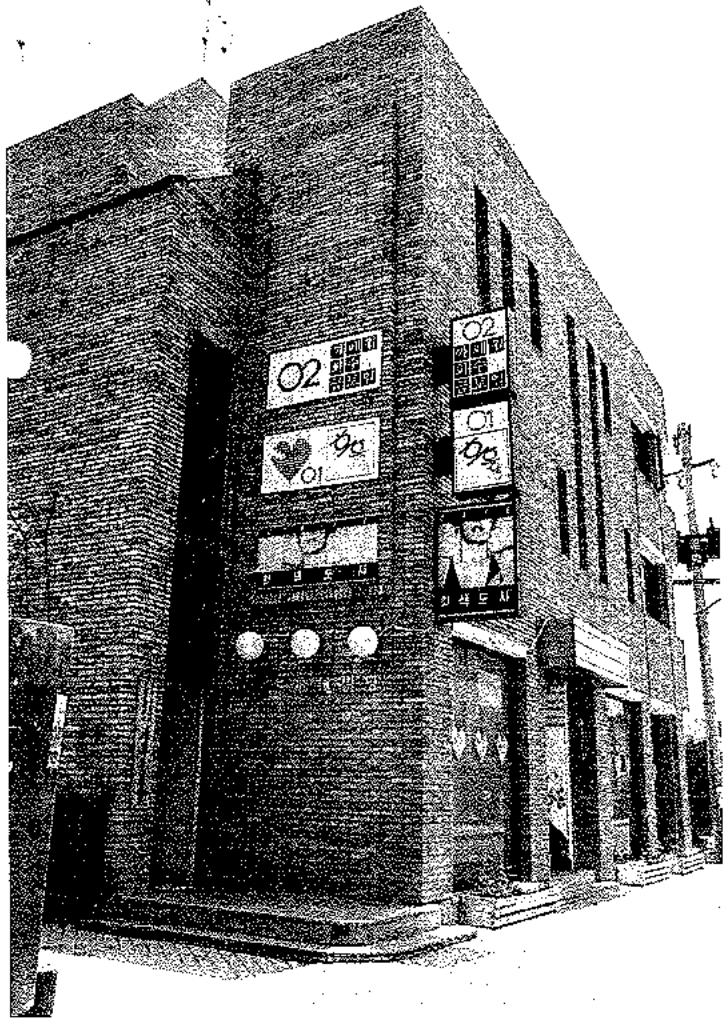
○연 면 적 : 494.8㎡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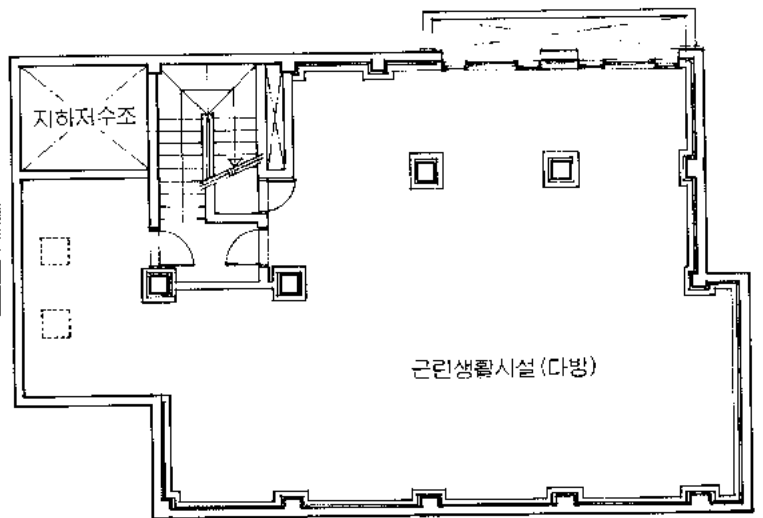
○외 벽 : 붉은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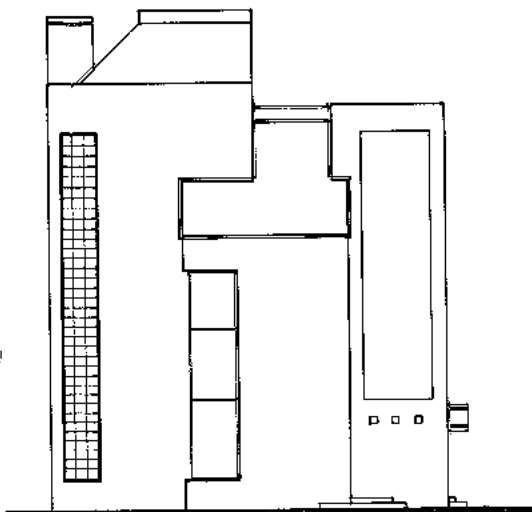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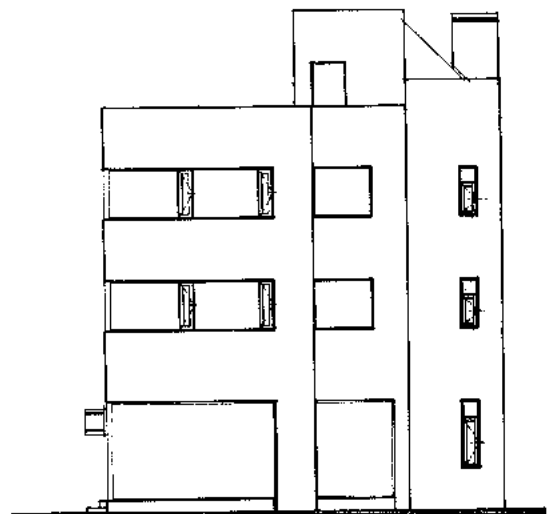
2·3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북측면도



남측면도

백이빌딩

BEAK-YEE BUILDING

조구현 / 신세대건축연구소

○대지위치 : 서울동작구노랑진동 42

○대지면적 :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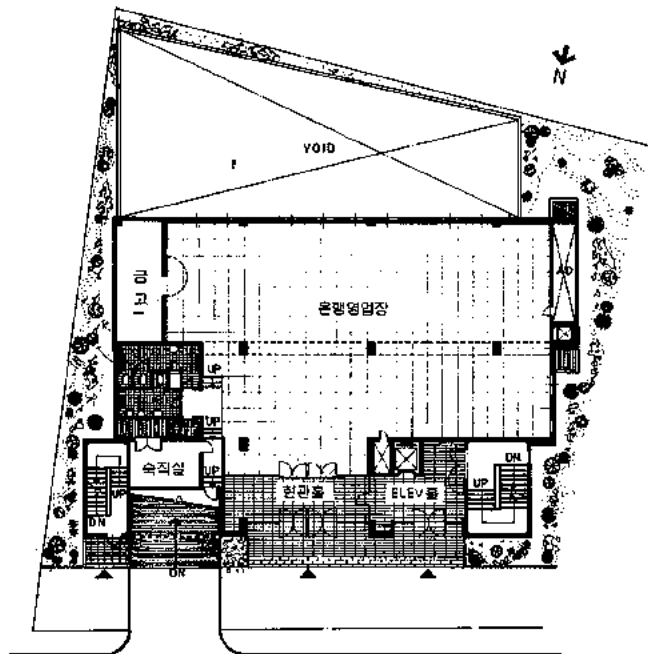
○건축면적 : 581.11㎡

○연면적 : 4,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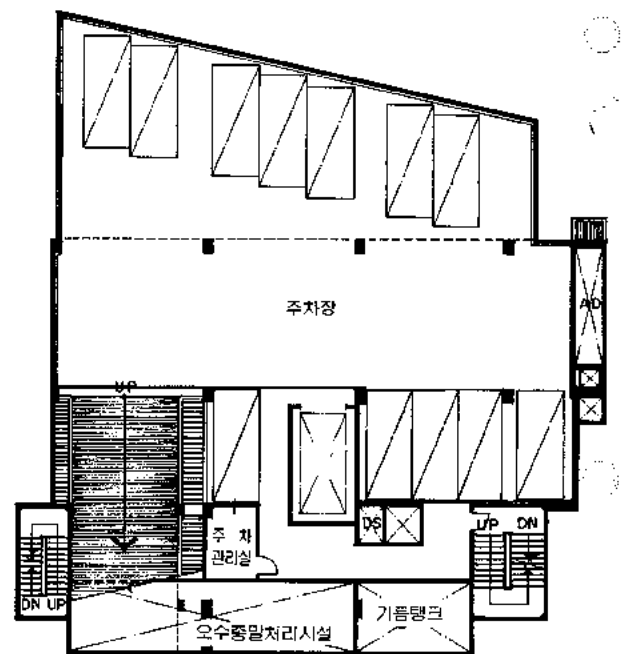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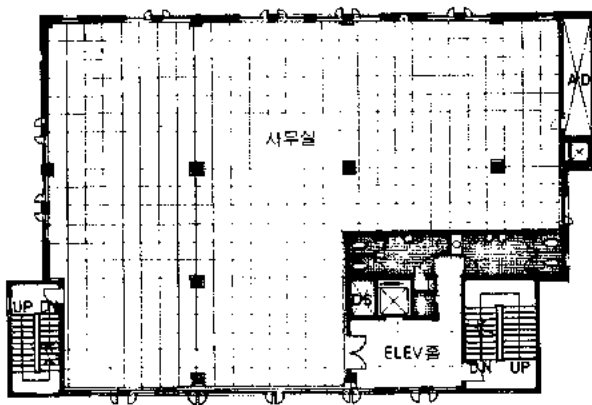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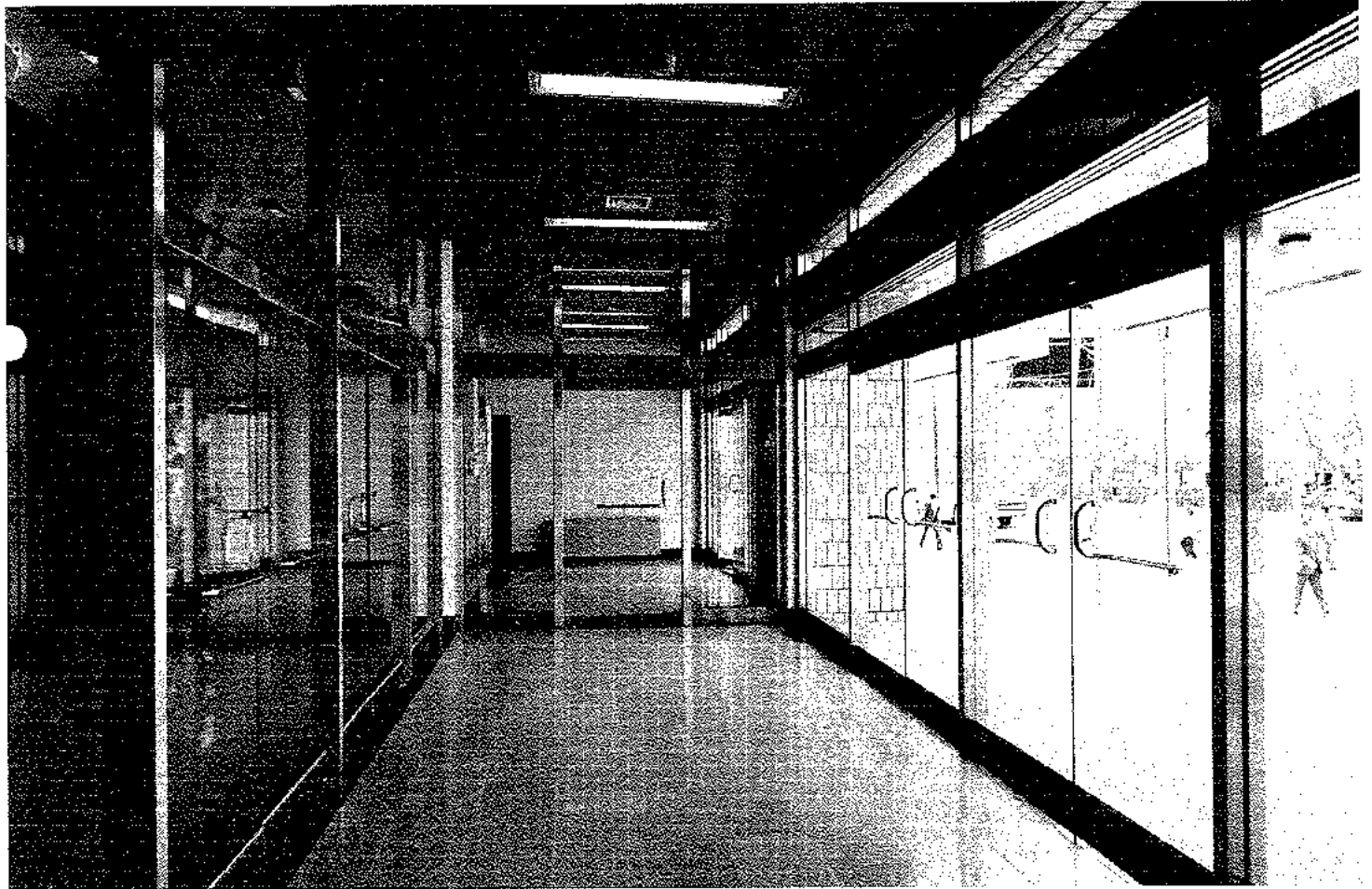
○외부 마감 : 백색자기질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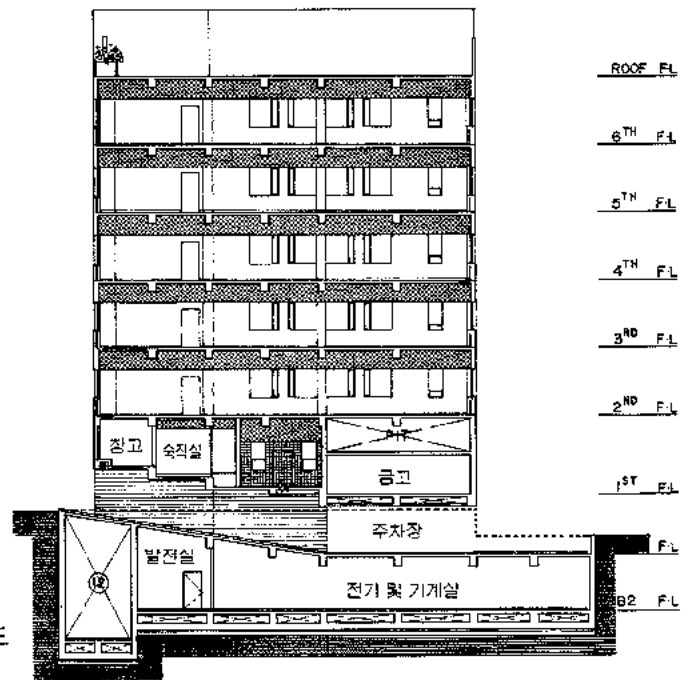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평창동 J씨댁

PYEONGCHANG-DONG J'S RESIDENCE

서진우 / 하나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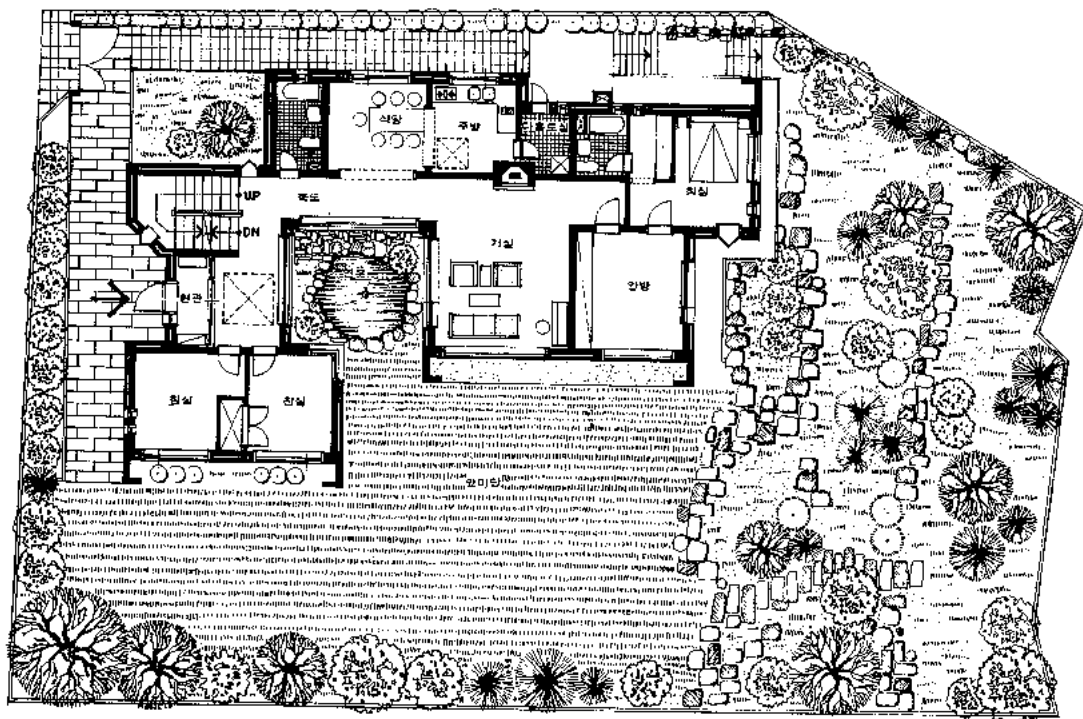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종로구평창동 543

○대지면적 : 729.0㎡

○건축면적 : 146.21㎡

○연 면 적 : 34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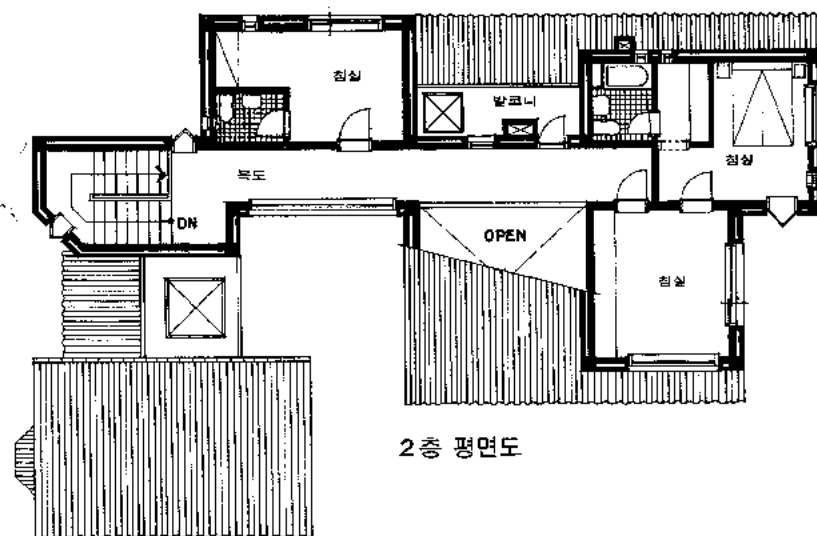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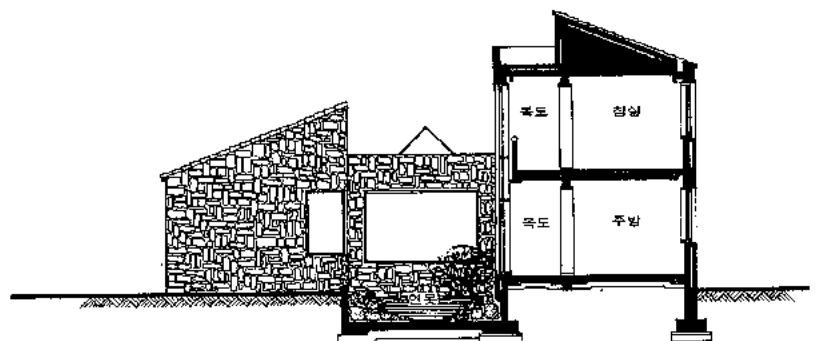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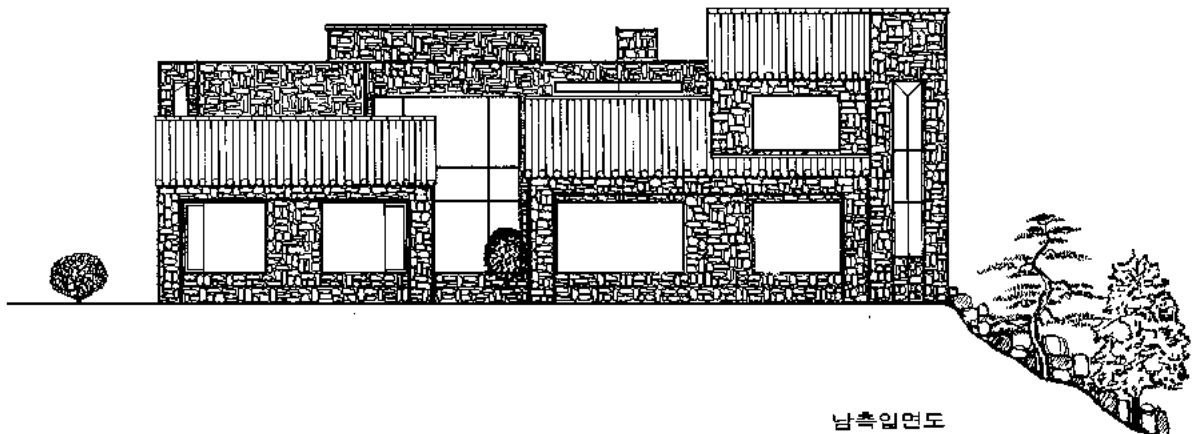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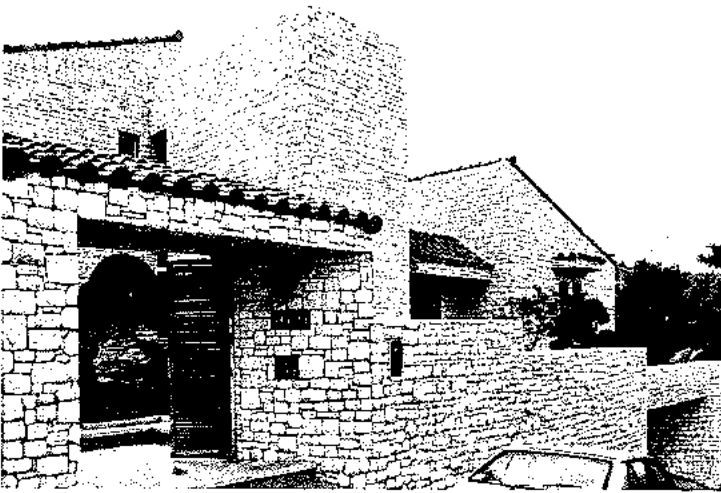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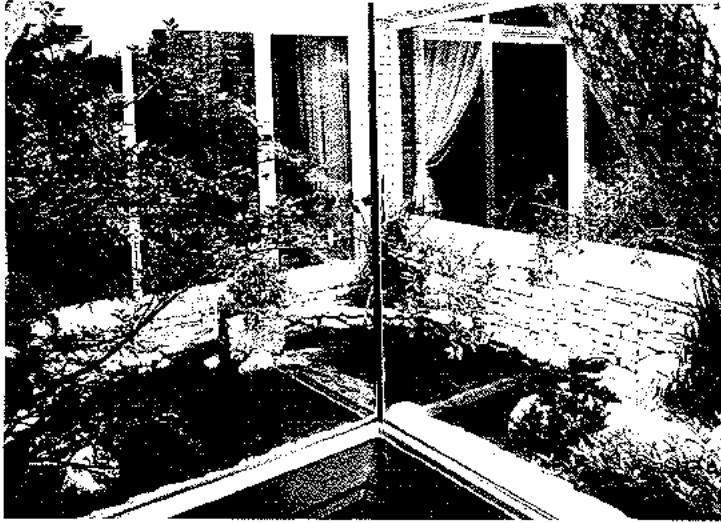
거실에서 본 연못



2층 평면도

단면도





남측입면도

'85 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出品作公募

本協會는 會員의 建築設計 技術向上을 도모하고 一般의 건축에 대한 理解를 높이기 위해 建設部 후원아래 매년 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를 개최하고 있으며 今年은 특히 本協會의 創立20周年이 되는 해임에 따라 創立20周年紀念事業의 일환으로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展示會는 創立日인 10월 23일을 기해 개막, 신축 建築士會館의 A展示室과 B展示室을 활용, 1개월간 서울에서 개최한 다음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인천, 춘천을 巡廻하며 86년 4월 11일까지 展示할 계획입니다.

本協會創立20周年紀念事業에 적극 참여해 주실과 아울러 本展示會가 우리 나라 建築文化를 先導하는 造形創造藝術人의 矜持를 발산하는 誇示의 場이 될 수 있도록, 全會員으로부터 수준 높은 作品의 応募를 기대하오니 다음을 참작, 적극 出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출품요령

1982년부터 1985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판넬제작 방법

1. 판넬크기 / 90cm×90cm(가로×세로)
2. 제작요령 / 판넬에 기재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유리, 스티로폼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禁).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판넬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판넬수량
1 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판넬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판넬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사진·도면·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 30일까지 제출(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판넬은 9월 30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大賞(1) 建設部長官賞
最優秀賞(1) 協會長賞
優秀賞(2) 協會長賞
獎勵賞(6) 協會長賞

• 기타유의사항

1. 展示會에 出品한 작품만이 施賞對象이 됨.
2. 論文部門 施賞對象은 會誌에 게재된 會員執筆論文에 限함.
3. 제출처 및 문의처
本協會 技術部, 出版事業部
(581-5711, 5712, 5713, 5714)

제7회 理事會 개최

7월12일 오후2시부터 6시30분까지 본협회 회의실에서 약4시간 반동안 제7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이날 吳雄錫 회장은 개회사를 겸하여 A.I.A.(미국건축학회)총회 참석 결과를 집약하여 간략히 보고하면서 ① A.I.A.의 총회진행방법과 본협회 진행방법의 비교고찰 ② A.I.A. 조직과 운영현황의 파악 및 본협회 현황과의 비교고찰 ③ 在美 한국인 건축사와 본협회간의 紐帶강화방안 모색 등 당초의 A.I.A. 총회 참석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會順에 따라 제6회 理事會 회의록에 대한 부분적인 자기수정후 그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主要業務報告가 있었다.

부의안전 심의에 들어가서는 【제1호의안】 회관관리규칙 제정승인의 건, 【제3호의안】 특별회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건축사지 광고료 인하 조정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제2호의안】 예산목감전용승인의 건은 建設部로부터 협조요청된 다세대주택 설계지침도 작성보급계획에 따라 본 협회가 실제계획한 현상공포의 방법으로 동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된 것으로 당초 21,685,000원을 목감전용 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20,000,000원으로 조정, 승인되었다.

그러나 【제6호의안】 홍보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위원회운영총칙을 제정하여 위원회 전부가 공히 그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를 균점화 한다는 취지로 총칙안 작성을 법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이침 위임함으로써 부결되었고 【제4호의안】 실적회비 징수결정 승인의 건, 【제7호의안】 건축물의 조사감정업무 시행지침(안)승인의 건 【제8호의안】 건축설계및 기술부료지원에 관한 지침 결정의 건 등은 법규위원회에서 검토후 이사회에 부의키로 함으로써 심의를 유보시켰다.

기타 협의사항에 들어가서는 회관이용 계획(안) 협의는 회관활용방안을 충분히 연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자는 회장의 제의에 따라 다음 이사회까지 협의를 유보하는 등 새전이 처리되었다.

吳雄錫 會長 귀국

6월9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85년도 A.I.A.(미국건축학회) 총회에 참석차 출국하였던 吳雄錫 會長이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24일

귀국하였다. 다음회에 게재할 A.I.A. 參觀記를 기대하시기 바란다.

全國會員, 建築士事務所 申告完了

建築士法 중 改正法律(법률제376호, '84. 12. 31. 개정공포)부칙 제2항에 의거 6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있는 建築士事務所申告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완료되었다.

이번 신고에 의해 집계된 전국 건축사사무소 형태별 신고및 회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85년 6월 30일 현재)

구분	단 독		종 합		용 역		계		6월말	비고
지부별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사무소	회원	회원수	
제	1,642	1,745	162	523	9	10	1,795	2,318	2,295	23
서울	536	559	126	407	8	9	670	1,015	982	33
부산	234	263	11	34	-	-	245	297	295	2
대구	123	153	7	23	-	-	130	176	176	-
인천	55	55	-	-	-	-	55	55	56	1
경기	206	207	-	-	-	-	206	207	207	-
강원	36	36	-	-	-	-	36	36	36	-
충북	45	49	1	3	-	-	46	52	52	-
충남	86	99	6	20	-	-	92	119	119	-
전북	47	58	-	-	-	-	47	58	52	6
전남	107	109	3	10	-	-	110	119	119	-
경북	45	47	3	11	1	1	49	59	58	1
경남	97	85	5	15	-	-	84	100	100	-
제주	25	25	-	-	-	-	25	25	25	-

※ 비교란의 증가된 회원수는 사무소등록 변경사유시 집계된 숫자임.

'85 建築士研修 終了

기 별	연수기간	연수대상	이 수 자	불 참 자	참 석 륜
제 1 기	5. 13~14	365명	316명	49명	98.9%
제 2 기	5. 20~21	396	387	9	97.7
제 3 기	5. 28~29	374	367	7	98.1
제 4 기	6. 3~4	389	385	4	98.9
제 5 기	6. 10~11	369	363	6	98.4
제 6 기	6. 17~18	371	362	9	97.6
합 계		2,264	2,225	39	98.3

건축사법 제30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5월13일부터 본 협회 강당에서 1박2일씩 6期로 구분 실시해온 '85建築士研修가 6월18일 6期研修 종료와 함께 모두 끝났다. '85

建築士研修 이수자 현황은 위와 같다.

85 建築士試験 合格者 発表

건설부는 6월16일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한 85건축사시험(특별전형) 합격자를 6월26일 발표하였다.

응시 및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응시전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일반전형	2495	2150	1016	47.2%
특별 전형	222	178	148	83.1%
2급 건축사 공무원	417	399	312	78.1%
계	3,134	2,675	1,476	55.1%

※ 제2차 실기시험은 오는 9월초순경 실시 예정임.

全國市道支部 및 分所에 木看板製作 배부

본협회는 7월12일 理事會가 끝난 다음 全國市道支部 및 分所에 재작 배부할 木看板의 전달식을 갖고 李春相 서울특별시지부장, 高昌永 仁川支部長, 李鍾殷 경기도지부장에게 각각 木看板을 전달하였다.

이 木看板은 齋靑와 協會마크 및 크기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製作한 規格제품이다.

종전까지는 각지부나 분소마다 통일규격에 의하지 않고 제작 사용함으로써 간판의 크기나 모양, 齋靑등이 다양각색이어서 건축사협회 이미지에 조성에 좋은 역할을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議政府分所 業務再開

지난 2월28일부터 업무정지되었던 京畿道支部 議政府分所가 7월1일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며 分所長도 새로 취임하였다.

분소위치: 의정부시 의정부동 178-16
사무소명: 우중선건축사사무소

분 소 장: 우중선(1932. 2. 28생)



제7회 理事會 직후
거행된 木看板 전달식.
李春相 서울지부장, 高
昌永 인천지부장, 李鍾
殷 경기도지부장이 支部
看板을 전수받았다.

韓鍾彦 理事, 다목적실내 운동기구 기증

본협회 韓鍾彦 理事는 7월13일, 일곱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기구를 구입, 본협회에 기증하였다.

이 운동기구는 자전거 페달 밟기, 몸통 돌리기 등 하나의 기구에 갖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집약한 것인데 회원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휴

게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慎玟範 會員 컴퓨터기 1대 기증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200-14에서 신형법건축사사무소(事 82-2102, 宅322-0622)를 경영하고 있는 慎玟範 회원이 7월10일 본협회를 방문하고 협회업무에 활용하라고 컴퓨터기(CASIO) 1대를 기증하였다.

委員會 消息

設備分科委員會

6월23일 오후4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설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용한)가 개최되었다.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원건축물의 각종설비에 관한연구
각위원이 전담하여 연구 추진중인 사항은 8월말~9월초까지 원고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고 연구결과의 발표는 사무처에 위임함.

② 건축법 및 기타 건축설비 관련법과의 비교분석 연구

• 연구목적: 회원의 업무에 있어 계획 설계시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중 건축법과 관련한 각종 설비에 관한 법이 상호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가 다원화 되는등 불편을 초래하여 이러한 점을 검토 보완하고 관계부처에 개정협조요청을 하여 점진적 개선을 꾀하고자 함.

• 연구방법: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급을 요하거나 정미한 사항부터 관계법문

비교분석하여 회지에 게재하고 여론화하여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함

③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설비 설치방안 연구

• 목적: 주택 등의 소형건축물이 고층화 혹은 대형화 되고 소형건축물에 있어 서도 소방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바로 현실적 적용은 어렵더라도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적은 비용으로도 소방설비(스프링클러등)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코자 함.

• 연구방법: 김상옥 위원이 전담하여 연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삼도를 곁들여 원고를 작성함.

構造分科委員會

구조분과위원회(위원장 김봉훈)는 6월14일 오후3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건축구조 현장감리 검시요령해설 작성연구」에 관한 원의를 했다.

협회의에 따라 분야별 전담위원이 참고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해설을 작성하고 7월하순 차기 회의시까지 원고를 제출

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집토기로 하였다.
연구 성과물은 300~350 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編纂委員會

본지 편찬위원회(위원장 이영희)는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제 7 회 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사지 7 월호 편집계획(안)을 확정시키고 회원명부 발간에 대한 편집방침을 협의하였다.

支部消息

釜山直轄市支部 건축관계자 職務教育 실시

釜山直轄市支部(지부장 黃在澤)회원 186명은 건축직공무원과 연석하여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지하철본부 회의실에서 부산직할시가 실시한 직무교육에 참여하였다.

강사로 나온 부산대학교 김수석 교수는 「건축배경」에 대하여 미학적 측면에서 강의를 하였고 부산시건축과 박치권 과장은 「건축법규해설」과 「건축부조리방지대책 '85추진지침」등을 교육하였다.교육은 약 3 시간동안 진지한 열기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건축분야 부조리척결을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全羅北道支部 건축행정 간담회개최

全羅北道支部(지부장 全炯直)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 주택과장, 주택행정제장, 주택행정담당 등 관계관을 초청한 가운데 원활한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부임원과 회원등 모두 12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건축행정 관련 道당국과 支部간의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과 道와 支部간의 유대를 강화할것 등을 합의했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형프로젝트 현상공모 응모자 좌담회 추진

대형프로젝트 현상공모 응모자 좌담회를 7월 중순경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모작품과 함께 8월호에 게재토록 함.

② 본협회 창립20주년특집호 협의 본협회 창립20주년(10월23일)을 기념하는 특집호 편집계획(안)을 구상하여

차기회의시 협의 확정함.

③ '85년도 회원명부 발간

8월중에 발간 예정인 85년도 회원명부에는 商號別 索引을 넣어 人名 중심으로된 회원명부의 활용상 容易度를 한층 높이도록하고 협회 기구및 조직표를 첨가하며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는 삭제함



건축행정간담회(전북지부)

全國市道支部, 모내기 농촌일손돕기 실시

全國市道支部 324명의 회원과 임직원이 일손이 모자라는 관할지역 인근 농촌에 나가 6월 5일부터 21일까지의 사이에 총 6,700평의 논에 모내기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하였다.

일손 모자라 애태우던 농촌주민들의 따뜻한 환영가운데 작업을 시작한 支部 회원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이웃사랑은 형제사랑」이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그 의의를 새겼을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논두렁 머리에 게양한 프라카드로 건축사협회 홍보선전의 효과도 함께 올렸다.

농촌주민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각자 도사락을 지참해 간 회원들은 점심 시간을, 야유회 식사처럼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단합의 한 때로 즐기기도 했다.

다음은 각시도지부 모내기 현황이다.

大邱直轄市支部(지부장 黃鑄周) 6월 14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주변 1,500 평의 논에 모내기를 했다. 회원 89명, 직원 5명, 기타 6명, 도합 1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京畿道支部(지부장 李鍾殷) 6월 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남양만 일원에서 14명의 임직원이 300평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다. 이 모내기작업은 서울특별시지부와 공동작업이었는데 서

울특별시지부에서는 16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본지 6월호 지부소식 참조)

江原道支部(지부장 閔庚秀) 6월10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회원과 임직원등 15명이 원주시 태장2동 450평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다. 특히 원호창 원주분소장은 태장2동 3동장에게 지원금으로 금일봉(4만원)을 전달하였다.

忠淸北道支部(지부장 延寬欽) 6월9일 회원과 임직원등 44명이 청주시 미평동169 인근 700여평의 논에 약 8시간에 걸쳐 모내기를 하였다.

忠淸南道支部(지부장 閔榮基) 회원과 임직원등 70명이 6월11일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에 있는 1,000평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다.

全羅北道支部(지부장 全炯直) 6월16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7명의 임직원이 김제군 금구면 옥성리에 있는 450평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다.

全羅南道支部(지부장 趙春元) 승주군 쌍암면 산학리에 있는 600평의 논에 순천분소회원 20명이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내기를 하였다.

慶尙北道支部(지부장 金永吉) 문경분소의 회원 20명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경군 산양면 송죽2리 34번지 소재 800평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고 김천분소 회원 15명이 금릉군 어모면 옥울동소재 500평의 논에 모내기를 하였다.

慶尙南道支部(지부장 金正洙) 임직원등 3명이 마산시 덕동 소재 400평의 논에 6월16일 모내기를 했다.



대구직할시회원과 임직원등의 모내기장면



경기도지부 임직원의 모내기장면



지원대금을 전달하는 원호창 원주분소장



충청남도 회원과 임직원등의 모내기장면



순천분소회원 모내기장면

'85全南建 設計作品 詳報

*開 幕

全羅南道支部(지부장 趙春元)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南道藝術會館 1층 1室, 2室, 3室 전시장에서 88개 會員作品으로 支部중 최초의 會員設計作品展示會를 개최함으로써 그간 조용히 축적하여온 底力을 유감없이 폭발해 내는 개가를 올렸다.

6월20일 오후6시.

오색 테이프가 잠시 전시장의 입장객을 막고 있었다.

내빈들은 버진 로드(virgin road)를 밟기 직전 신랑의 발길음처럼 초조함에 설레었고, 아직 관람객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시장은 신부의 기대처럼 진장에 휩싸였을 순간이었다.

전석홍 전라남도지사, 김영인 전남대학교 총장, 박철웅 조선대학교 명예총장 등 좀처럼 헛사리 뵈 수 없는 먼뽕들이 도열해 있었다.

조성민 광주방송국장, 김우석 조대공전학장, 임병성 예총지부장, 정공진 광주일보사이사, 박헌동 건설협회지부장,

작품전개막 테이프를 커당하는 내빈 13분



全錦洪 전라남도지사(왼쪽 끝 등을 보인 분) 祝辭를 경청하는 내빈들



築士會員 展示會

채규당 작가협회장부장, ... 이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때가 어찌 그리 흔하겠는가?

김기수 본협회 부회장, 이훈상 서울특별시지부장, 최상옥 남화토건사장, 조춘원 전라남도지부장... 이렇게 모두 13분. 이분들에 의해 드디어 테이프는 토막이 났다. 開幕이다. 250여명의 축하인사들이 전시장에 뿔뿔히 퍼진다.

조촐한 축하파티 테이블이 한가운데 차려져 있고 벽을 따라 수줍은 표정의

88점 作品이 드디어 첫 손님을 맞는다.

「전남회원 작품전이 도지부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갖게되는 관계상 작품의 수준과 판매회사의 품위 등에 있어 비좁은 점이 많음」

전시회가 끝난뒤 작품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趙春元 支部長은 이렇게 스스로 냉정하게 자인했지만, 그러나 작품 한점 한점을 創作人의 藝術魂을 다부듯 다칠세라 부식질세라 몇날 몇밤 하얗게 지새운 정성을 생각한다면 역시 玉은 玉대로 값이치를 손상당함없이 건재하

본협회원 및 각시도지부임원 기념촬영



화사한 축하 화분으로 꾸며진 작품전시장



다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얻게 된다.

88점 작품은 광주에서 80점, 목포에서 3점, 순천에서 2점, 여수에서 3점을 각각 출품하여 모아진 숫자이다.

88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 국민에게는 기대와 희망과 성취의 大跳躍을 기약하는 행운의 숫자이다.

88점의 작품 수에서 그와 맥을 같이하는 행운의 미소를 발견하게 됨은 결코 우연일 수 없을것 같다.

天佑神助라는 말이 이경우 무리없는 표현일런지...

작품내용을 분석해보면 주택이 광주에서 28점, 순천에서 1점, 빌딩이 광주에서 17점, 여수에서 2점, 관공서는 광주에서만 11점, 교회는 광주에서 5점, 순천에서 1점, 병원은 광주와 목포에서 각각 2점씩, 여관은 광주에서만 9점, 기타 극장, 휴게소 등은 광주에서 8점, 목포와 여수에서 각각 1점씩이다.

작품전 축하연에서는 趙春元 전남지부장의 작품전 개막인사가 있었고 金錫洪 전라남도지사의 축사와 金基壽 본협회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뒤따라 작품전 개최에 공이큰 김태만, 류연창, 박화수 세 유공회원에게 대한 지부장 공로패 수여의 순서가 이어졌으며 축하차 來光한 시도지부장의 인사소개가 있었다.

* 盛 況

전시회장은 밀려드는 인파로 6월20일 첫날엔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개장해야 했고 6월21일부터 24일까지는 오전9시~오후7시까지 개장해야 했다. 6월25일 마지막날은 오후5시까지 개장하였지만 그것은 작품철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시간단축이었다.

도내 뉴스 메이커들인 광주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KBS, MBC 등은 연일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개막행사를 뉴스로 보도하는 한편 TV특집과담회, TV특집 작품전 등을 열어냈다.

작품전이 개최되는 동안 관람인원은 3,712명에 달했고 1일평균 600명을 기록 했다.

매스콤도 가뻐했고 시민도 기뻐했다. 大盛況이었다.

특히 대학교(2), 전문학교(3), 고등학교(2) 등에서 건축과 주임교수 인솔아래 575명이 단체관람한 것은 감수성 예민

한 젊은 건축학도에게 여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되어 더욱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 評 價(自評)

다음은 전시회를 마친 전남지부가 전시회를 평가한 自評의 내용이다. 후일 다른 시도지부에 참고가 될것 같아 참고로 소개한다.

1. 效果分析

가. 지방장관인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단위기관장 및 단체장은 물론 각급 공직자의 참관으로 건축작품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

나. 뉴스메이커인 광주일보와, KBS, MBC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설계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협회 단체와 건축사에 대해 인식을 한층 높임으로써 회원의 사회적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

다. 작품전시 기간중 각계각층의 시민관람으로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회원작품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라. 도내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 건축학도의 단체관람을 통해 후배의 학구열 제고에 기여.

마. 회원 각자의 출품작을 한자리에 전시, 회원상호간 비교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창작의욕 고취에 기여.

바. 작품전 축하행사를 통하여 도지사 등 각급기관 단체장, 각급 건축직 공무원과 일반내빈, 그리고 타시도 지부장에게 본도지부 산하회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원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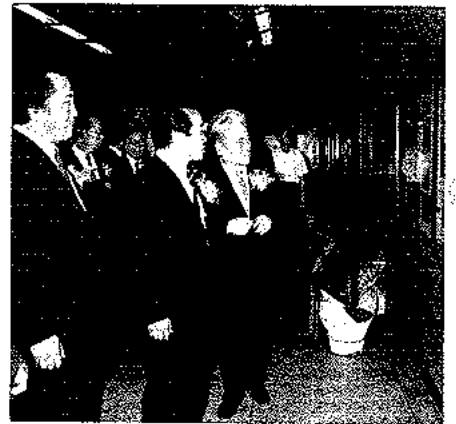
2. 問 題

가. 전남회원 작품전이 도지부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갖게 되는 관계상 작품의 수준과 판넬제작의 품위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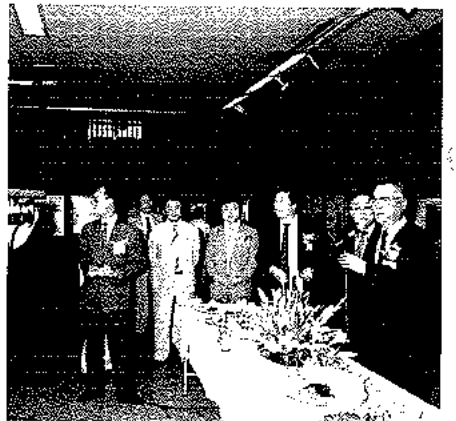
나. 작품전의 시기가 하절기인 장마철과 겹치게 되어 시민의 작품전 관람의 원활을 기하는데 적절치 못하였음.

다. 작품전을 연도중인 상반기로 택함으로써 남도예술회관 전시장 사용이 남도예술제와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작품전 일정확정에 어려움이 많았음.

라. 출품작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



내빈관람 (右로부터 金永寅 전남대총장, 金錫洪 전남지사, 趙春元 전남지부장)



격려사를 하는 金基壽 본협회부회장



인사를 하는 趙春元 전남지부장



유공회원 표창



全錫洪 지사와 시도지부장 인사교한



내빈서명(金永寅 全大總長)



건축학도단체관람



KBS-TV 특집촬영

월 일	방명수	일반비방명	단체학생	계	비 고
6. 20(목)	82	160	-	242	
6. 21(금)	66	600	160	826	송원전문대 130 전남공대 30
6. 22(토)	58	500	125	683	동신전문대 95 조대공전 30
6. 23(일)	64	500	-	564	
6. 24(월)	59	600	180	628	순천공전 110
6. 25(화)	48	400	180	628	송신공고 98 전일실고 82
계	377	2760	575	3712	개별관람학교 조대공전, 전남공고 담양공고, 목포전문대 목포공고, 순천공고

한 관계가 있는 주택작품이 적어서 관람객 특히 부녀자층의 작품관람 선호도에 부응치 못하였음.

마. 작품판넬의 규격이 일률적으로 통일됨으로써 작품게시가 극히 규격화되어 다양미는 물론 전시품의 조화를 기할 수 없었음.

3. 대 책

가. 작품전의 시기는 연도중 하반기(9~11월)로 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출품작품의 선정은 가급적 시민의 선호도에 따라 주택위주의 작품전을 갖는것이 바람직함.

다. 작품판넬의 규격을 일정규격 범위만을 정하여 다양하게 출품토록 지도할것이 요망됨.

라. 후일의 작품전에 대비하여 이후 각회원의 완성작품중 우수작품을 그때 그때 발굴하여 출품자료(사진등)를 사전에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임.

마. 작품전의 계획수립은 많은 회원의 열망에 의거 개최 함으로써 성의있고 수준높고 품위있는 전시회가 될것임.

* 꼬리말

전라남도 지부에는 이번 전시회를 축하하는 화분과 꽃바구니 등이 69개나 담지하였다. 전시장에는 이들 화분으로 하여 한 여름의 무더위도 사그러질 정도의 향기가 넘쳤다.

기관 단체로부터 화분 7분, 꽃바구니 5, 타시도지부로부터 화분 9분, 꽃바구니 3, 학교로부터 화분 5분, 꽃바구니 4, 사업체로부터 화분 2분, 꽃바구니 2, 출품작 건축주로부터 화분28분, 꽃바구니 4, 이렇게 하여 화분이 55분에 꽃바구니 14바구니였다.

누구나 꽃을 바라보면 미소를 짓게 된다. 그것은 꽃의 모습이 미소의典型인 때문인지 모른다.

이번 展示會를 마련했던 全羅南道 회원들중엔 그간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난으로 아직도 쓰디 쓴 땀맛에 밤맛을 되찾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地方文化를 빛낸 용기와 정성으로 造形創造藝術人으로서의 建築士의 矜持를 드높였다는 엄연한 사실과 그것은 얼마든지 相殺되기도 남을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創出해내기 위해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創造作業을 해야 하는 建築士—, 그 産苦발에 탄생시킨 作品展—.

문화예술활동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몇몇 大都市圈에서 왕성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전시회는 오염된 商業主義的 屬性에 반기를 드는 순수한 건축예술창작활동의 야심찬 反響舞台였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우선 평가될 수 있을 것이었고, 굳이 표현한다면, 소위 地方文化라는 落後的 뉴앙스를 담은 鄕土文化의 그 實像에 대해 세로올게 가치를 발견케 했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높은 평가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꽃이 미소의典型이어서 바라만 봐도 미소짓게 하듯, 이런 전시회도 많은 뜻을 담은 典型으로서 他市道支部에 본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용기있는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아을 것이다.

忠清北道支部篇



延寬欽 支部長

지부장 인사

지부 순례관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제위께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한된 지면이긴 하지만 충북지부의 과거, 현재, 미래 및 이모저모를 재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으로 충북지부의 면모를 재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온지 20년이 지난 지금 성년이라는 지부심을 갖기에는 모든 면에서 미흡함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이지만 지금 이만큼이나 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 역대 회장님 및 임원님들과 지역사회에서 협회발전을 위해 불신 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분들의 결실이라 생각되고 그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지부는 나름대로 지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보수성에 따른 낙후된 일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지도 않은 건축인이 모인 우리 지부는 타 어느 지부 보다 알찬 성장을 위하여 총력으로 매진 할 것입니다.

이제 성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 창의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간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것이 이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단기 간내에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첩경이 되겠지요.

우리는 성년이 됨과 동시에 20세기를 뒤로 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해야 되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지위와 품위를 스스로 찾아야 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무소 운영에서

부터 건축인으로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새 시대에 맞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우리의 역량을 발휘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건축사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소한 규모의 지의 지부이지만 지부 순례관을 통하여 소개되는 현황, 성장 과정 및 운영방침을 두루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제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부 현황

1965년 최초로 건설부에서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7명의 회원이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의거 대한건축시험회 충북지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표세범회원을 선출 하였으며 간사 감사를 선출하여 청주시 남문로2가 37번지에 지부사무실을 설치하고 출발하였다.

그동안 네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쳐 1985년 3월 27일자로 청주시 북문로2가 116-168번지로 이전하였으며 54명의 회원이 13개 시군에 분포돼 있으며, 지부 및 3개 분소에서 도서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별표 1, 2 참조)

지부의 성장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창립회원 7명이 성년이 된 지금 54명으로서 약 여덟배로 증가하였고 도서 신고 실적 규모로 볼때 1971년 155,232m²에서 1984년도

에는 1,425,863m²으로 아홉배의 업무 신장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대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볼때 성장이나 업무량의 증대라고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충청북도는 성장속도가 둔화돼 있었던 편제로 건축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였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청주시가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그에 따른 성장도 불가피 할때 건축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 지리라고 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지부 54명의 회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성장을 주도 해가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대처할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 지부는 상부상조하는 지부, 동참하는 지부, 화합 단결하는 지부로 우리 자신이 놀랄 만큼 변신해 있을것을 자신하고 있다. (별표 3, 4 참조)

지부의 운영방향

성년이 된 지금까지도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다져온 기틀위에 선 우리는 보다 더 열심히 알차고 내실있는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단련된 우리의 강인한 저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며 우리의 숙원사업을 풀어 갈것이다.

첫째, 지부회관 건립으로 지금까지 네 번의 지부사무실 이전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우리의 보금자리이며 우리의 터전이 될 지부회관을 건립하여 알찬 지부로 성장해 가기 위해

총력으로 매진할 것이며,

둘째, 복지회 운영과 상조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원의 복리증진 및 노후생활 대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갈것이며,

셋째,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전회원이 노력 할 것이며,

네째, 회원의 화합 단결을 위하여 지부운

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윤리관의 확립으로 선량한 다수 회원을 보호하고 소수의 비위회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조치를 할것이며,

다섯째, 전 회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를 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표 1) 년도별 회원수 도서 신고 건수 및 연면적 현황

연도	회 원 수	도서신고건수	연 면 적(m ²)
1971	17	1,565	155,232
1972	18	1,559	181,410
1973	20	1,661	377,754
1974	23	2,333	278,520
1975	28	2,996	361,943
1976	32	2,826	370,168
1977	36	4,024	590,054
1978	36	4,116	641,748
1979	36	5,459	895,755
1980	39	4,335	723,690
1981	40	4,212	695,482
1982	44	4,965	827,056
1983	45	4,925	971,072
1984	56	6,005	1,425,863
1985	54	3,040	849,246

(별표 2) 임 원 현 황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전 화	비 고
지 부 장	연	관	홍	연 용 건 축 사 사무소	2-8090	
간 사	정	순	모	정순모 건축사사무소	42-6471	제 천
간 사	이	용	철	청주건축사사무소	2-3482	
간 사	홍	록	표	동구 건축사사무소	3-5643	
감 사	강	계	식	강계식 건축사사무소	2-2608	옥 천
감 사	연	계	성	청우건축사사무소	3-5484	
분 소 장	김	이	구	예성건축사사무소	2-3082	충 주
분 소 장	유	영	수	선 건축사사무소	2-6253	제 천
분 소 장	이	지	훈	남부건축사사무소	2461	보 은



'85 제 1 회 간담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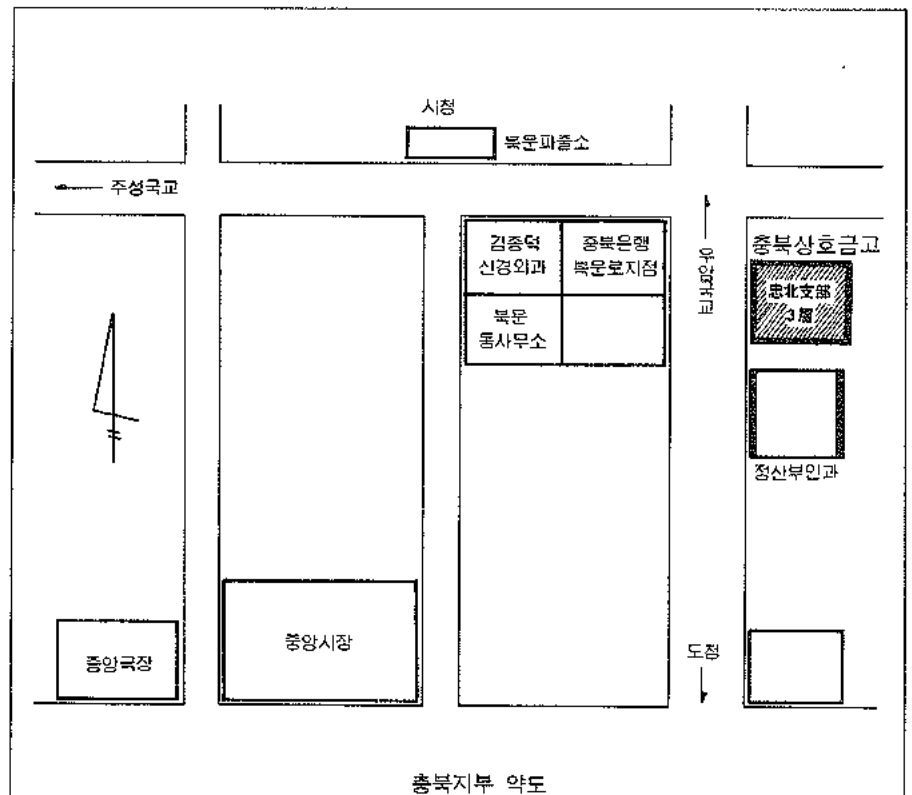
3. 설계와 감리 업무의 분리로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4. 불우아동과 자매결연으로 보호와 보조금 지급
5. 불우이웃돕기 및 농촌일손 돕기
6. 사회정화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에 참여
7.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한 간담회 및 체육대회 개최
8. 회원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무 지도 및 운영 실태 파악
9. 회원과 관계기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10.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

(별표 3) 역대 지부장

대 수	지 부 장
1	표 재 범
2	표 재 범
3	윤 영 재
4	표 재 범
5	정 진 익
6	오 석 균
7	오 석 균
8	표 재 범
9	오 세 형
10	오 세 형
11	연 관 흠

기타 주요업무

1. 지부 및 분소와 시청 민원실에 건축 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에 봉사
2. 도시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검토 실시





'88서울올림픽선수촌·기자촌국제현상설계당선작

서울특별시 '88 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건설하는 올림픽선수·기자촌 계획 설계안의 국제현상공모에 다수의 회원이 참여하여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최우수당선작 1점,佳作 2점, 입선작 6점이 당선되었기 본지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최우수당선작 (1점) _____

- 황일인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우규승 (재미)

가 작 (2점) _____

- 신동해·강기효 / (주)우양건축사사무소+이경주/대명건축사사무소+김병현 (재미)
- 광홍길·양재현 / 건축사사무소 건원+안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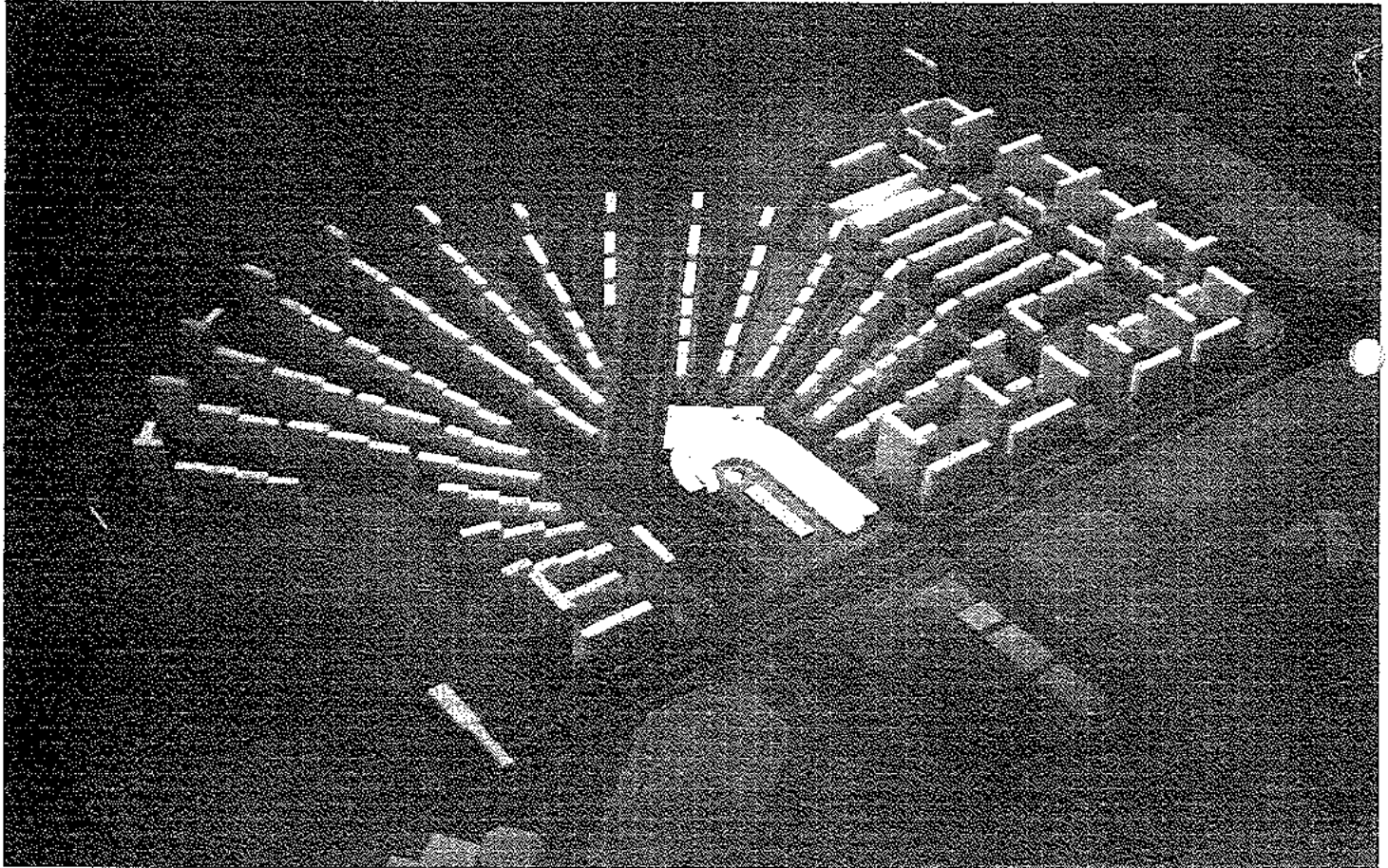
입 선 (6점) _____

- 조성룡·문정일 /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이종상/단건축사사무소
- 김창수·박 승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춘수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중업 /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영희 /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규창 /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영일 (재미)

황일인·우규승 계획안

황일인 / 일전종합건축사사무소 + 우규승 (미)

“최우수당선작”



계획개념

올림픽촌은 올림픽아에서 천막촌으로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나 시설의 의미가 단순히 올림픽행사를 치루기 위한 시설로써의 기능을 해결한다는 차원을 넘어 체육행사를 통한 세계각국의 총체적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개최국의 면모와 역량을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각 개최국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의도에 따라 올림픽촌의 설계를 달리해 왔다.

1972년 뮌헨올림픽의 경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위주로 한 친밀하고 인간적인 주거환경을 통하여 나치즘하의 독일이 갖고 있던 전체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독일의 이미지를 보여 주었으며, 4년후 몬트리올에서는 공원속의 조형물로 설계되어 비록 참가국간의 만남과 축제의 장소로써의 역할에는 미흡했으나 조각적 상징성으로 현대 캐나다의 국력을 표현하려 한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88서울올림픽은 유사이래 한국이 주최하는 가장 큰 국제 행사로서 우리문화의 독자성을 세계에 소개하고 우리자신으

로는 문화, 사회, 경제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88올림픽촌은 우리의 역사적 전환점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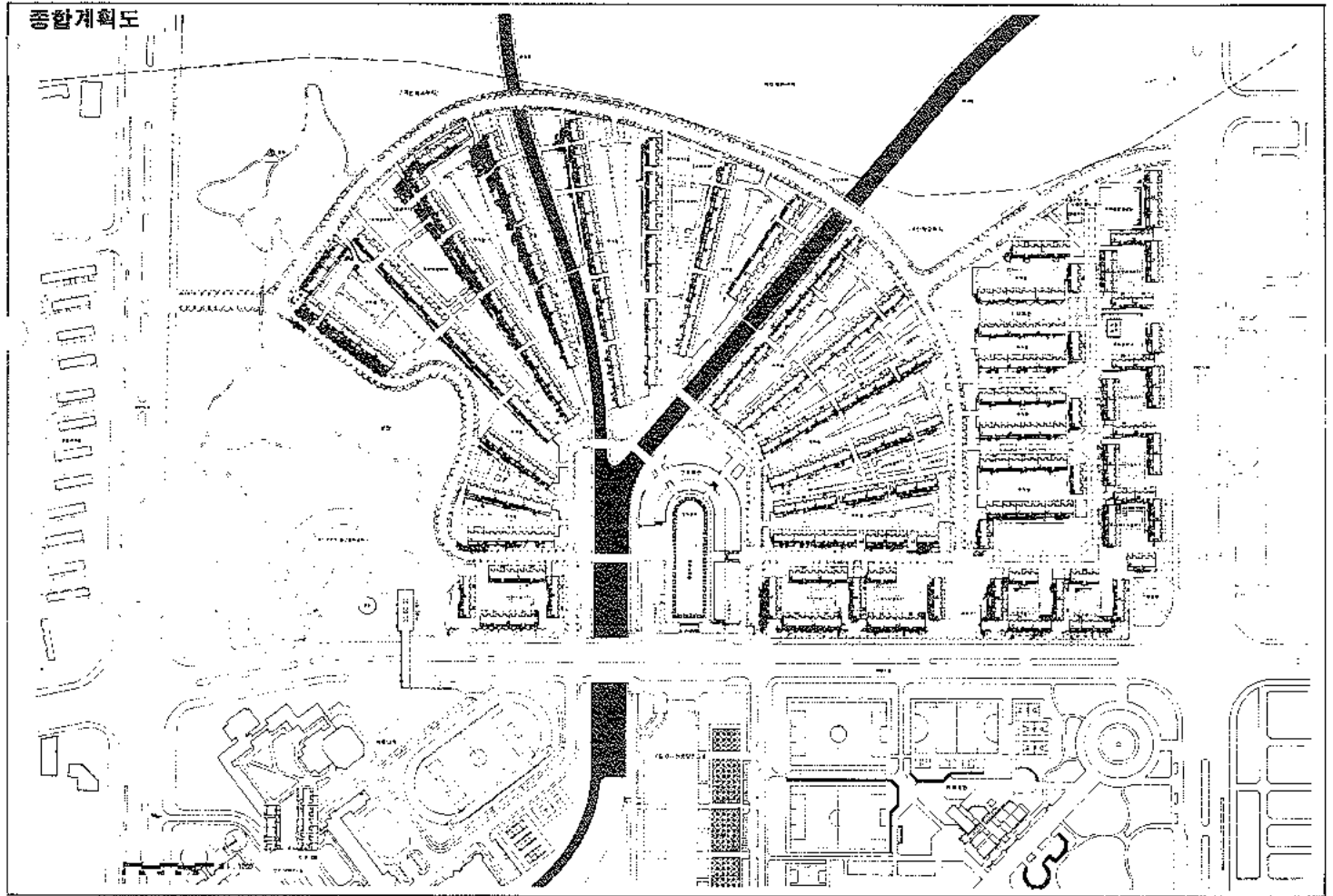
1) 올림픽대회 기간을 위하여

- 전체로써의 강한 인식성
- 모임의 장소로써의 의미와 기능의 제공
-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

2) 대회후 도시주거환경으로써

- 바람직한 한국형 근린우주 및 고밀도 주거유형을 제시하고
- 전통적 내향구조를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혼돈되어 있는 우리의 도시 및 주거문제 해결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위하여 본 계획에서 고려한 주요한 계획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배치개념

가. 대지외각: 주위광역질서와 연계하여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대지내부: 국립경기장측을 이어받는 점을 구심점으로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 국립경기장의 뽕촌토성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자연축을 보존 및 보완하고
- 중심시설과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 중심과 외곽과의 관계를 전의적 변화에 따른 공간의 다양성과 각 지역의 독자적 인식성을 갖게 한다.

나. 외곽전물의 고층화를 통하여

- 한국적 도시공간의 특성인 내향성 도시구조에 의한 아늑하고 안정된 동리분위기를 고밀도 주거에서 실현하고
- 중심과 외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2. 토지이용 계획

가. 자연녹지의 보존

동북쪽 구릉지의 공원화로 원상을 최대한 보존

나. 대회기간중 선수촌, 기자촌은 형태, 위치등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되며 독특한 인식성을 갖고 대회후에는 한 커뮤니티의 두 부분으로 인식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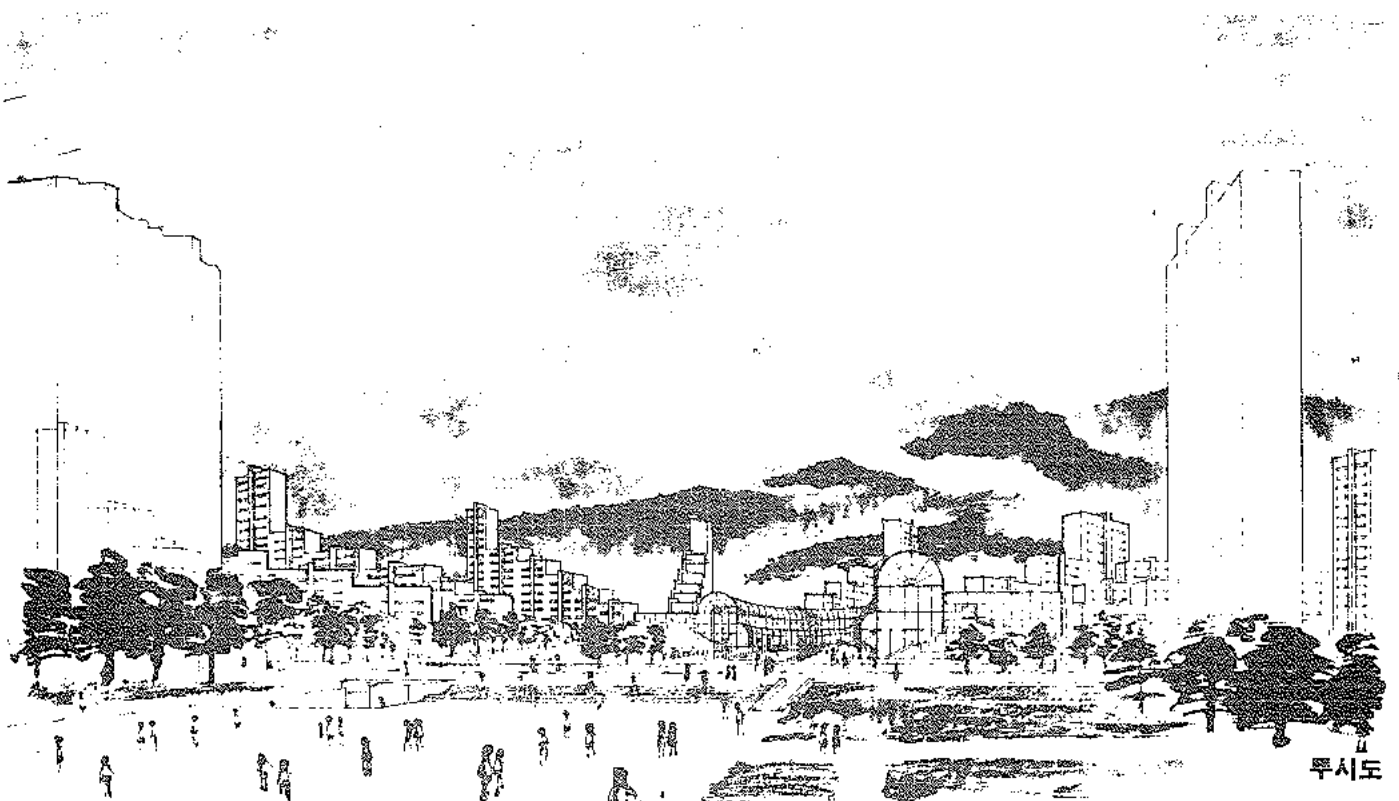
다. 주거부분과 공용시설 부분의 최단거리 유지

- 선수촌의 공용시설은 방사형의 구심점에, 기자촌의 공용시설은 기자촌입구에 가까운 중심부에 위치하여 각각 대회중 두 지역의 중심이 된다.
- 대회후 방사형 배치의 중심부분에 편의시설, 외곽부분에 근린시설(학교, 교회, 유치원, 놀이터등)을 배치하여 각 주거단위로부터 최단거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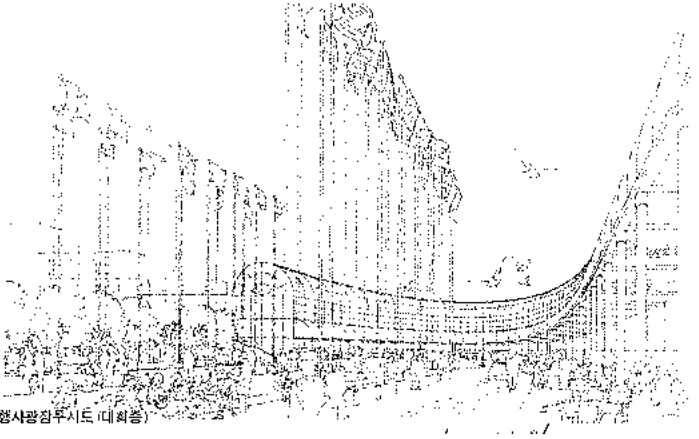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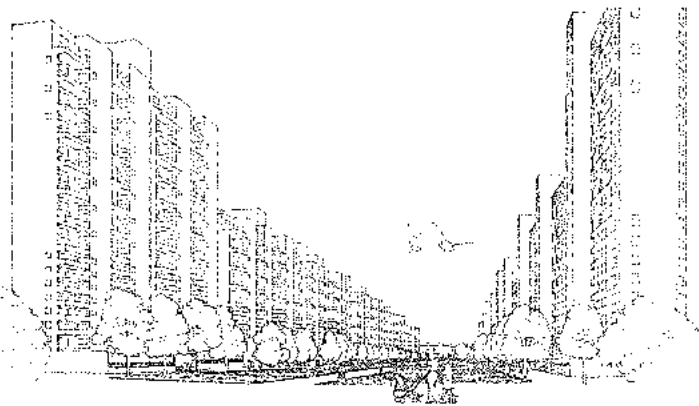
3. 오픈스페이스 계획

가. 연결된 녹지체계의 확립

각 주거동의 주변관과 접속되는 가로공원은 녹도및 공원체계에 연결되어 지구내의 어느곳이나 녹지체계를 통해 갈 수 있으며 주거와 녹지와의 접촉면을 최대화 한다.



루시도



행사광장루시도 (대회중)

나. 다양한 외부공간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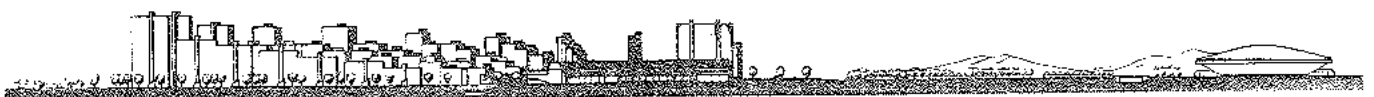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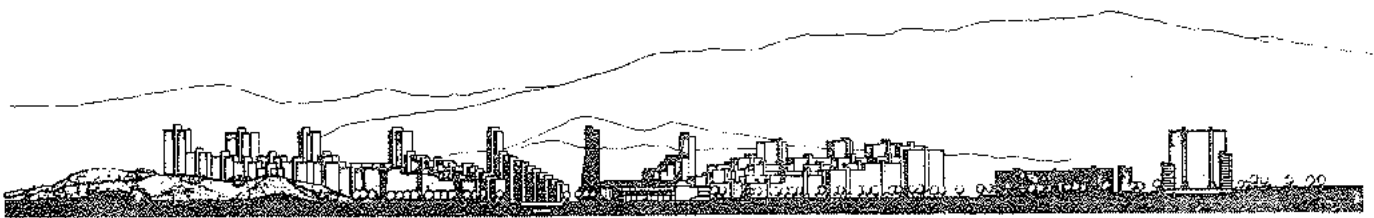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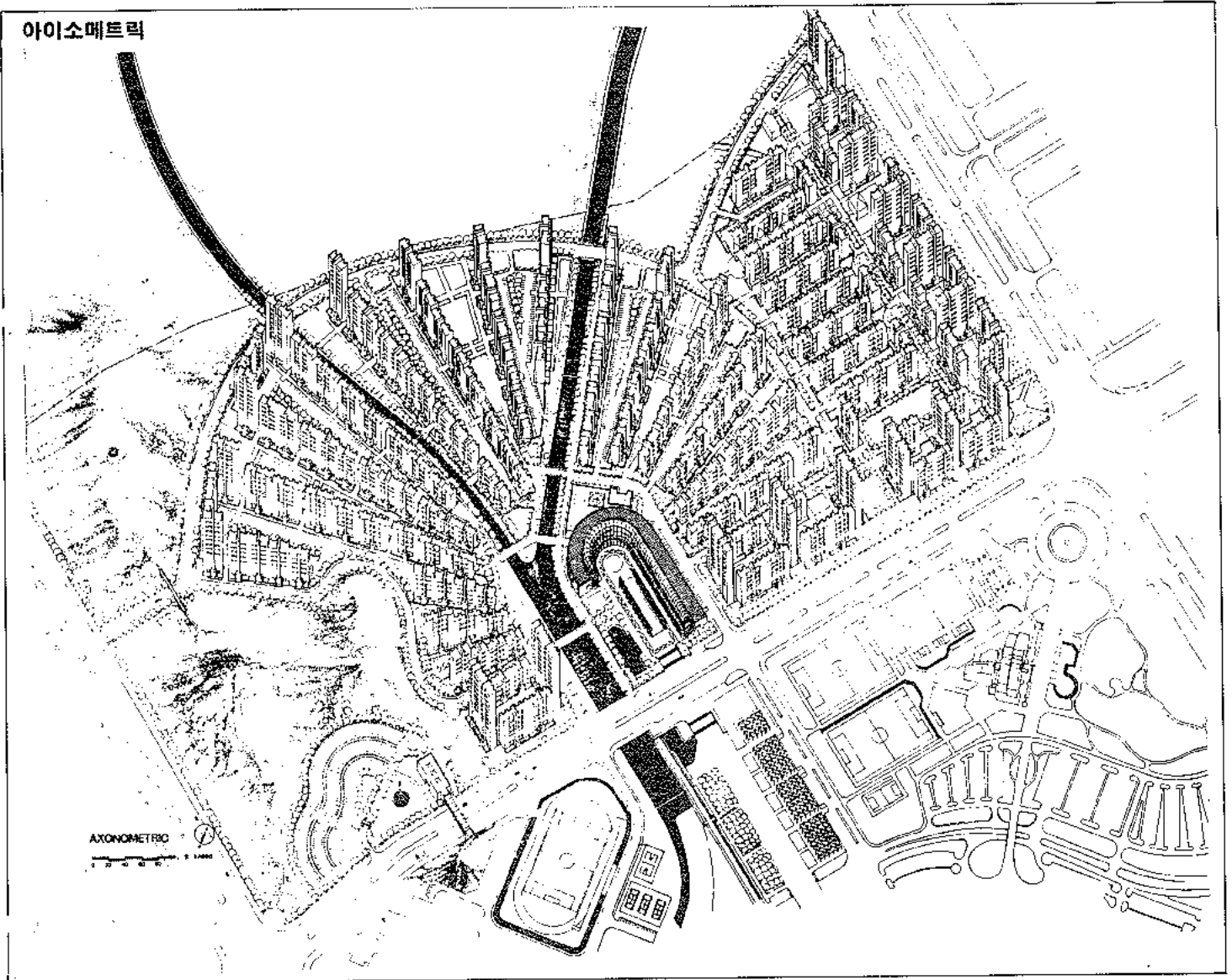
각 주거는 쾌적한 가로공원과 주차장을 한쪽씩 면하고 있어 그 전망이 다양하고 집안에서 주차장 및 놀이터의 어린이 감독이 용이하다.

다. 광장계획

- 올림픽 기간중 축제의 중심으로 NOC 기 개양대가 있고 옥외집회, 옥외카페, 휴식, 교회 및 다목적공연의 장소
- 밤의 광장 : 광장 중심부에 위치한 빛의 원반은 유리로 포장되고 지하에서 조명되어 축제의 불을 상징하고 밤의 무드, 집회의 초점이 된다. 주변 아케이드의 불빛과 고층아파트의 계단식 축벽에 장치된 조명장치와 싱크로나이즈하여 올림픽기간중 야간의 빛의 제전을 계획할수 있으며 비디오 기술과 연관된 전자시대의 축제를 구현한다.
- 대회후 : 기념광장의 기단위에 참가국의 국기와 메달수상자의 이름을 각인하여 보존하고 기단의 주변은 동절기 아이스링크가 된다. 빛의 원반은 조명된 빙판으로 피겨스케이팅장이 되어 아케이드의 카페와 함께 서울의 명소로 남게 된다.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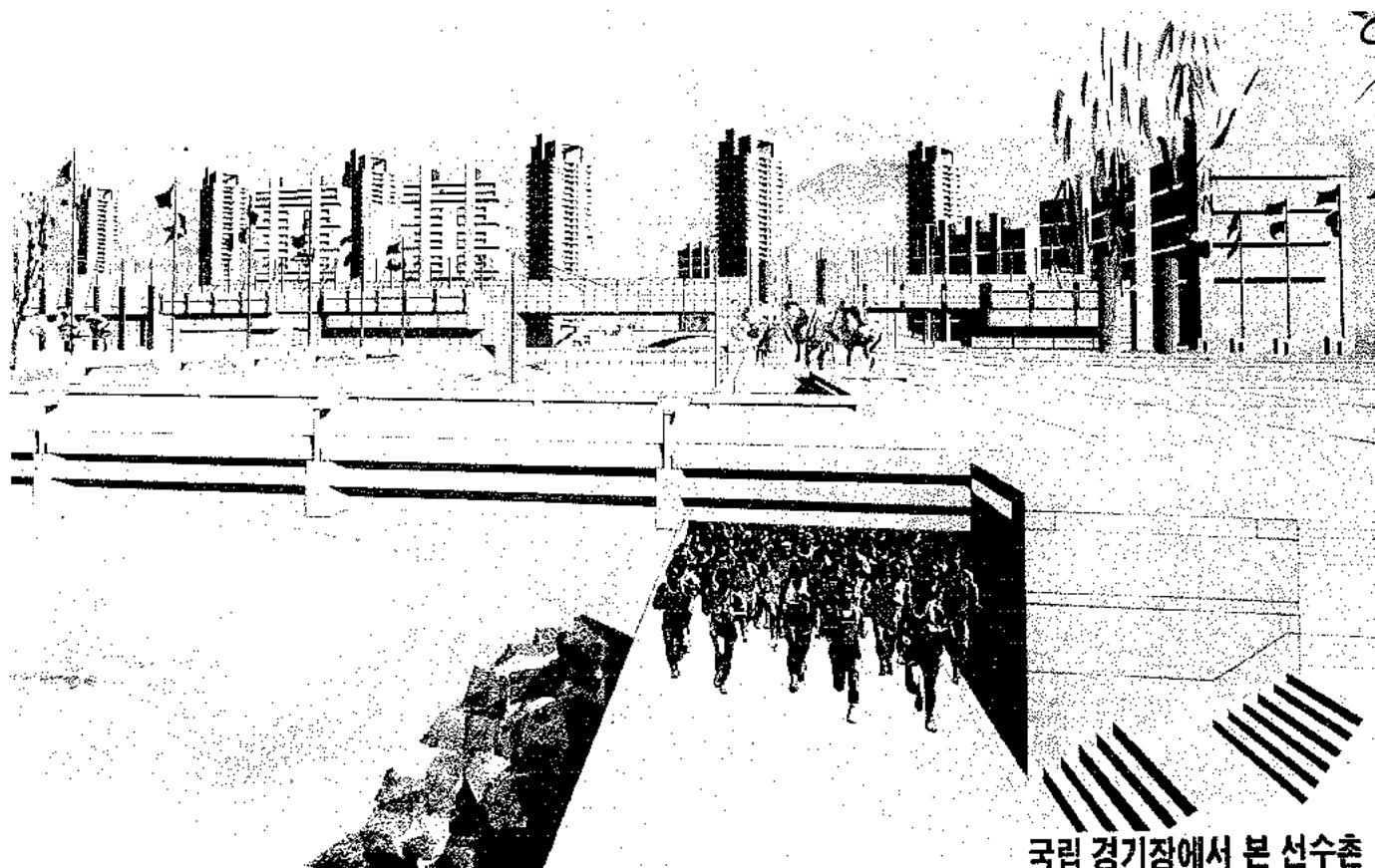


신동해·강기효·이경주·김병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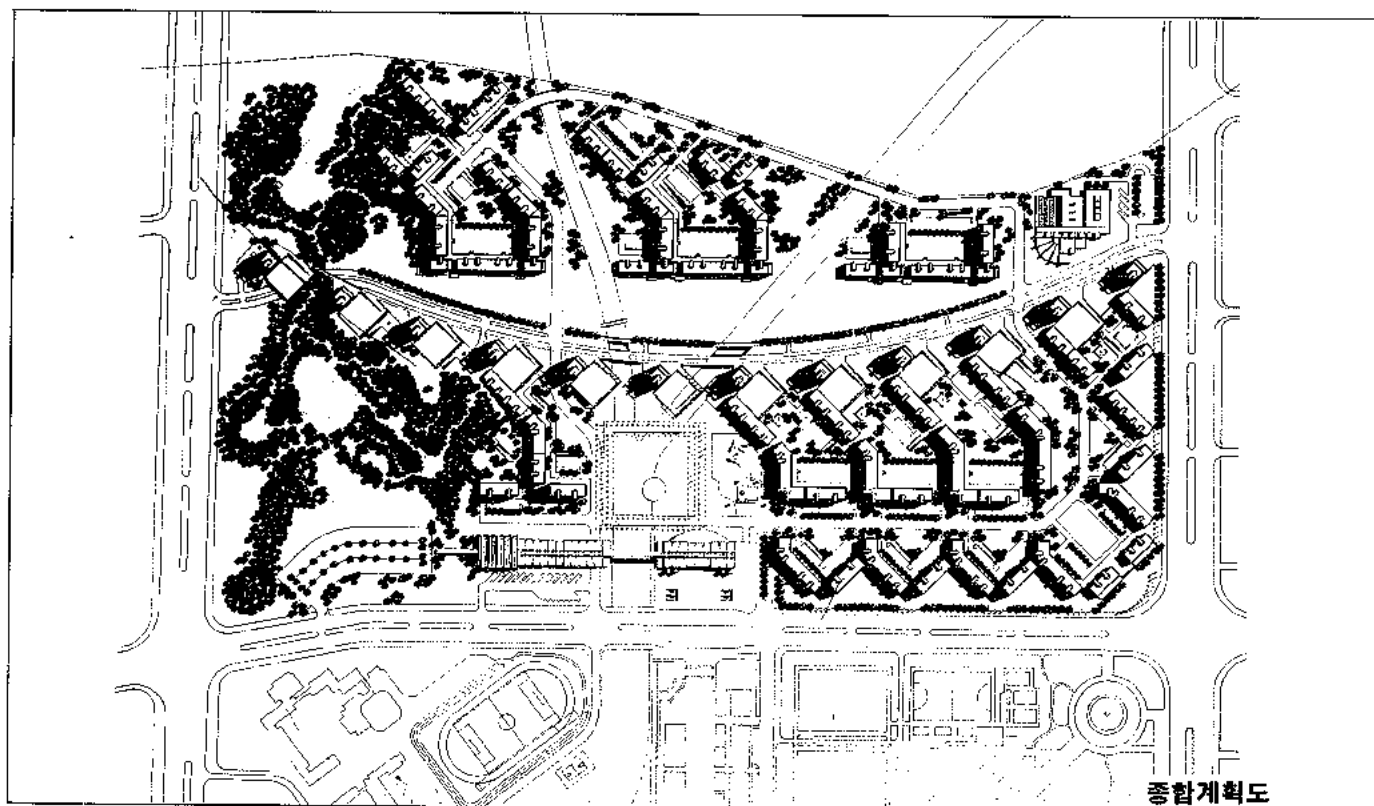
신동해·강기효 / (주) 우양건축사사무소

이경주 / 대명건축사사무소 + 김병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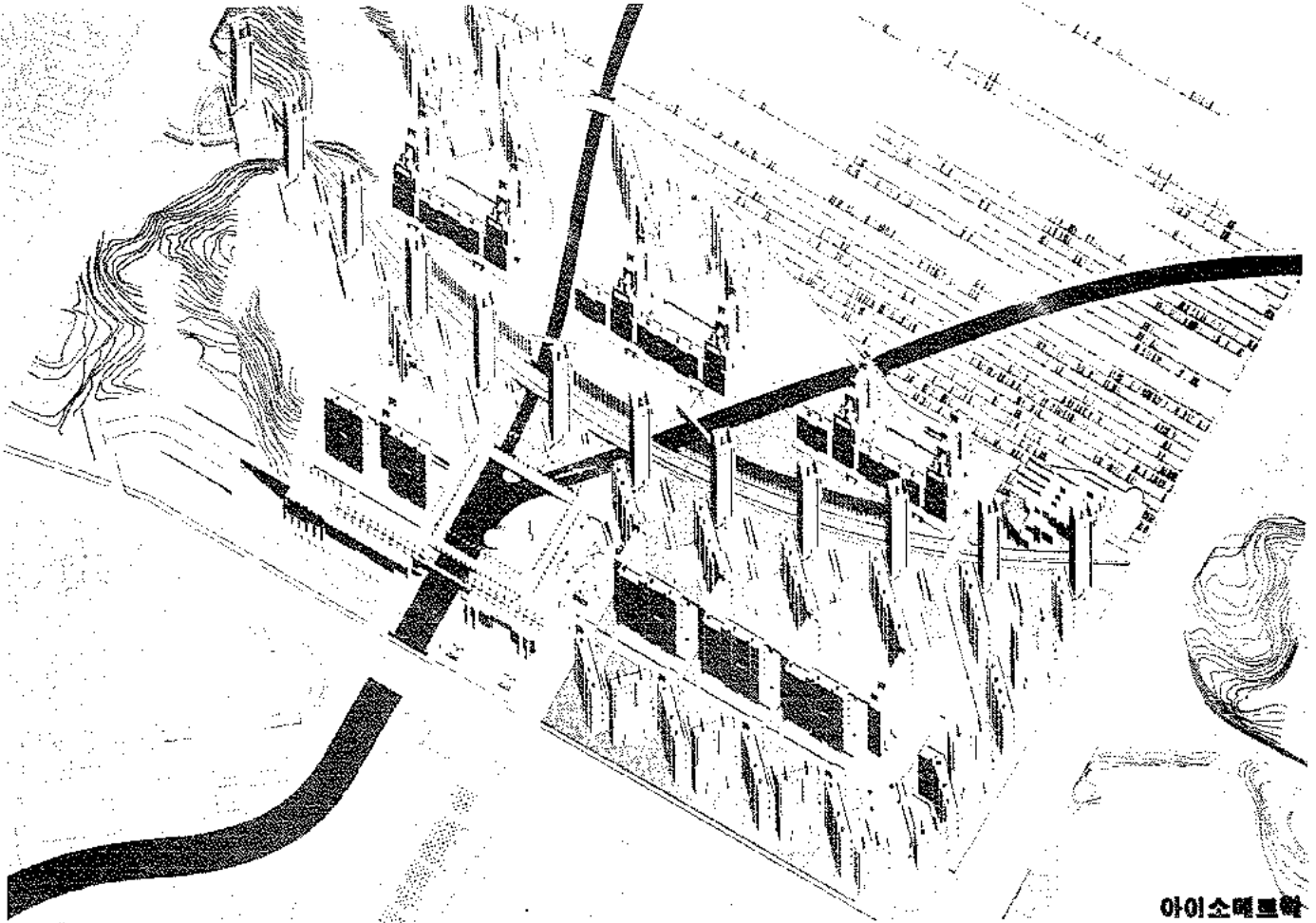
“가작”



국립 경기장에서 본 선수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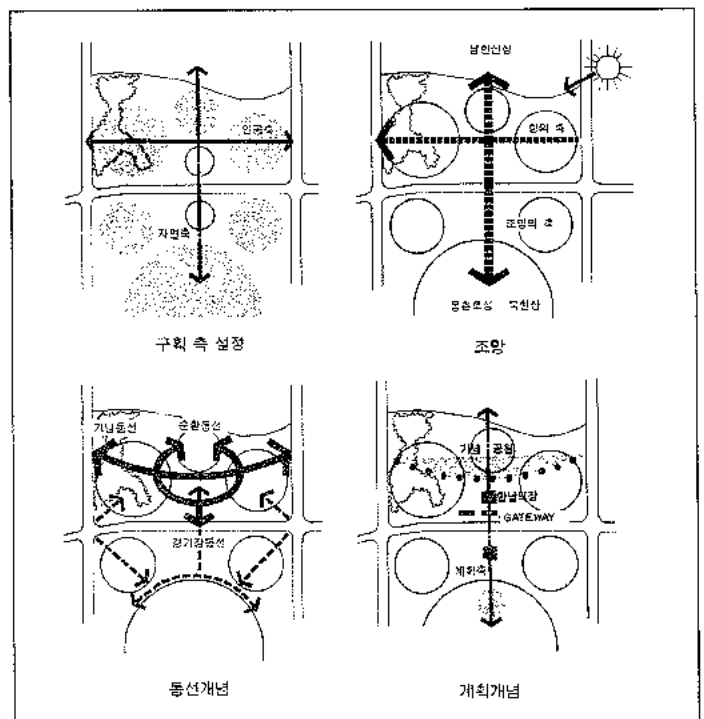
종합계획도



아이소메트릭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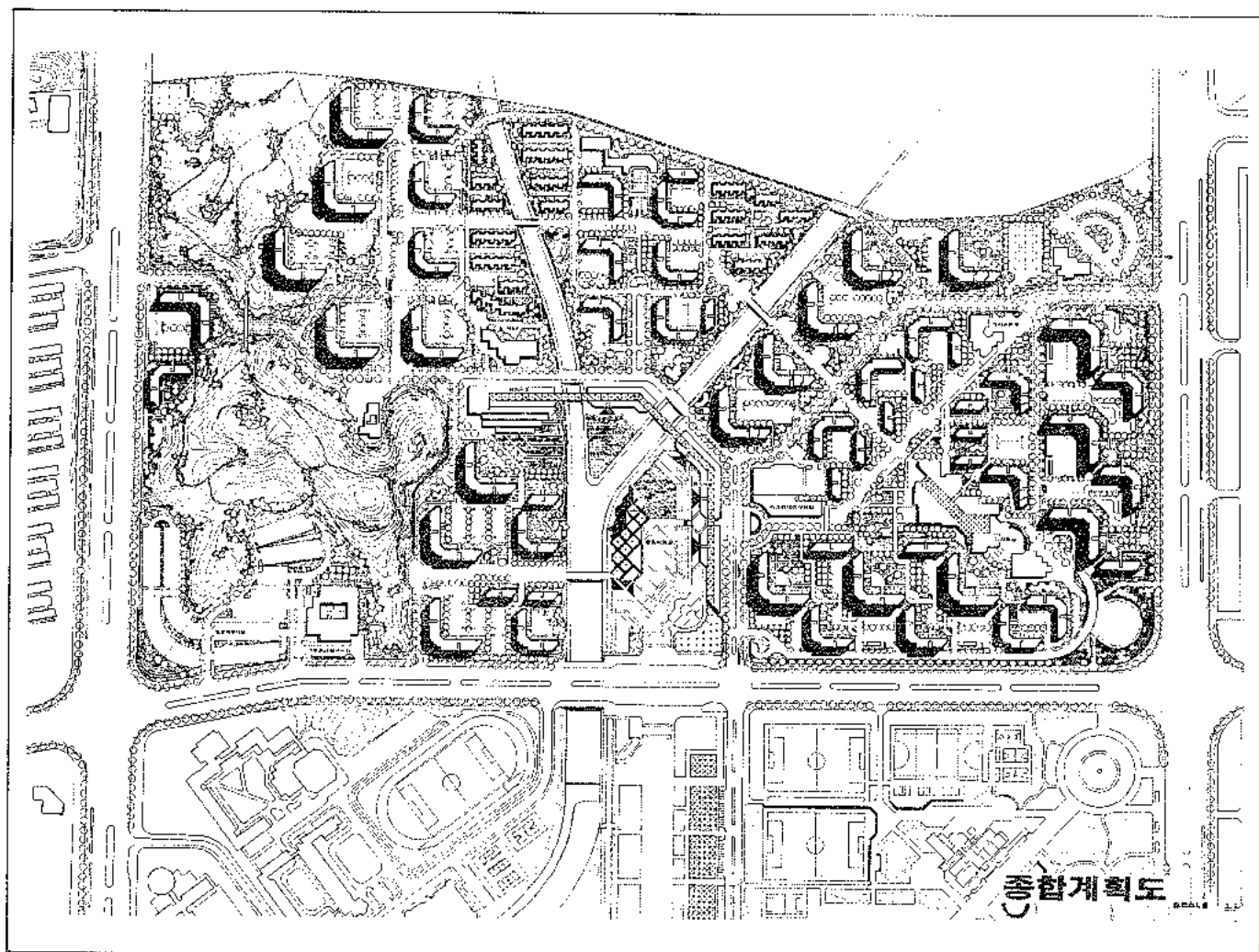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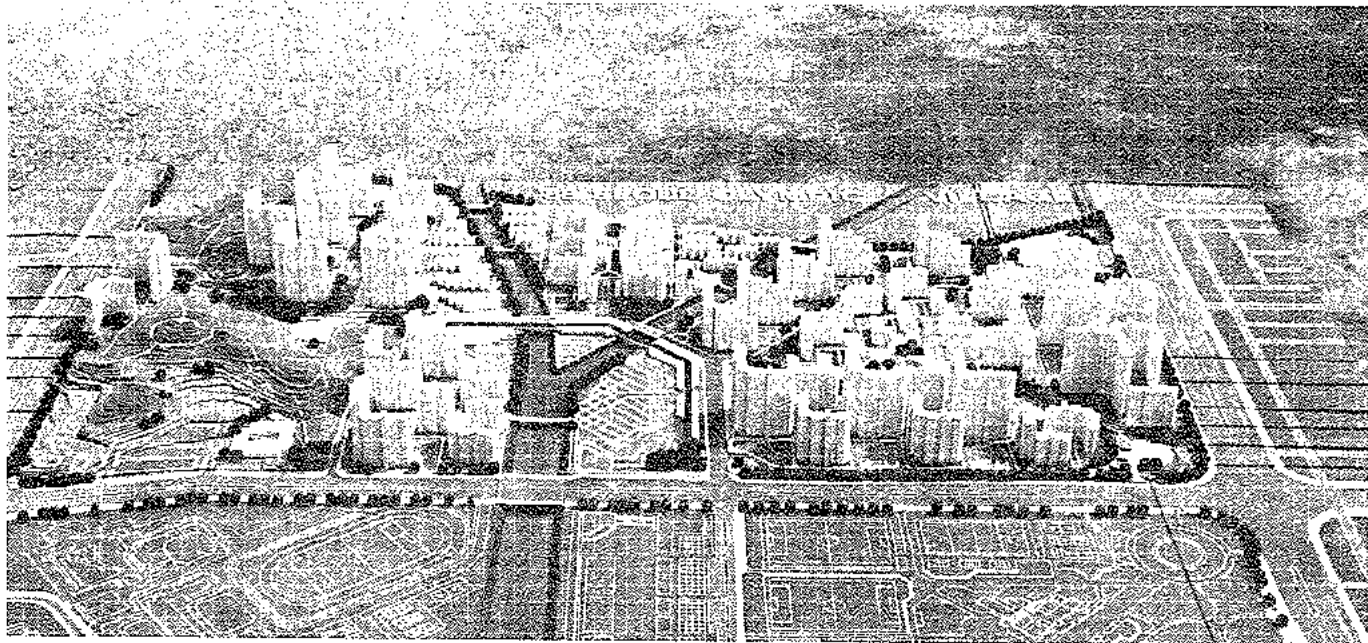
- 올림픽대회시에는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대회후는 입주민에 편리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및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
- 올림픽의 기본이념인 친목과 화합을 위한 광장을 전통적인 방형(方型)개념에 의거하여 조성하고, 대회중의 우호와 축제의 환경을 조성
-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배치 및 시설계획을 하여 관리 및 보안유지에 대한 합리적 체계를 세움
- 원활한 동선체계 및 단순 명쾌한 접근성 시도
- 한국 이미지의 부각 / 한국 문화의 반영
전통건축의 표면상의 복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재조명한 진취적인 주거문화 유형을 제안하며 현대적인 기능에 전통적인 기법과 세부상세등의 계획요소를 반영
- 국립경기장의 중심축을 연장 완결하는 공간배열로 경기장과와의 연계 효과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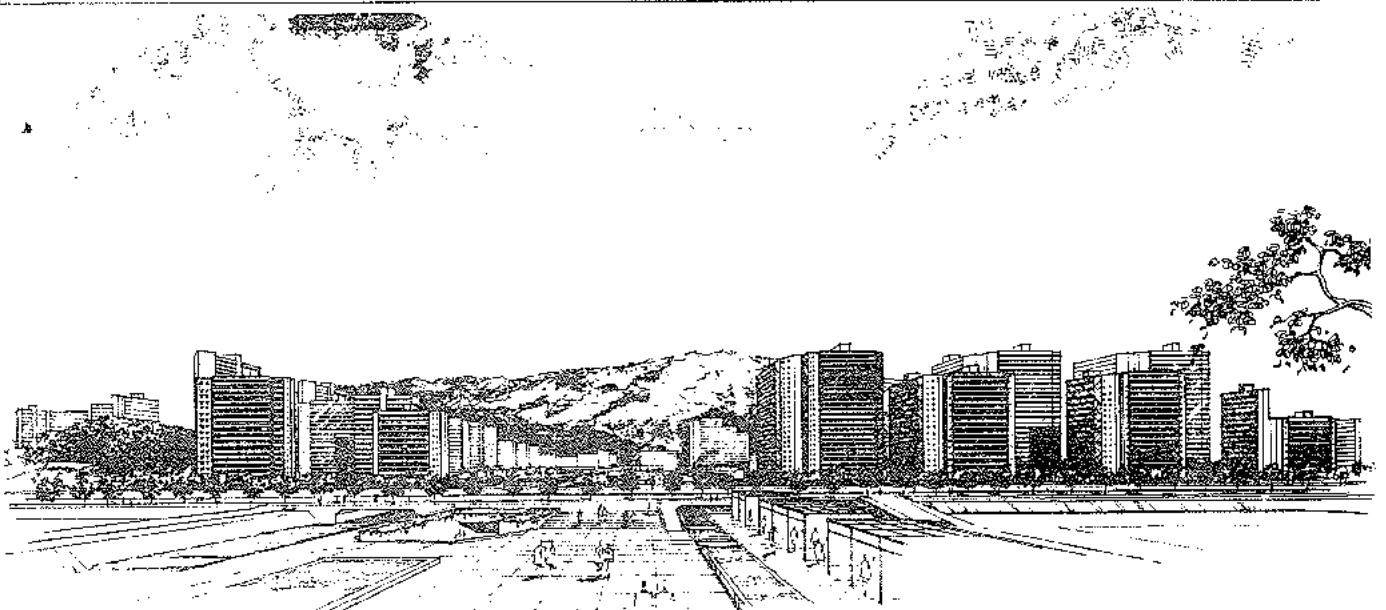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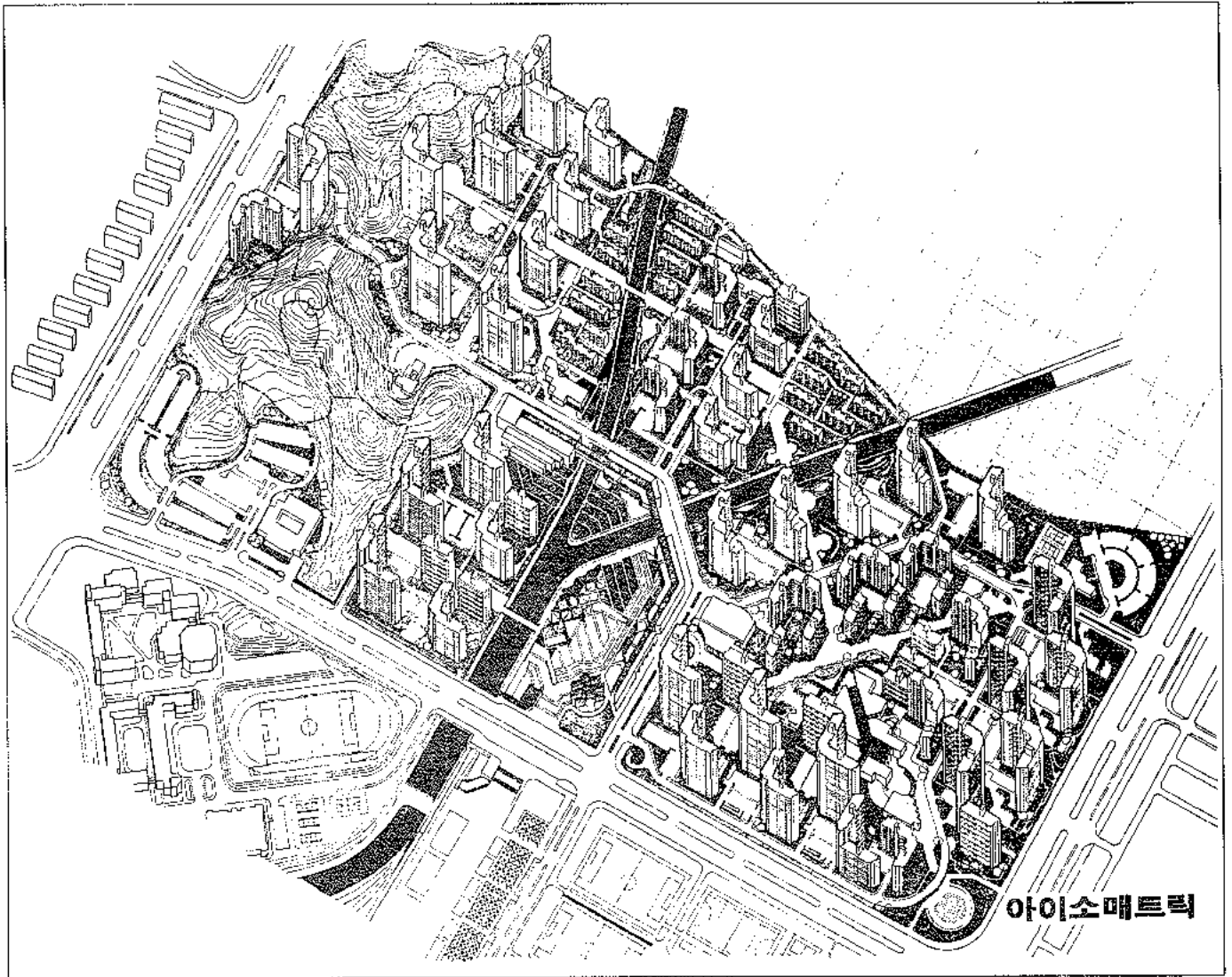


곽홍길·양재현·안건혁 계획안

곽홍길·양재현 / 건축사사무소 건원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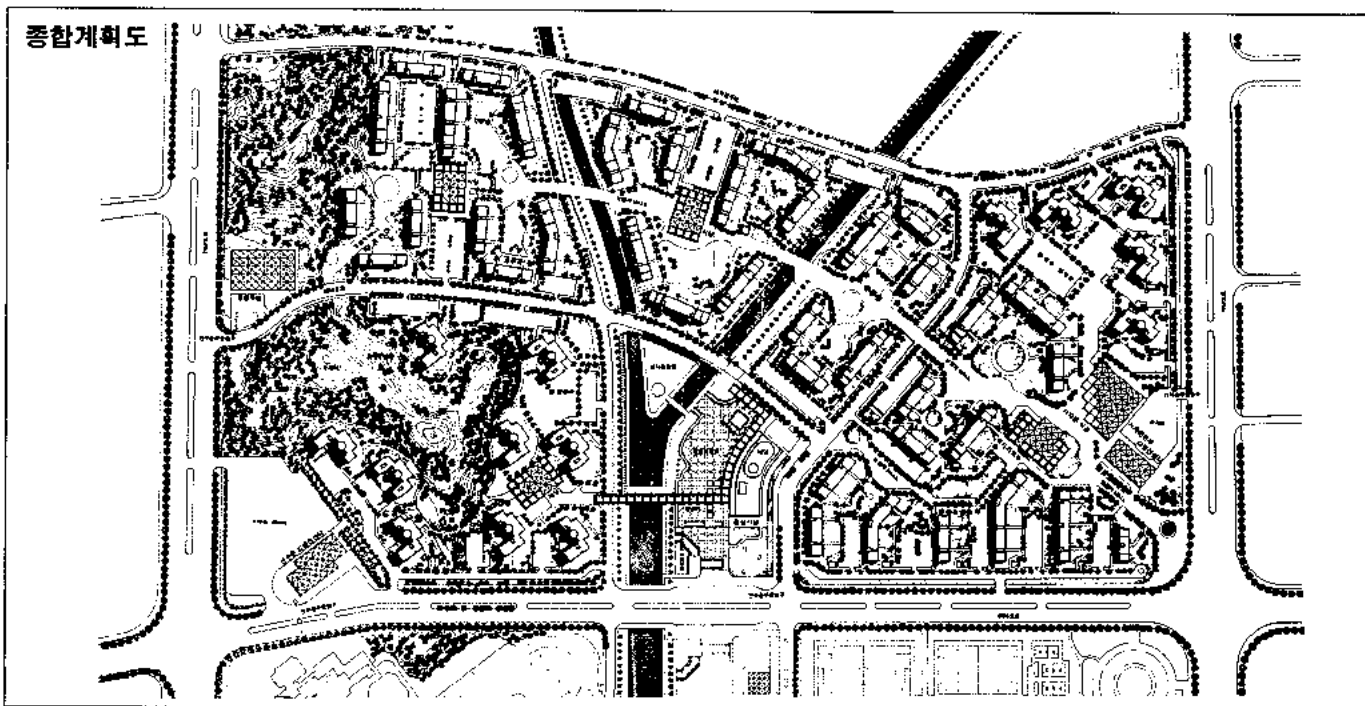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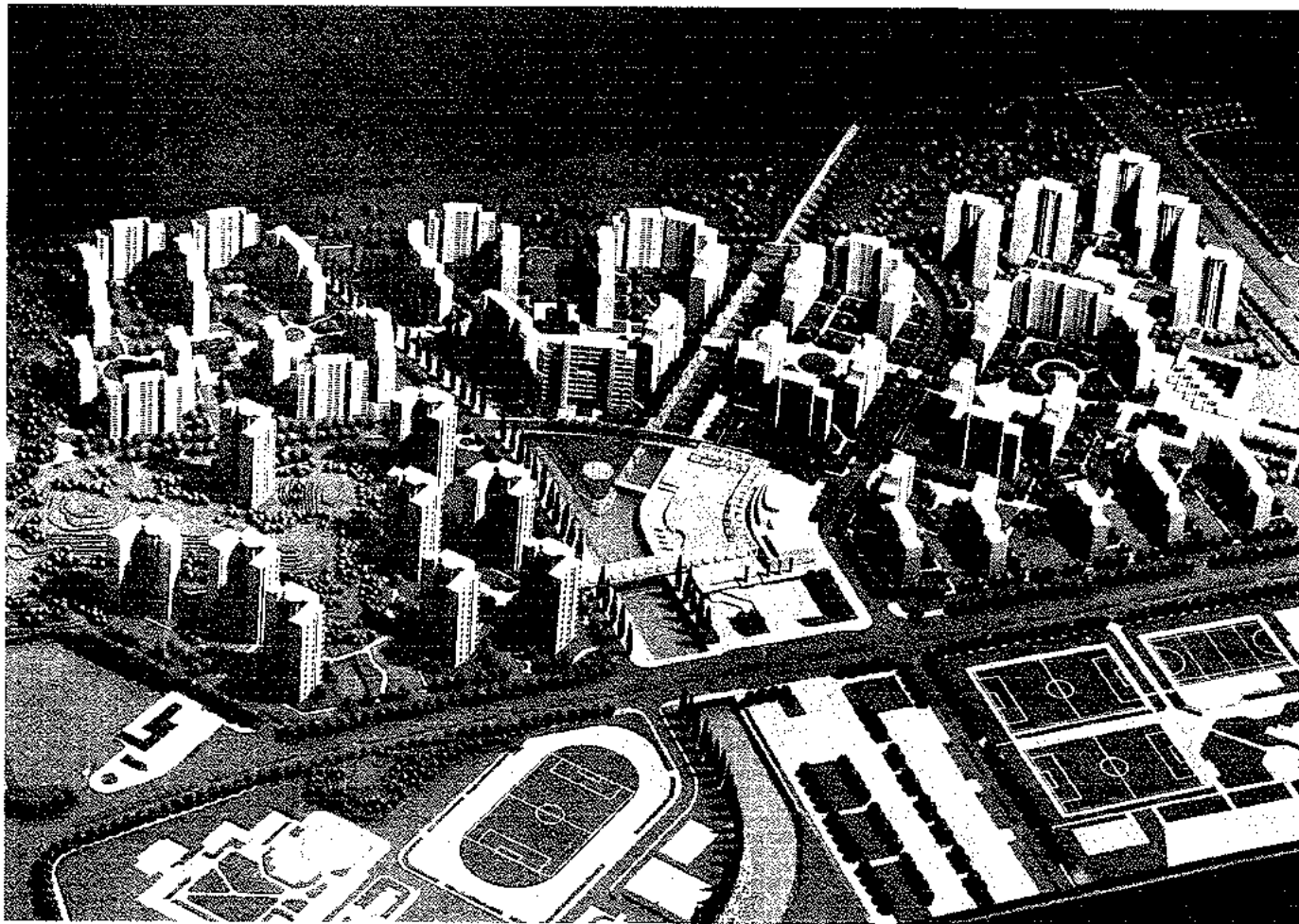


조성룡·문정일·이종상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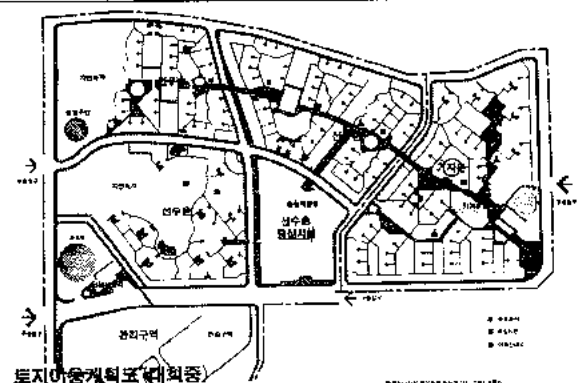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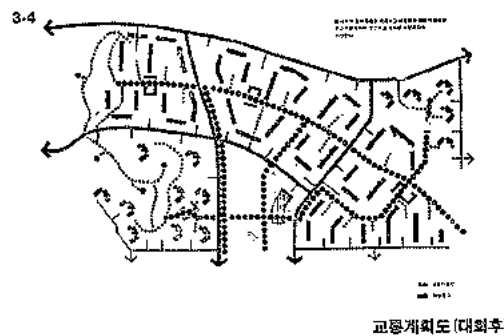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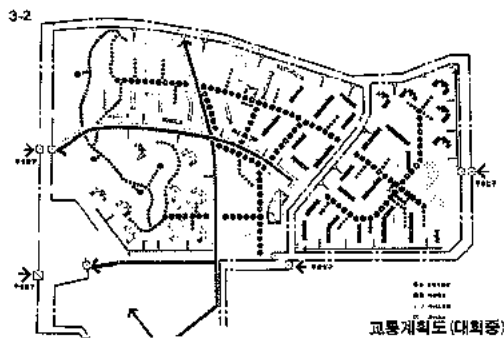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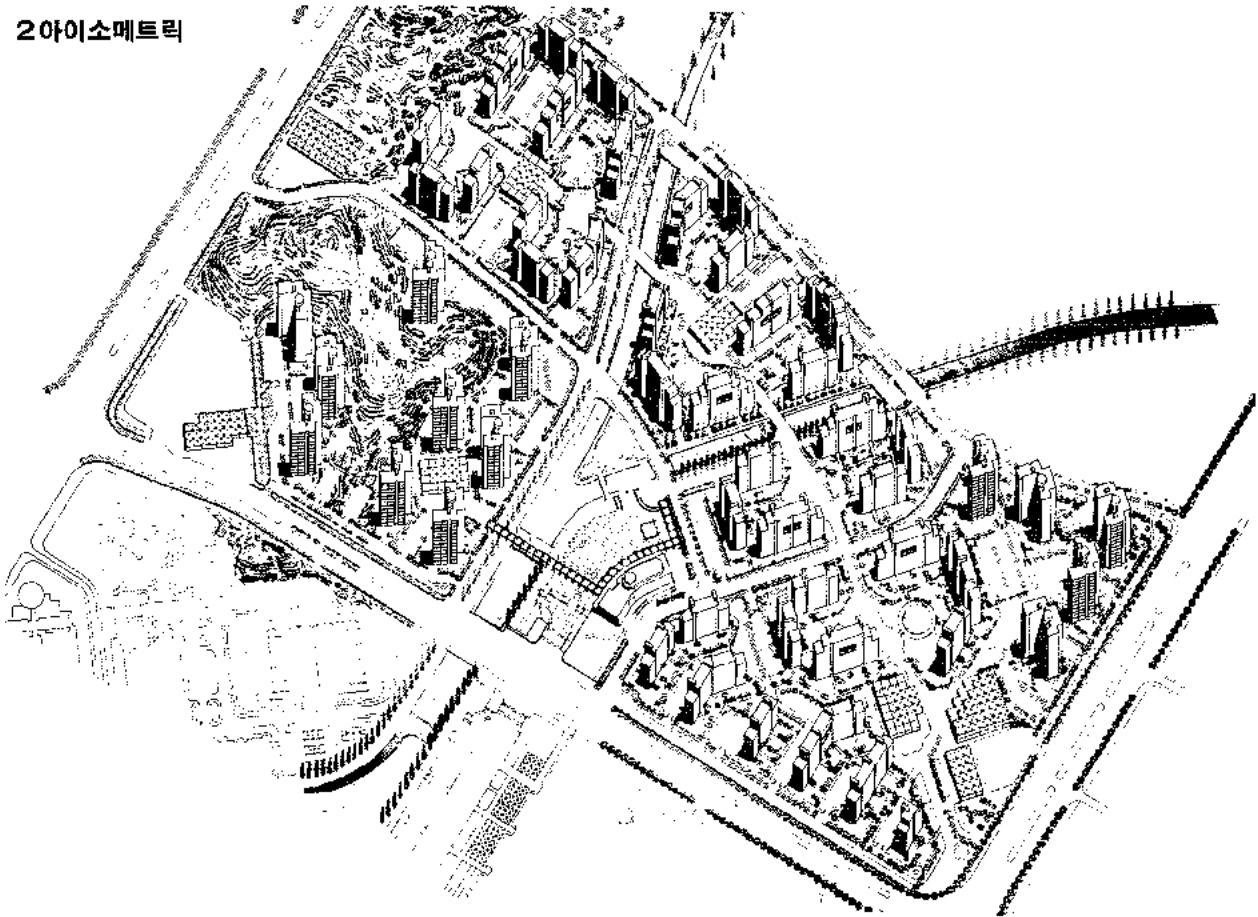
이종상 / 단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룡·문정일 /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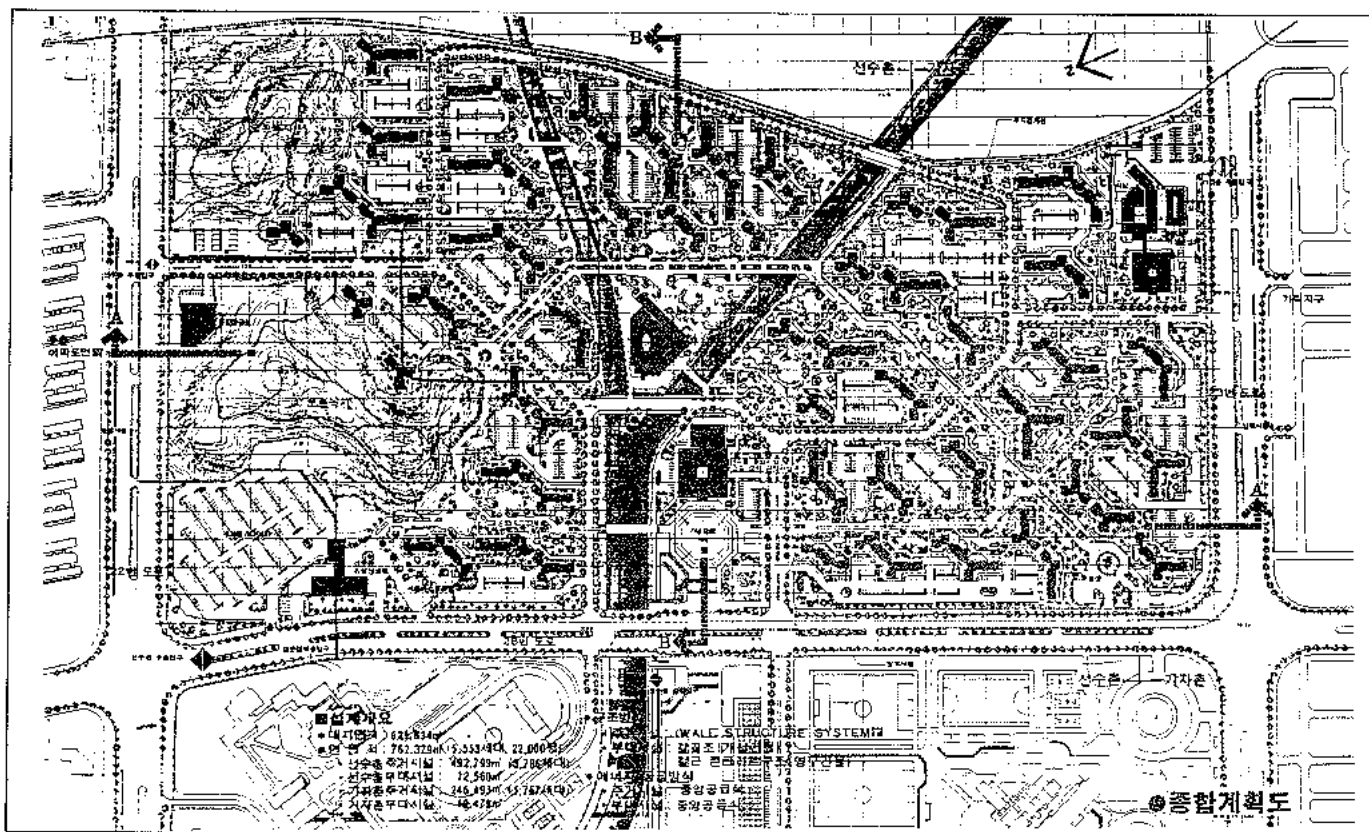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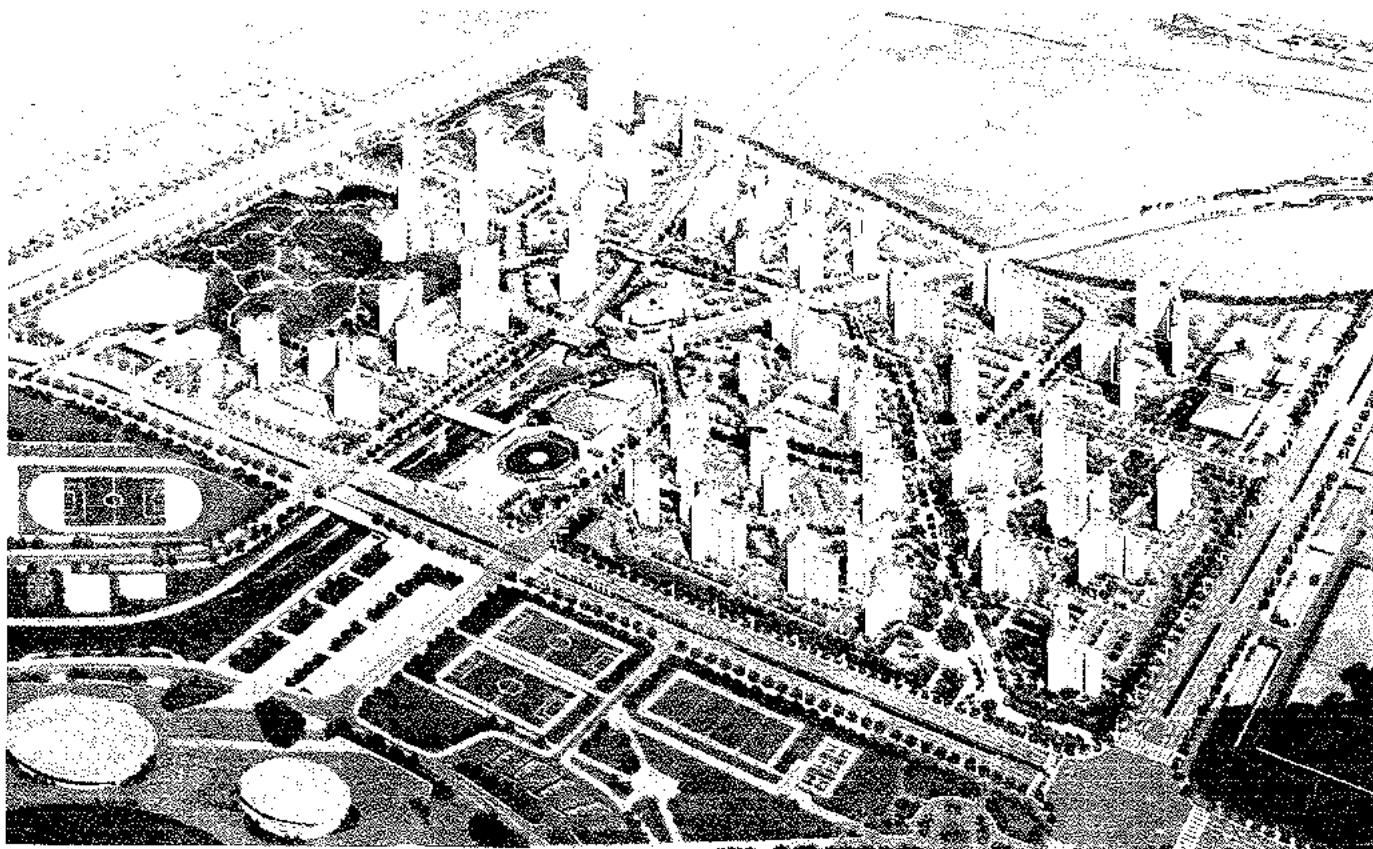
2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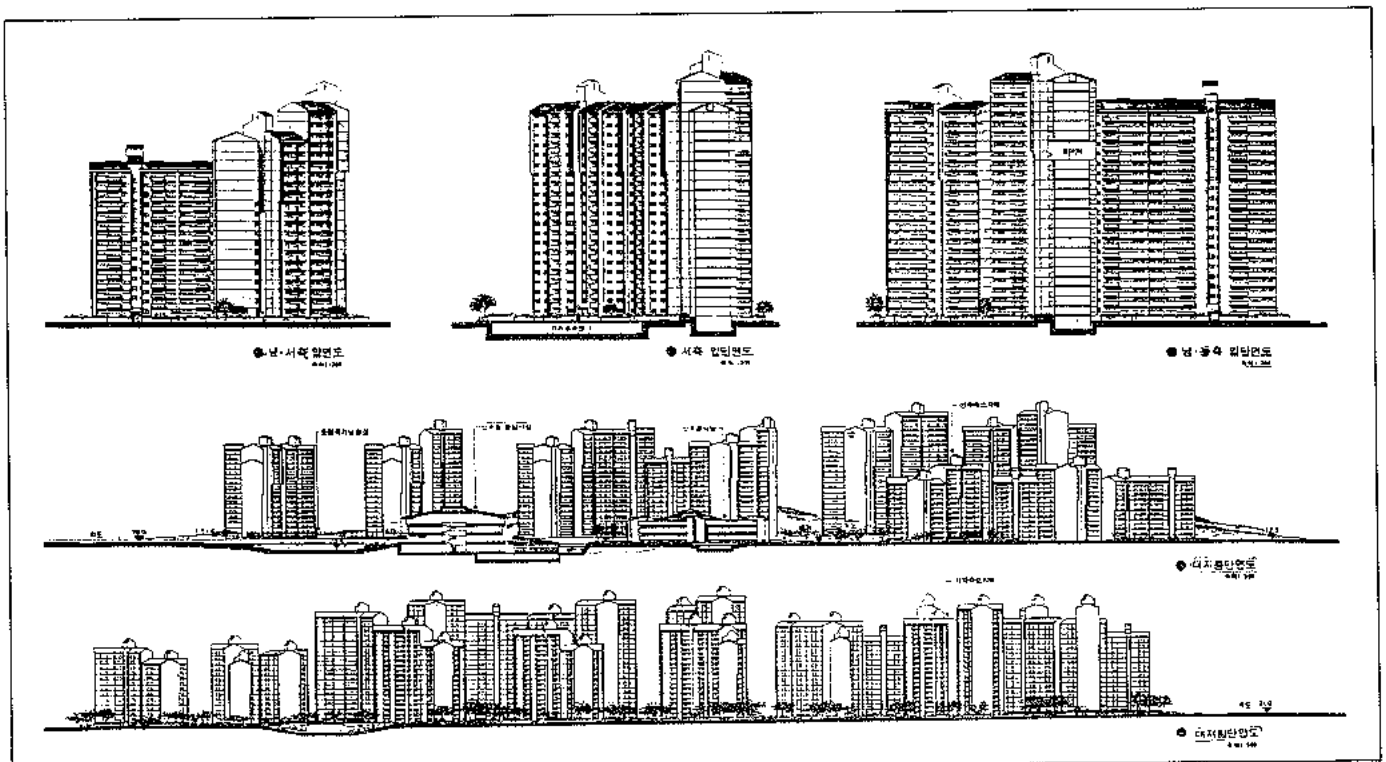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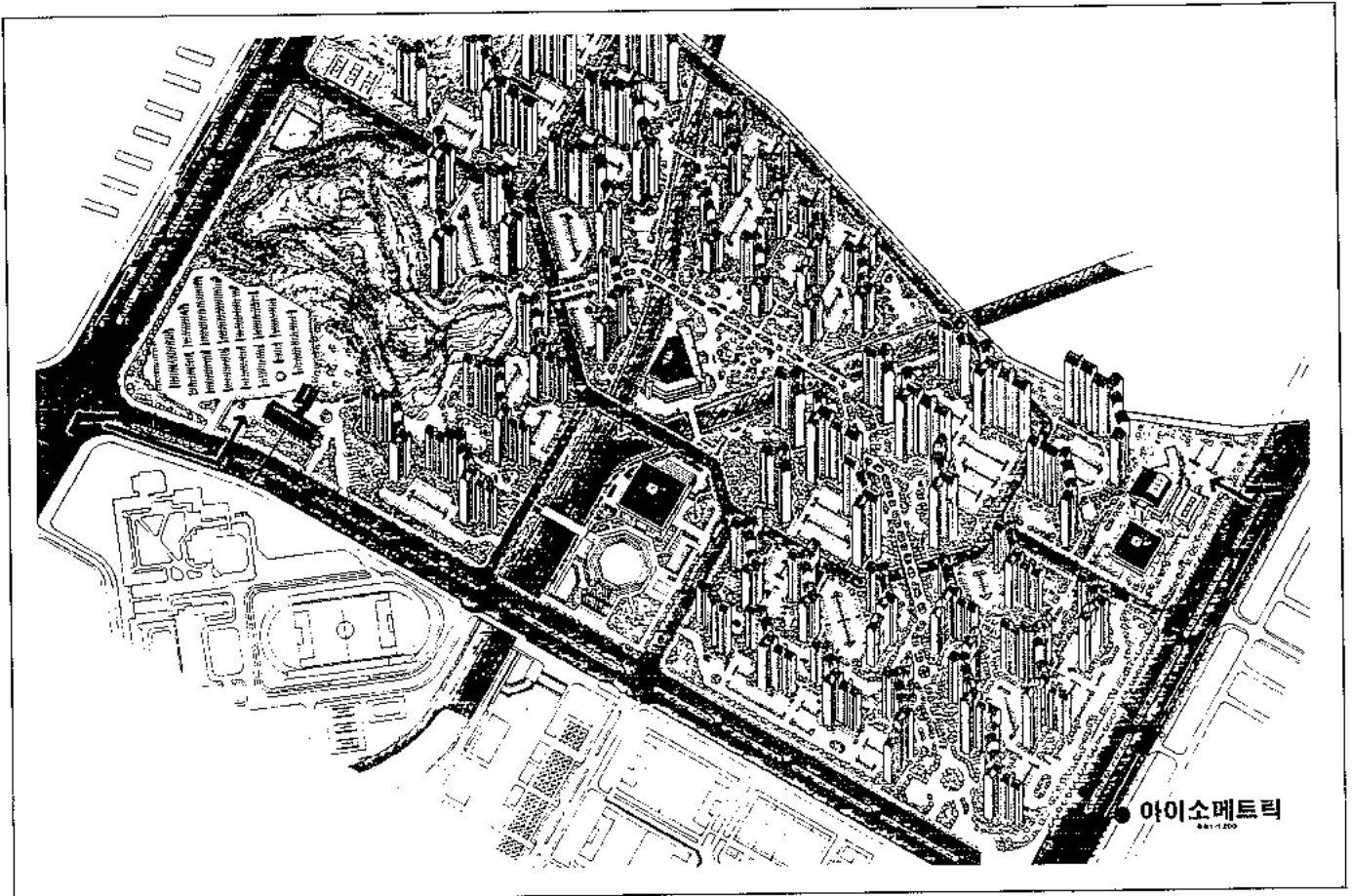


유춘수 계획안

유춘수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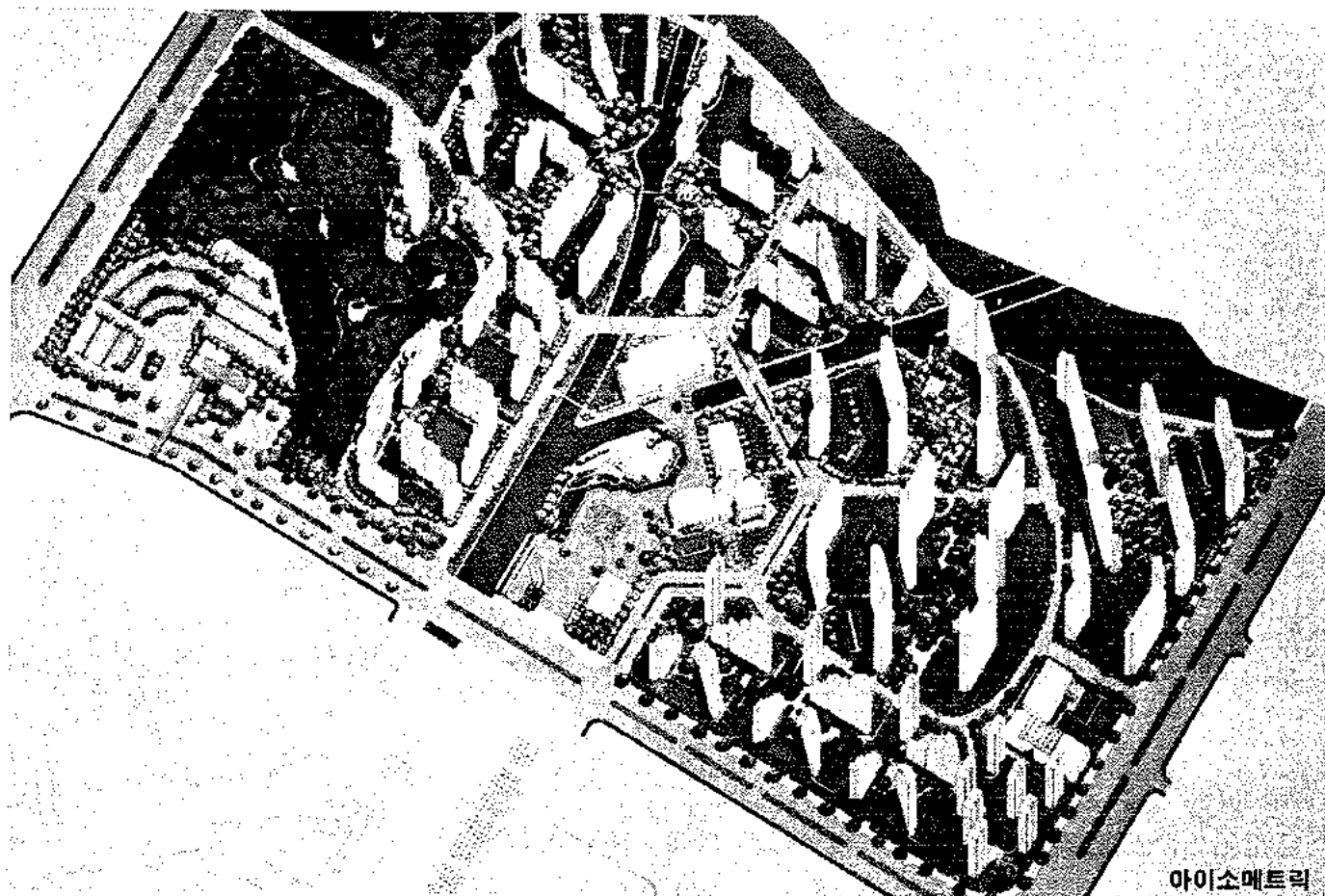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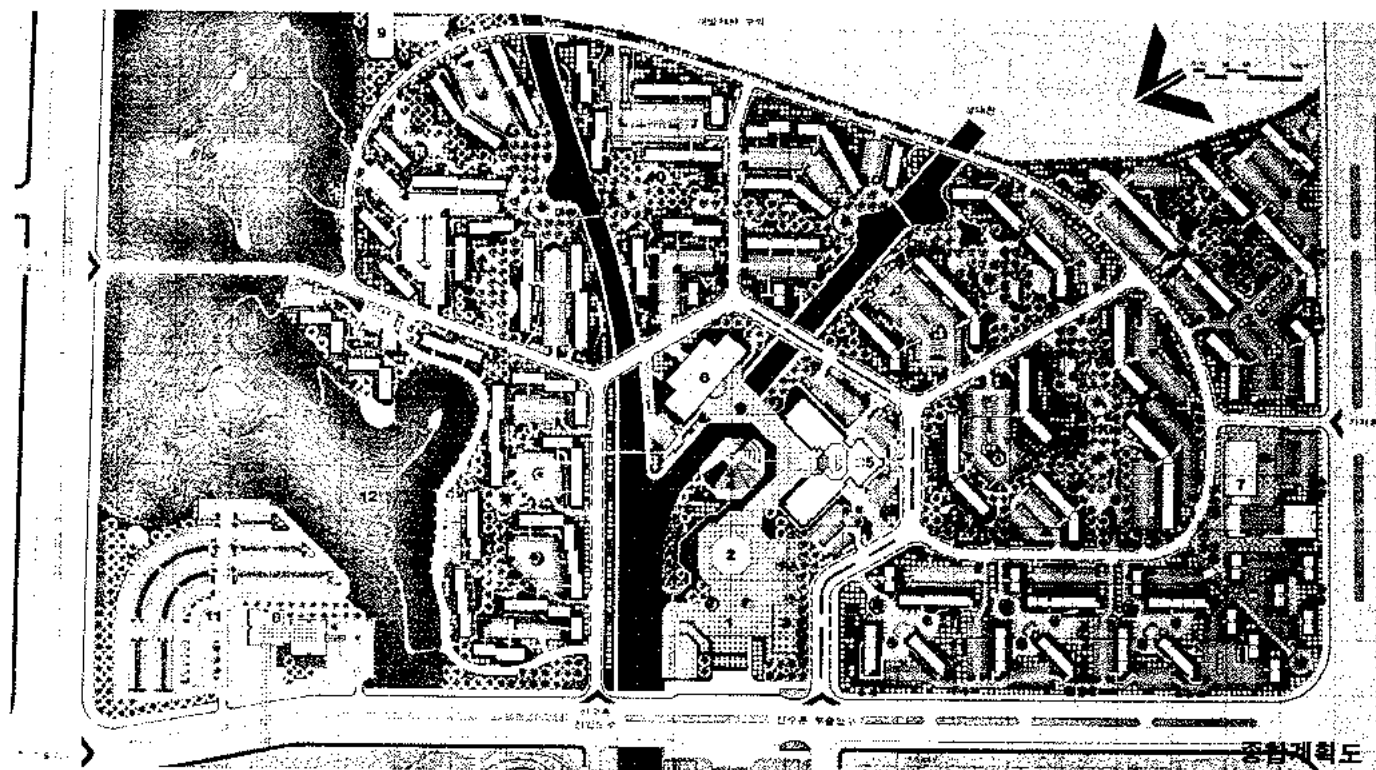




김창수·박 승 계획안

김창수·박 승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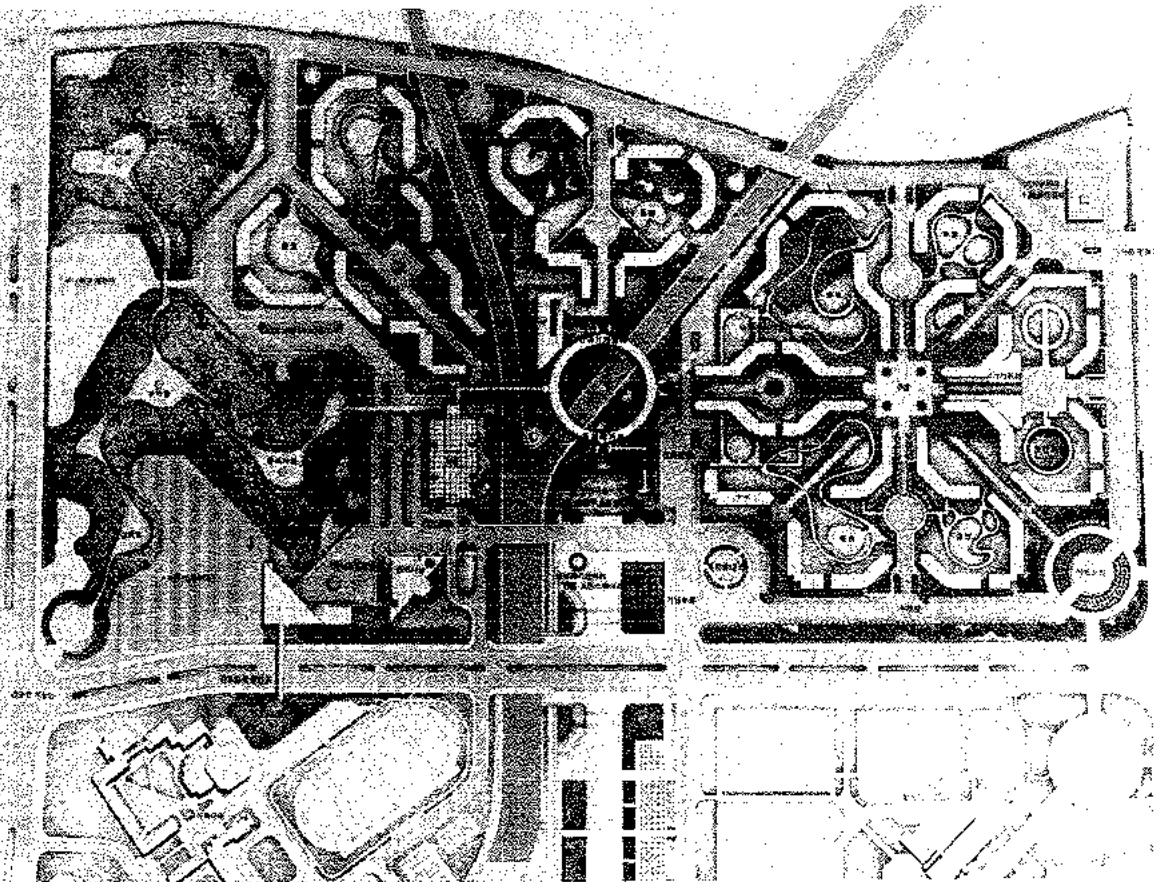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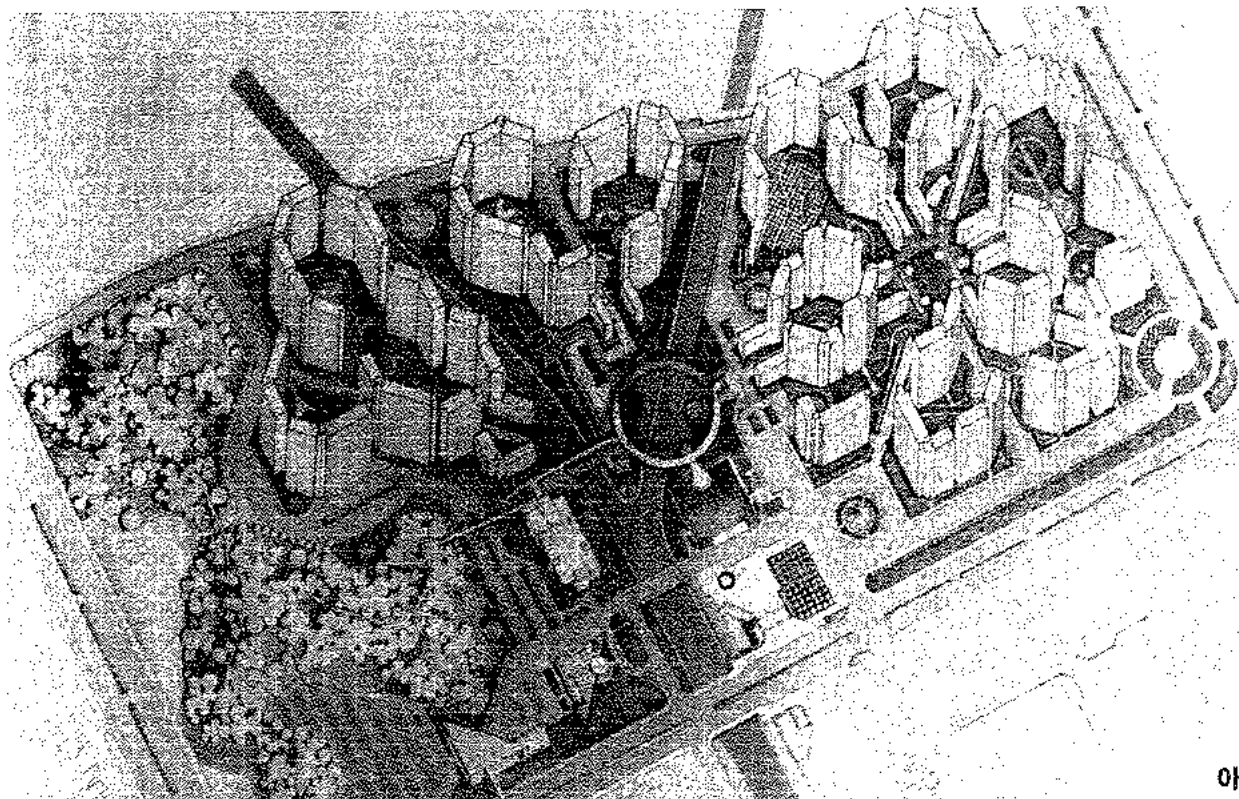
김중업 계획안

김중업 /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입선”



종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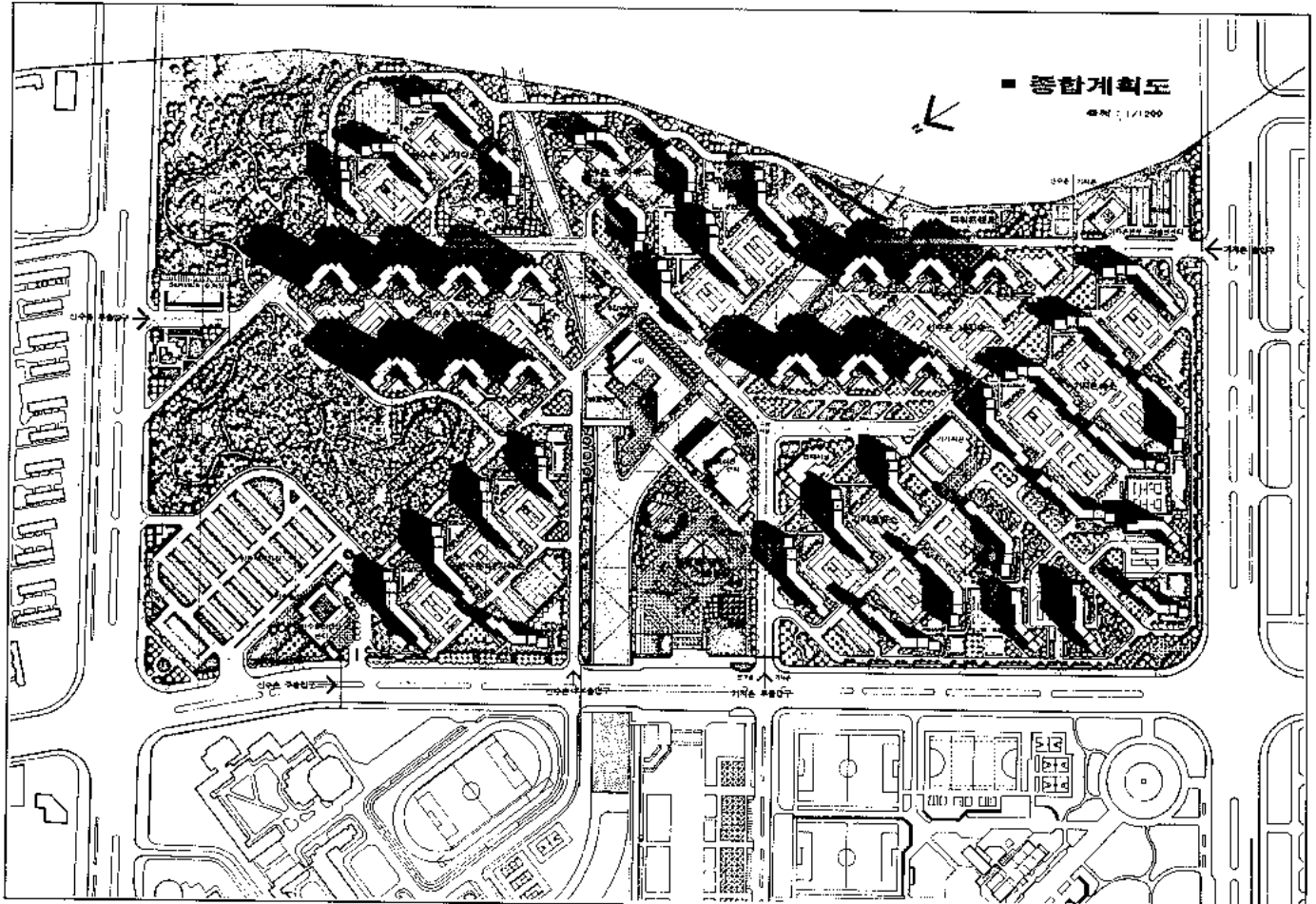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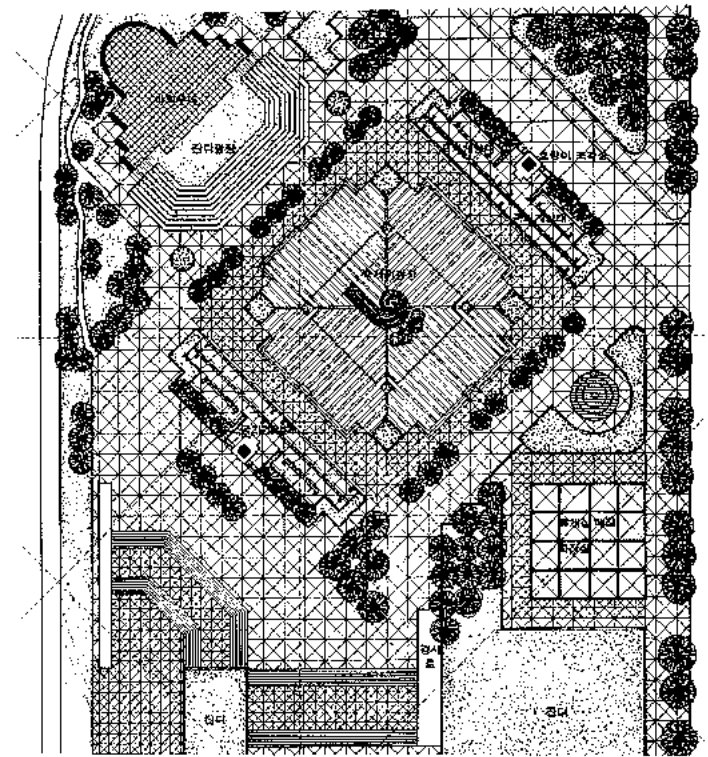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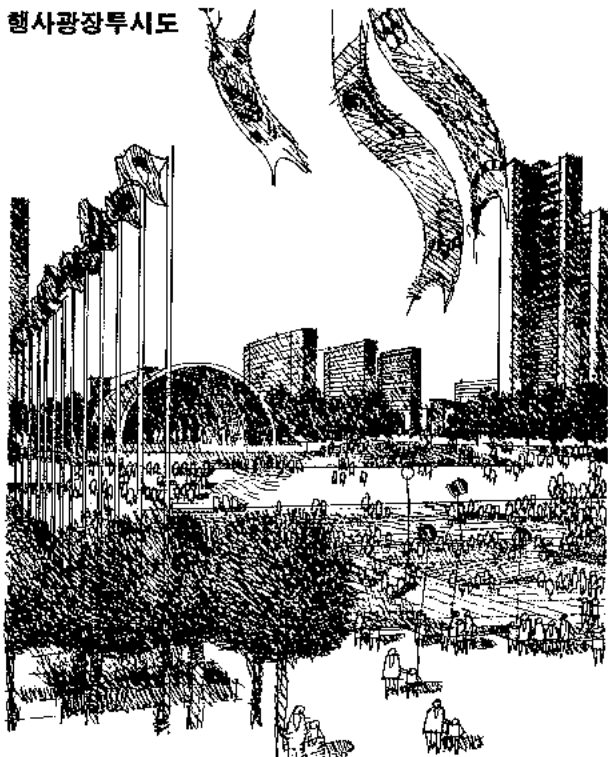
이영희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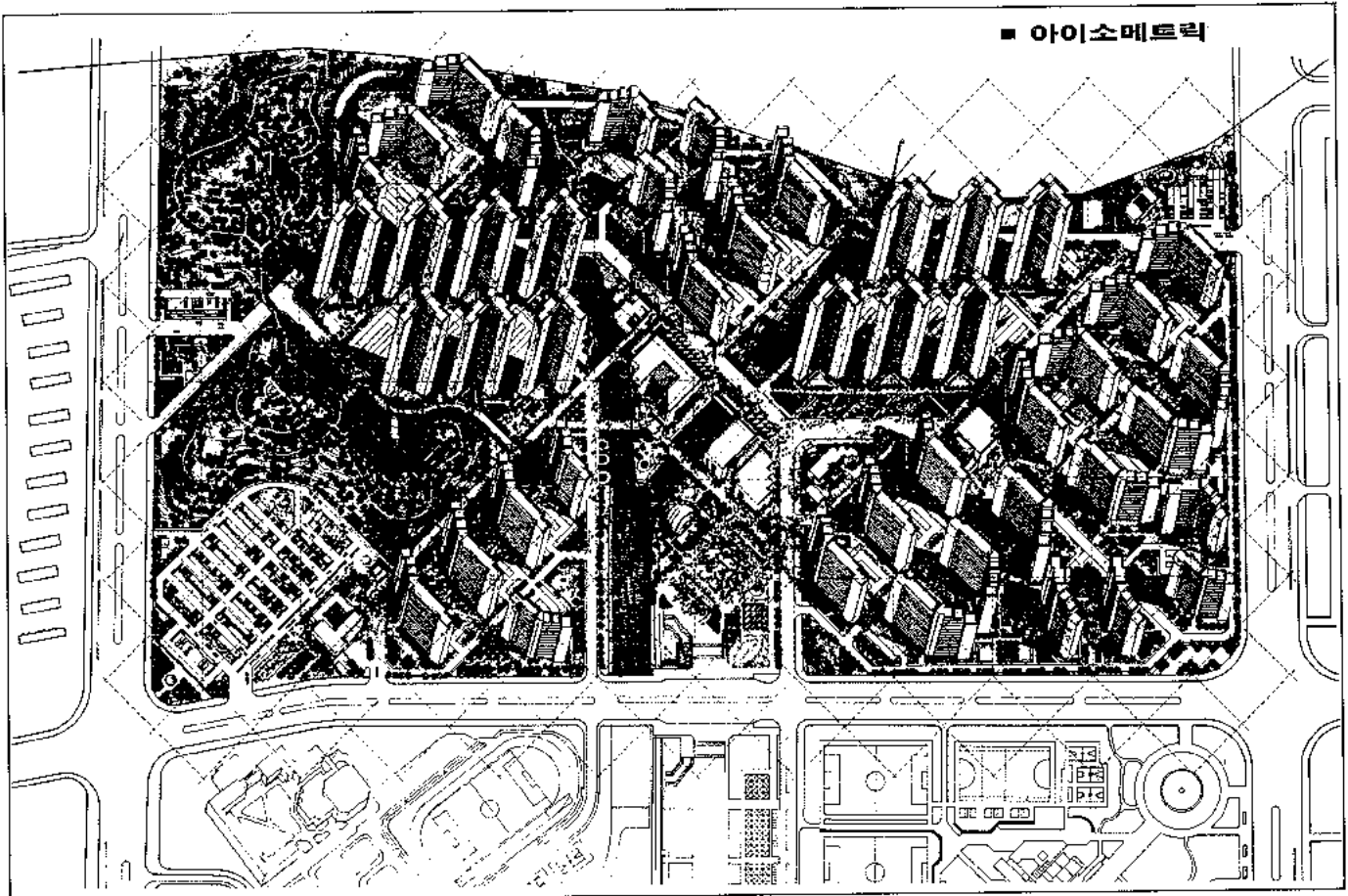
이영희 /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임선”



행사광장투시도





■ 루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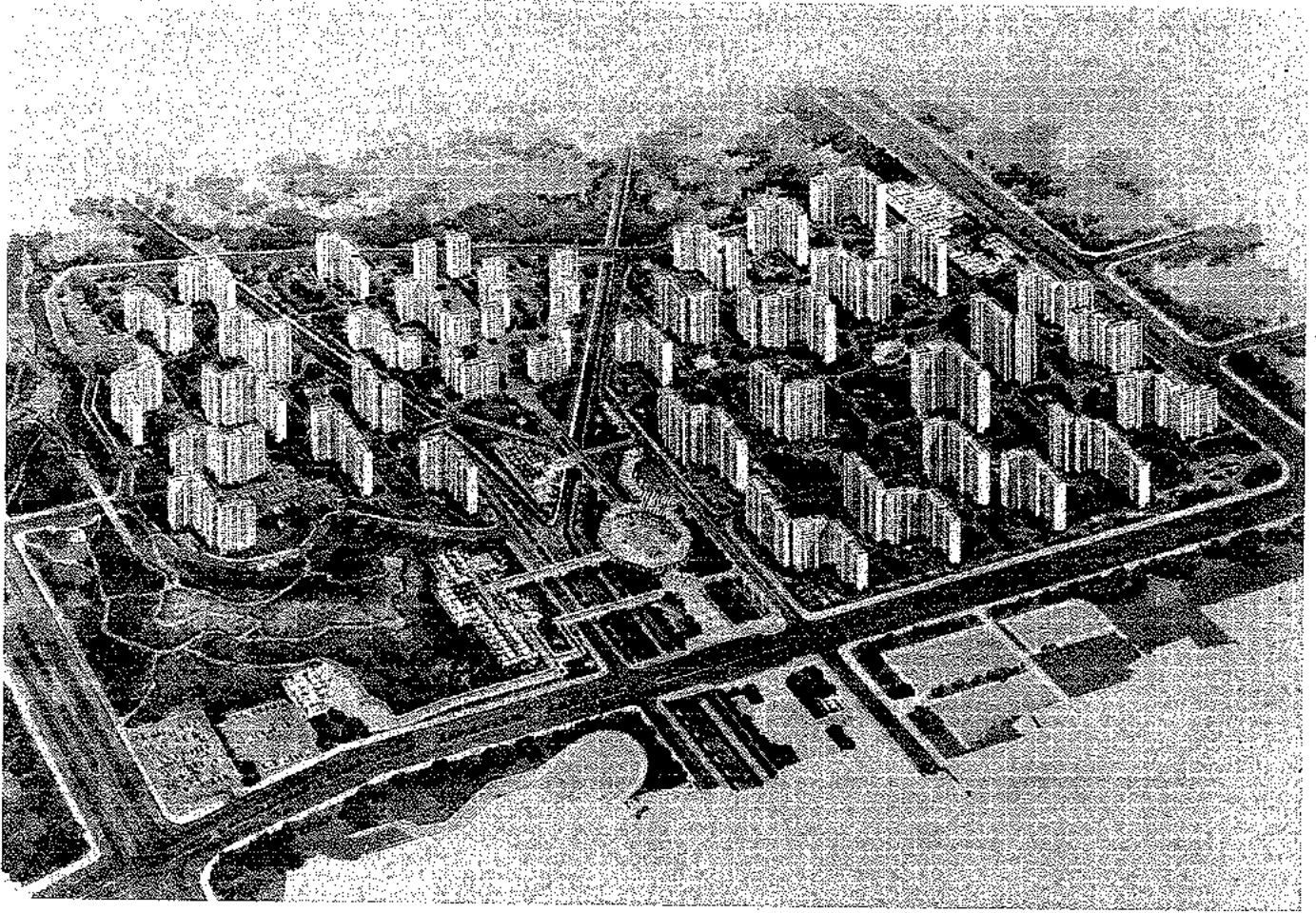
■ 루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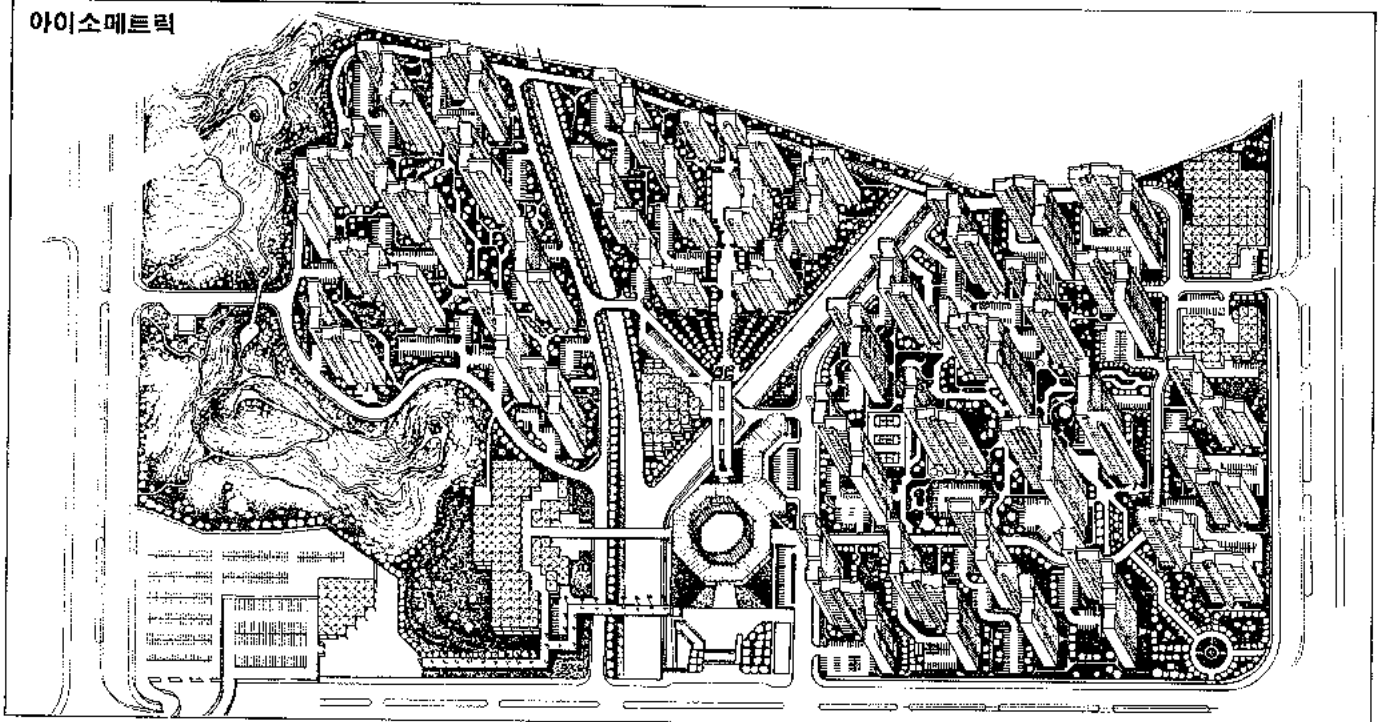
이규창·김영일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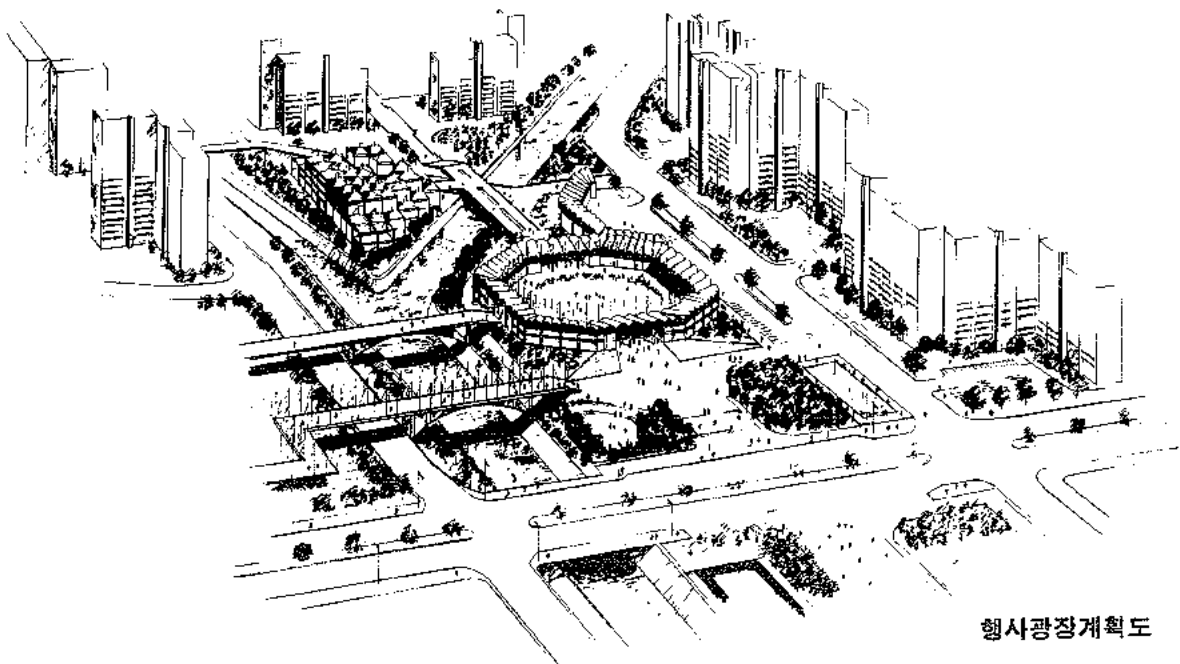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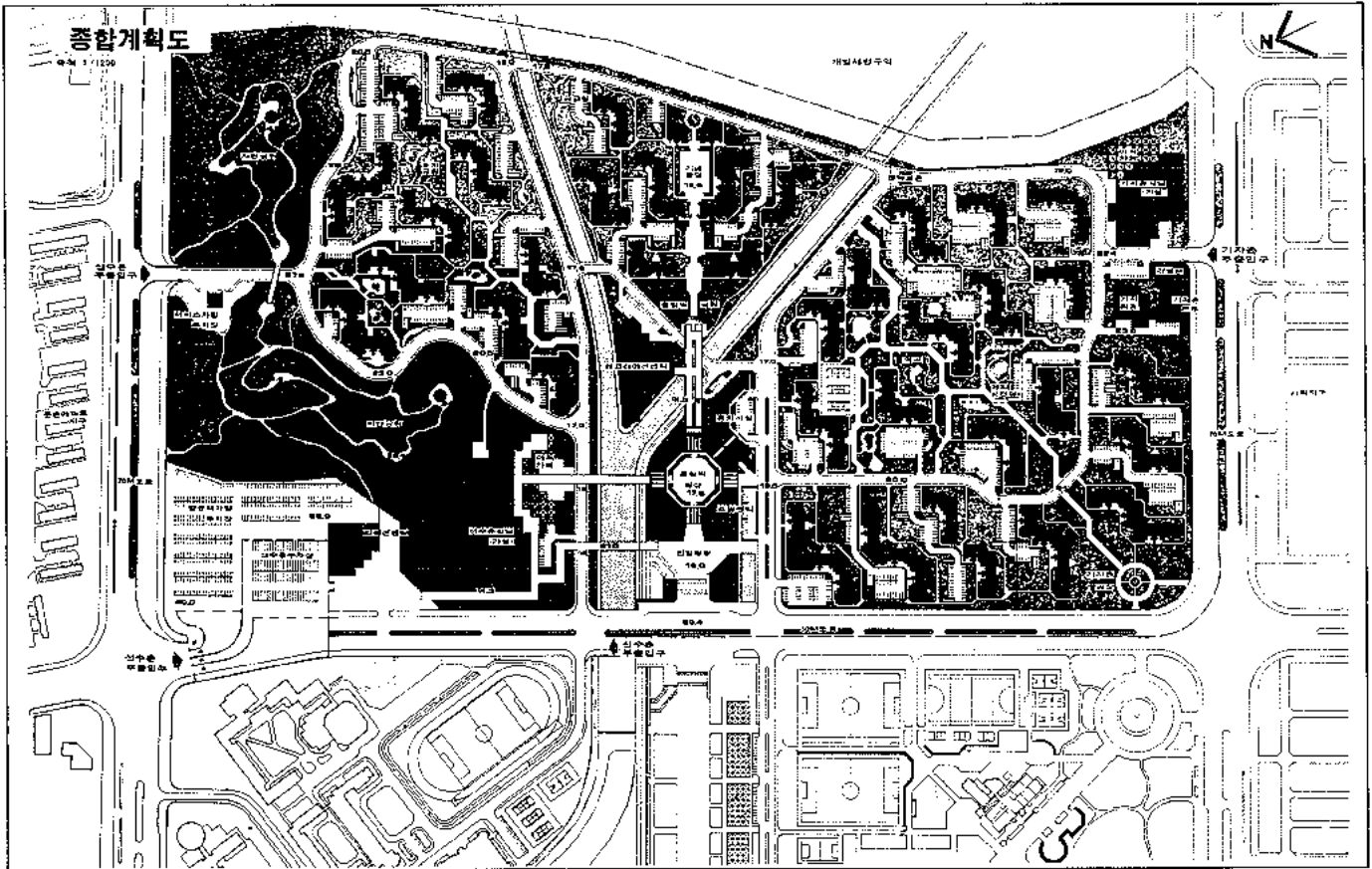
이규창 / (주)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입선”



아이소메트릭







쇼핑센터는 왜 상업지역에만 설치해야하는가

김 기 석

건축사사무소 아람

도시생활의 형상적 패턴은 크게 보아서 두가지 동기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업무와 연관된 취득경제를 위한 동기요

둘째는 생활 그 자체를 위한 소비경제적 동기이다.

첫번째 동기를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것거리요, 두번째 동기를 쉽게 말하면 돈을 쓰고 사는 것거리이다. 이 두가지를 몽뚱구려 표현하자면 쉽게 돈을 벌어서 쉽게 돈을 쓰고 사는 집약적 경제공간이 곧 도시가 되는 셈이다.

이 두가지 동기가 도시의 형상을 만들어 내고 수 많은 도로와 수 많은 오피스와 수 많은 점포를 만들어 낸다.

다양한 도시공간의 콤플렉스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동기가 쉽고 재미있게 만족되도록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행의 도시계획 개념으로서의 첫번째나 두번째나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실정인 것 같다.

직장과 주거사이에 놓여진 기나긴 거리, 이로 말미암은 모순과 낭비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한바 있지만 소비경제적 패턴에서도 많은 모순과 낭비가 있다.

소비경제행위란 결국 쇼핑을 의미하는데, 필자 자신의 경우 대단치 않은 생활일용품들 사기 위해 평창동에 있는 집에서 부터 강을 건너 멀리 한양 쇼핑센터까지 여행을 하고 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하면 동네 슈퍼마켓란 구멍가게 몇개를 합쳐놓은 정도여서 없는 물건이 너무 많고, 여러 전문점을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보다 쇼핑센터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물건의 질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보름에 한번씩 쇼핑을 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강북 북한산 기슭에 사는 주민이 강남에

있는 쇼핑센터까지 찾아 가야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소득이 증대되고 유통구조의 근대화가 더욱 진요화되는 추세에서, 잘못이 있는 쪽은 쇼핑센터를 찾는 고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가까이에 있지 않은 쇼핑센터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서울의 일개 동의 인구가 외국의 어지간한 도시의 평균적인 인구와 맞먹는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 일개동에 하나 정도의 근대화된 쇼핑센터는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행 법규에서는 근린생활권에 쇼핑센터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쇼핑센터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한가죽이 가서 여가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휴식하고 쇼핑을 하는, 말하자면 쇼핑을 즐기는 곳으로서 넓은 주차장과 오락시설 휴게시설이 갖춰져야한다. 이러한 종합시설을 할만한 넓은 장소는 노선 상업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간선도로변에 있는 쇼핑센터란 진입의 번잡스러움 때문에 교통에 혼잡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서 오히려 권장할 만한 형태가 못되며, 간선도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주거지역이 쇼핑센터로서 오히려 적합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거지역은 집포면적 제한이 500M²로 되어 있어서 쇼핑센터의 종합적 구성여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시설이 종합적으로 되지않으면 흡인력이 없어서 쇼핑센터는 실패하는 것이다.

필자는 쇼핑센터를 건학하기 위해서 미국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도심지형의 쇼핑센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2층 정도의 나즈막한 쇼핑센터로서 주위의 주거지역 형성에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

고서도 근린생활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해안가에 수십개의 쇼핑센터가 줄을 짓고 있으며 수많은 인파가 산보하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전부가 1, 2층으로 된 저층 쇼핑센터였다. 샌프란시스코에 한국건축법규가 적용되었다면, 해안가에 상업지역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해변의 낭만적인 쇼핑거리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대형 쇼핑센터는 교외에 뚝 떨어져 있고 광활한 주차장을 끼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건축법규를 적용하면 성립이 안된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에서만 북적거리야하는 실정은, 쇼핑센터라는 개념이 없었던, 전근대적 유통시설에 의존했던 시대에 만든 법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쇼핑센터의 내부 활용도는 1층, 2층, 지하층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며, 아트리움과 에스카레이터가 없는 한 3층만되어도 활용빈도가 뚝 떨어진다. 그러므로 백화점처럼 우뚝 솟은 것보다 옆으로 퍼져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쇼핑센터가 주거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하등 주위에 피해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생활권을 단축시키고 주거지역을 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운데에 소공원과 같은 예쁜 플라자를 에워싸고 부담없이 오르내릴 수 있는 300평~1000평 규모의 소형·중형 쇼핑센터는 주거지역에 오히려 권장할만하다. 더욱이 소공원과 깨끗한 여가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우리들의 삭막한 주거 생활에 생기기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유통시설의 수준향상은 도시생활의 수준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축의 이상과 이성의 회복

- 사치는 언제까지 건축의 속성으로 남을 것인가 -

김 영 수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원



역사가 시작된 후 인류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상과 치와 지식체계가 그 근간이 되어 왔다. 동서양의 도덕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그 기준과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문화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학문과 사상의 공헌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문화예술이 인간 정신을 풍부하게 만들고 과학기술이 인류사회를 풍요하게 이끌어 나온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더 나아가 건축이 인류의 정신적 성숙과 물질적 성장에 크게 공헌하면서 인류사나 문화사를 주도하여 온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문명의 발달과 역사의 기록이래로 건축은 국가의 권력과 통치의 상징물이었고 또 개인의 부귀와 영화의 표적물이었다. 생전에 뿐 아니라 사후까지도 그들의 건축적 성취감은 장엄하기 이를데 없었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숭배주의와 신비주의의 성전화로 줄달음질 해왔다.

미술이나 음악이 귀족 계급의 호화생활에 도구 노릇을 해온 것처럼 건축 또한 권력자나 부유층의 독점물이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호사스러운 건축의 꿈을 실현하는 일처럼 보였다.

그러면 흘러온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 오늘의 건축세계는 근본적으로 무엇 하나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

가진 자 위주의 건축편중은 과거의 모든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축의 이상조차도 망각된 채 소외지대로 버려져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가진 자들은 건축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사치를 만끽하고, 없는 자

들은 건축이 상상할 수 있는 공허한 꿈만 먹고 산다고 할까.

건축의 인간에 대한 보답과 사회에 대한 응보가 과연 이래도 좋은 것인지, 그리고 건축본연의 인간효용과 존재가치가 이렇게 왜곡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삼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다.

사실 이러한 물음에 좋다 괜찮다하고 대답할 용기와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건축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스스로 숙연해 질 뿐이다. 종든 삶들간에 현실적으로 불평은 재화를 대가로 받는 건축의 생업은 봉건시대보다 근대사회에서 더욱 신성한 직업으로서 존경받는 것도 사실이다. 대가인 이상 객체는 능력자라야 하고 주체인 건축의 봉사도 창작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재화가 건축행위의 시작이고 건축은 재화와 더불어 사회속에 그 형체를 남긴다. 건축의 역할과 임무도 여기에 충실하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별다른 저항없이 직분을 수행해 오고 있다. 말하자면 직업으로서의 건축이 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하나의 사회질서처럼 잘 준수되고 있다고나 할까.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건축의 일차적 책임만으로 영속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목적과 기능의 학문이 될 수 있겠느냐에 하는 것이다.

건축의 존재 없이는 인류와 세계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건축이 이들의 발전지식과 존재의의를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이차적 책임을 다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해 일하는 직업적 건축을 한걸음 뛰어 넘어 건축의 진실과 이상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배푸는

건축이성의 회복이야말로 정말 건축을 또 한차원 높일 수 있는 목표설정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비정상일 수도 있는 극소수의 가진 자가 역사와 문화의 주인공으로 부각되어 온 엄청난 오류를 건축의 노력과 정성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또한 오늘의 시점이기도 하다.

이 말은 결코 이들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면서도 상대적으로는 다중의 건축적 삶을 시대적 「리얼리티」로 정제해 내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자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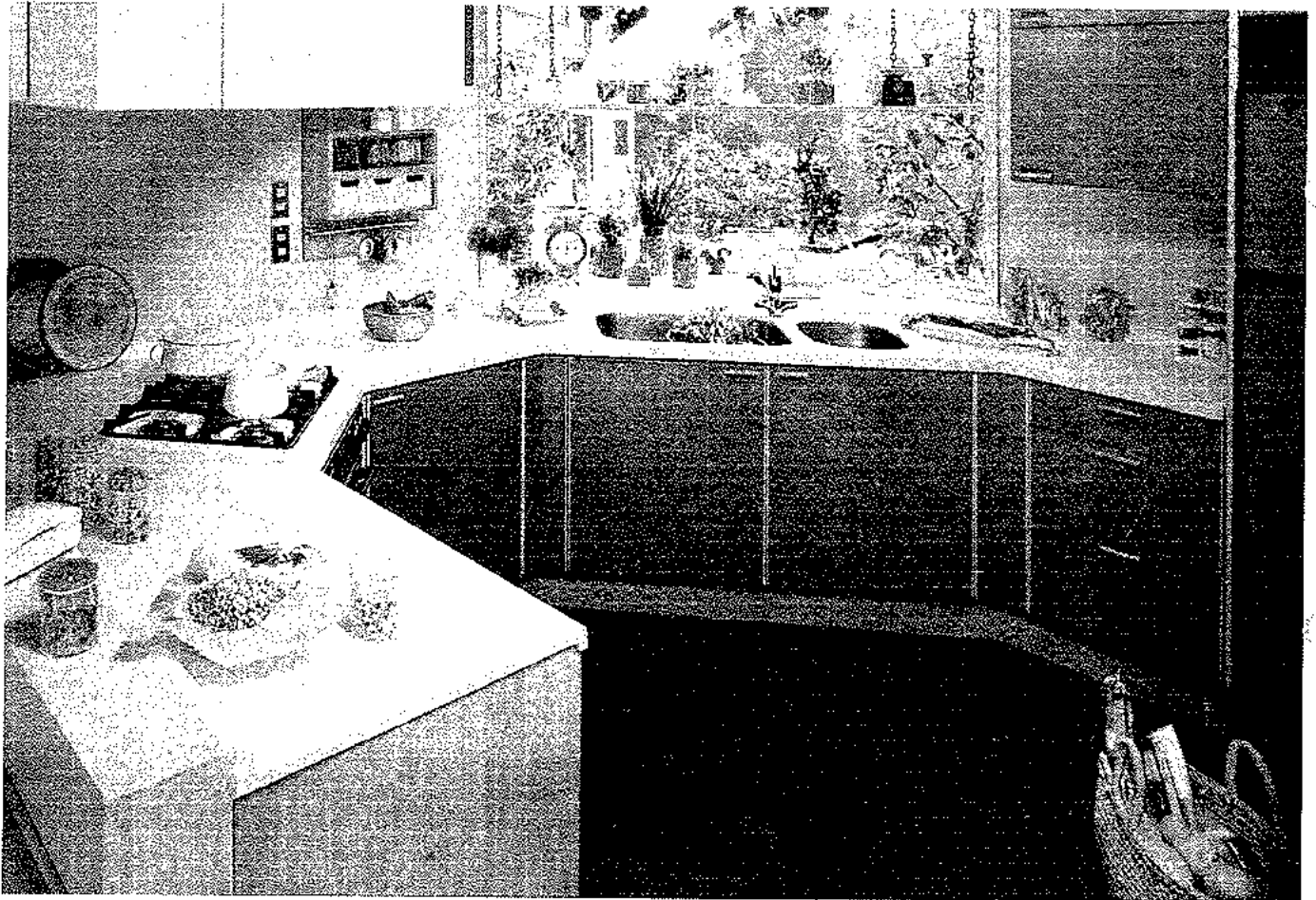
말많은 소수보다는 말없는 다수가 정치나 사회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적 견지에서도 더욱 큰 비중을 갖는다.

한사람의 대형건물보다는 많은 사람의 소형들이 더욱 값지게 평가되어야 하고 한채의 고급보다는 여러채의 보통이 더욱 소중하게 취급되는 것이 건축의 일반 상식처럼 되어야만 한다.

사치가 건축의 속성처럼 오인된 어제의 오류를 말끔히 씻고, 소박한 삶의 진실이 바로 건축의 원류가 되어 내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나친 현실집착과 그릇된 과거답습 속에서 건축의 일차적 소임에 급급하게 됨은 결국 어제의 부끄러움을 또다시 내일의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는 어리석음의 연속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건축의 보편적 가치가 건축물의 대소나 재산의 다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평범한 생활의 진리로 살아 남아야 하며, 그럴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문화와 예술의 정의 그리고 건축의 자유와 이상으로 대표되는 건축의 이차적 소망들도 훌륭하게 그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부엌

조성렬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부엌은 조리장소로서의 근본적인 기능을 갖는 곳이다. 조리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엌은 식품의 저장, 식기와 조리기구의 보관, 세척장소, 배선장소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져야 한다.

위의 기능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엌에는 부엌가구 및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최대의 설비가 완비된 부엌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주택의 서구화와 소규모 가족단위로 바뀐 생활양식의 변화로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속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부엌은 조리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식당점 부엌의 실내에는 배식과 식사장소의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 편리한 부엌은 조리과 연결된 부엌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집결된 것으로 한 실내이다. 좁은 동작거리에 각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상태가 바람직하다.

부엌은 주부가 가장 긴 시간을 가사노동으로 보내게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주택에서 부엌의 배치는 전적으로 주부의

작업동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채광, 통풍이 잘되어 쾌적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엌을 배치할 때는 주부가 가사작업중에도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를 생각하여 거실, 가사작업 공간, 아동방 등 다른 부분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위치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엌은 식당과 가장 밀착시켜야 할 부분이다.

채광, 통풍의 문제는 음식물을 장만하는 기능을 가진 부엌의 위생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일광과 통풍으로 자연소득, 자연건조가 될 수 있는 위치의 배정이 필요하다.

현대주택은 설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엌의 위치를 꼭 위생적인 곳으로 해야 하는 원칙은 없어졌으나 부엌위치가 거실, 식당과 같이 좋은 장소, 좋은 실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곳이 되었다.

부엌의 평면구성은 방의 형태와 크기, 식당과의 연결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조리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작업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대의 배치형태는 일렬형,

이열형(병렬형), L자형, U(□) 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렬형은 한쪽 벽면에 직선으로 작업대를 배치하는 것으로서 좁은 부엌의 경우에 쓰인다. 이열형은 부엌의 폭이 넓을 때 서로 마주 보는 두 벽면에 작업대를 나누어 배열한 것으로 작업동선이 짧아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자형은 가장 편리한 배치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U자형은 부엌가구 시설이 많이 들어가므로 넓은 부엌의 경우에 적당한 배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부엌의 평면구성은 저장 부분, 조리 부분, 배식대, 식탁 부분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조리 중심 부분은 조리 가공, 세척, 오븐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며 저장 부분은 일반 저장품과 냉동 저장품이 분류되어 위생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부엌에 필요한 가구는 필수적인 부엌가구, 즉 조리대, 싱크대, 개수대, 가스레인지, 부엌장외에도 음식물과 그릇 저장을 위한 찬장, 냉장고등이 있어야 한다.

부엌의 가구와 집기는 디자인이나 빛깔을 통일시켜야 하며 벽의 색과도 맞추어 준비한다. 조리대, 싱크대, 개수대, 가스레인지, 찬장, 식탁 등을 부엌장과 비슷한 모양과 색으로 선택한다. 색이 다른 경우에는 에나멜 페인트나 랙커 칠을 하여 같은 색으로 통일시켜 준다. 그릇장은 식탁과 개수대에 가까운 곳에 두어야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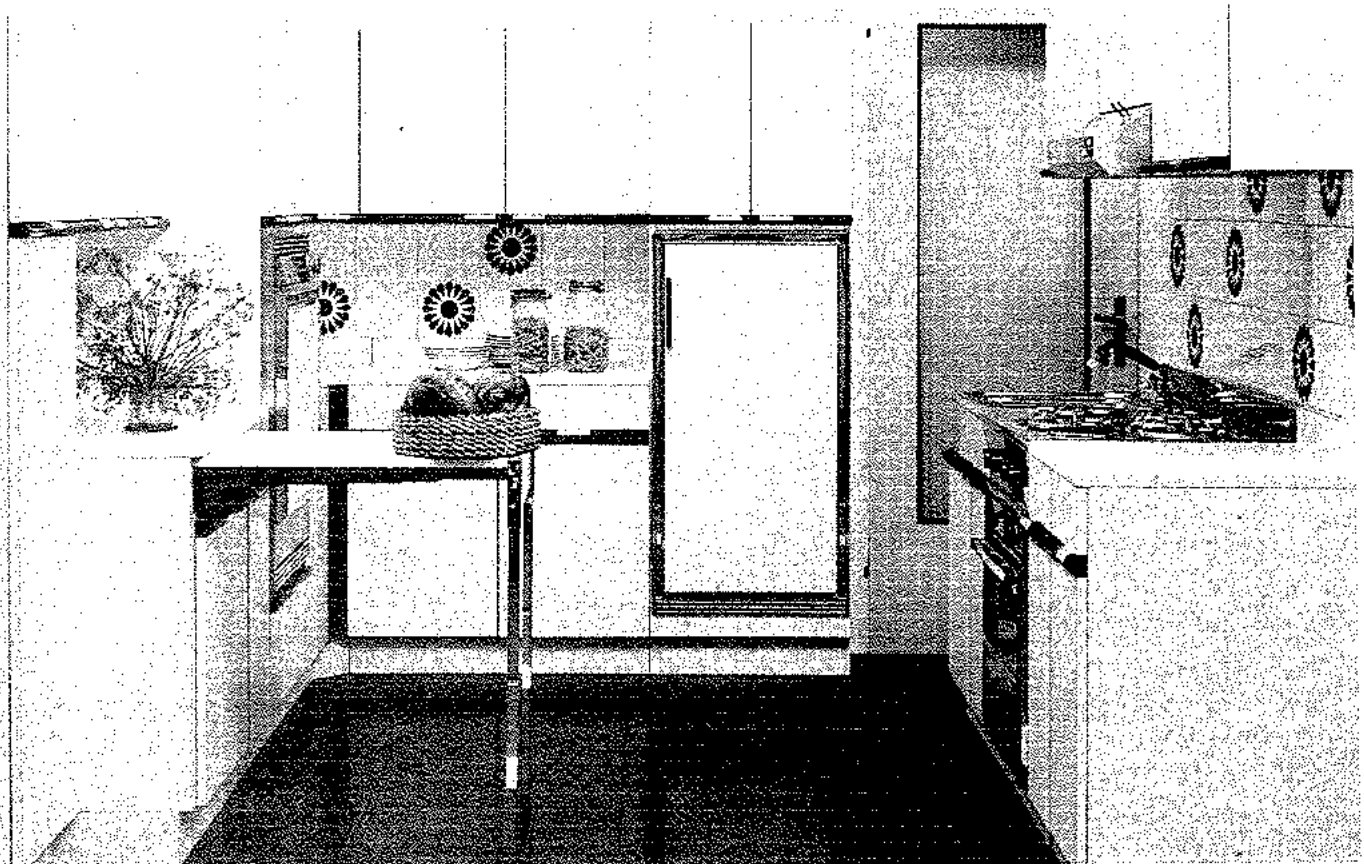
부엌에서 사용되는 가구와 집기는 일반가구와 다른 요건이 있다. 가구나 집기는 필수적으로 위생적인 것이어야 하는 점과 청결유지가 용이한 것이어야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래서 부엌가구는 내습, 내수성이 높고 내화, 내구력이 있는 재료로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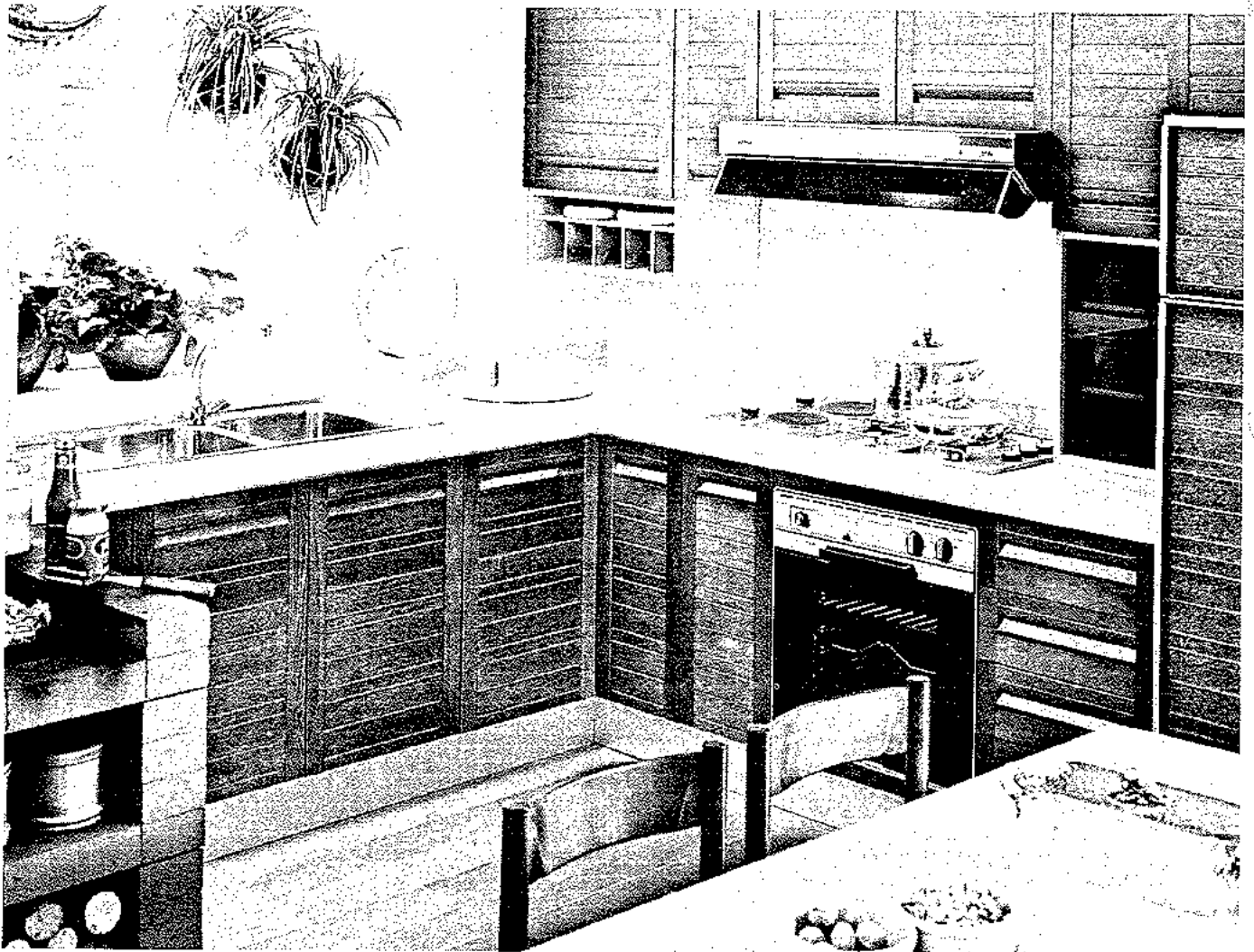
부엌가구 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지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재료를 분류한다는 것이다. 마모성이 높은 부분의 재료와 일반 부분의 재료를 구분하고 내화성 가구의 재료도 독립시켜야 한다. 즉 조리대 부분에는 스테인레스, 대리석, 멜라민수지판 등으로 가구의 문재료와 분리

시켜 사용하여 가스레인은 내화재료, 내화구조로 설계된다.

부엌 설비의 기본적인 것은 물과 불과 그리고 공기의 조절이다. 급수, 배수가 잘 되어야 함은 물론 가스, 전기, 연탄 등 열의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하고 실내의 배기가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부엌의 설비는 부엌가구와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며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부엌에서는 조리시에 일어나는 냄새, 연기, 수증기 등 때문에 환기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연환기 방법 외에도 레인지의 상부에 배기 후드를 설치하고 천정 가까이 팬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엌의 근대화에 따라 요즘은 취사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많이 쓰고 있으므로 콘센트의 수와 위치도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부엌의 내장재는 방습, 내화, 내수성 및 청결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마감이 되어야 한다. 부엌에서는 늘상 물과 불을 사용하고 음식물을 조리하게 되기 때문





이다.

바닥의 재료로는 타일, 아스타일, 비닐타일, 플로어링 등 내수성이 있고 청결유지가 손쉬운 재료가 적당하다. 부엌은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곳이므로 차고 딱딱한 재료보다는 탄력이 있고 보온성이 있는 바닥재료를 선택하여야 인체의 피로가 덜할 것이다. 부엌의 벽 재료도 타일, 내수성이 있는 합판 등을 사용하며 작업대의 주위는 내화, 내수성이 있는 재료를 쓴다. 천정의 재료는 석면판, 알루미늄판 등을 사용함으로써 내화성, 내습성을 기한다.

부엌의 색채 계획은 일하는 사람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능률적인 가사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부엌은 벽면의 많은 부분이 작업대와 그위의 불박이장으로 채워지게 되므로

이 부엌가구들의 색채 계획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외의 취사도구, 집기 등의 색채도 전체 색채 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부엌의 색채를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 색채가 음식과 병렬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눈에 거슬리는 색이라든지 음식의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은 삼가해야 한다.

실내공간의 특징과 강한 인상은 색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실내 색조의 일반적인 원리가 부엌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위생설비와 취사기구의 기존색감이 전체 부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것들과의 조화를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엌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물을 장만하는 장소로서 조리에 필요한 각

종 조리기구, 집기류, 전기용품 등이 전시되는 곳이다. 이런 취사도구들은 부엌용품으로 이용되고 장식소품으로서 부엌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조리기구, 주전자, 팬, 대바구니 등을 부엌용 액세서리로 벽에 걸어 놓으면 장식도 되고, 실용성도 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벽에 걸었을 때 지저분한 것이 아닌 예쁜 것이어야 한다. 전기 토스터, 전기 믹서, 전기 오븐 등의 용품들은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들이며, 적재적소에 간편하게 배치되었을 때 부엌소품으로 느껴진다.

그 밖에 부엌의 선반에는 감쪽한 양념 그릇, 자주 쓰는 물컵, 찻잔 등이 장식소품으로 진열될 수 있다.

부엌은 주부의 작업공간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늘상 사용하고 취급하는 모든 물

전들이 장식소품으로도 느껴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부엌에는 갖가지 살림 도구가 쌓이는 곳이므로 특별히 다른 장식품으로서 실내연출을 하는 것보다 장식적인 도구, 그릇 등이 주부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조리기구, 주전자, 팬, 유리그릇, 찻잔, 양념그릇, 등이 벽에 걸리거나 선반을 이용하여 진열되었을 때 부엌의 장식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부엌에 식탁을 설치하여 식당의 구실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부엌 형식은 조리의 기능과 식사 기능이 한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주부의 노동시간을 절감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엌의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조리시의 냄새, 연기 등이 실내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식사후의 잔여물들이 노출됨으로써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부엌과 식사공간 사이의 칸막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당점 부엌 공간에서 꼭 유의해야 하

는 것은 조리대의 높이와 식탁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해야 하는 일이다. 식탁과 조리대의 차는 60mm~100mm가 기본적으로 생기며 이는 바닥높이를 다르게 하여 기능적으로 조절하기도 한다.

부엌이 주는 공간의 의미는 주거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사뭇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주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부엌의 개량과 취사 방법이 간소화되어 가면서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식생활을 누리는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쾌적한 조리환경으로서의 부엌을 추구하는 것은 작업능률면에서도 그렇지만 주택에서 부엌공간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쾌적한 조리환경의 요건은 부엌의 근대적 설비와 인테리어적 요건의 구비로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엌이 어두운 음지라는 인상을 주면 어떤 설비를 해도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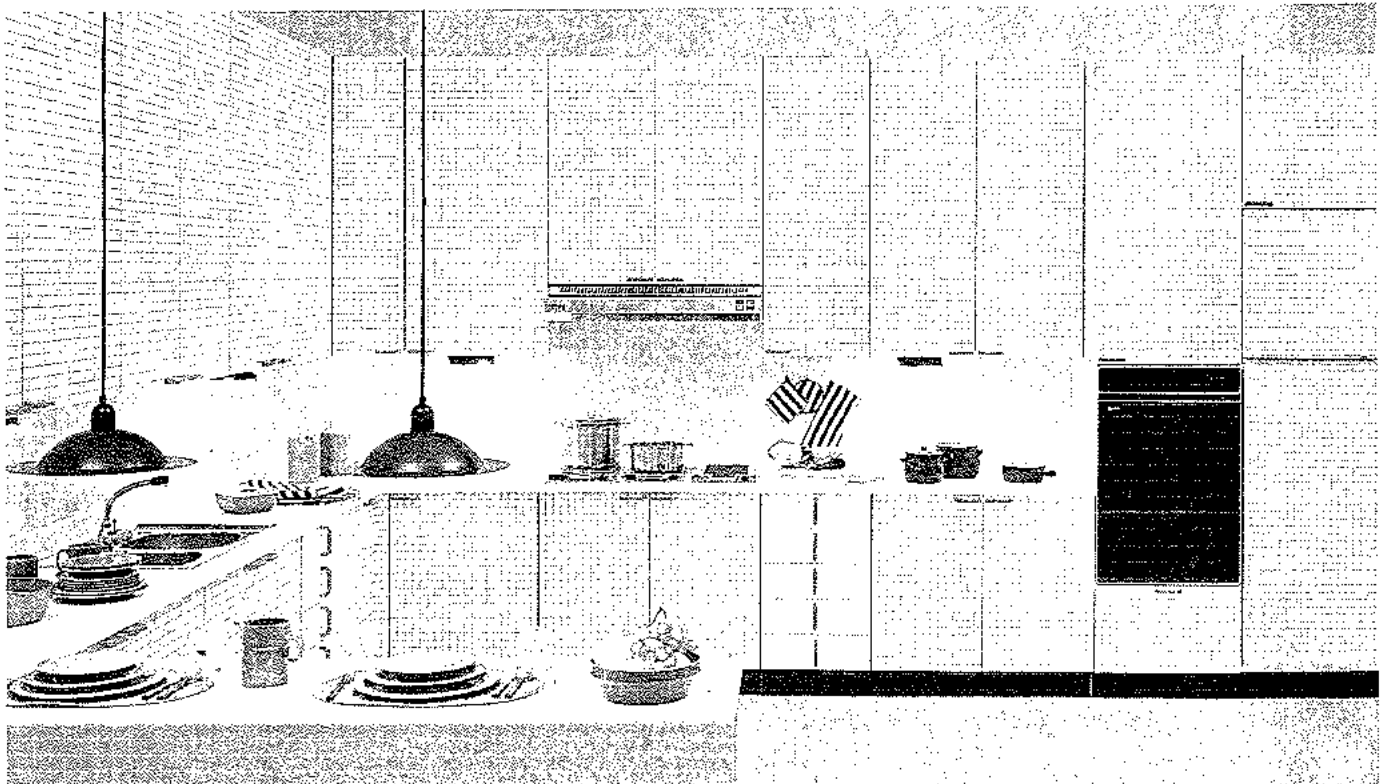
한정되어 있는 부엌공간에서 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업대의 배치와 인체에 적합한 치수의 작업대가 갖

추여져야 한다.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식품의 준비, 세척 및 조리의 준비, 조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편리한 부엌이란 이 세 군데의 작업동선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군데의 작업 중심을 연결하는 것을 동선의 삼각화라고 하는데 각 변의 길이가 적당할 때 작업의 능률이 최대로 오를 수 있게 된다.

작업대의 높이는 신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주부의 경우 80cm~85cm가 작업면의 적당한 높이로 알려지고 있으며 작업대의 길이는 55cm정도가 팔을 움직여 작업할 수 있는 범위로서 측정되어 있다.

식생활이 개선되고 설비가 개선된 부엌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현대주택에서 부엌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부엌이 들어가기 싫은 작업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지내고 싶은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엌은 주택에서 그 어느 실내공간보다 깨끗하고 밀도 높은 공간으로서 설비나 인테리어의 비중이 높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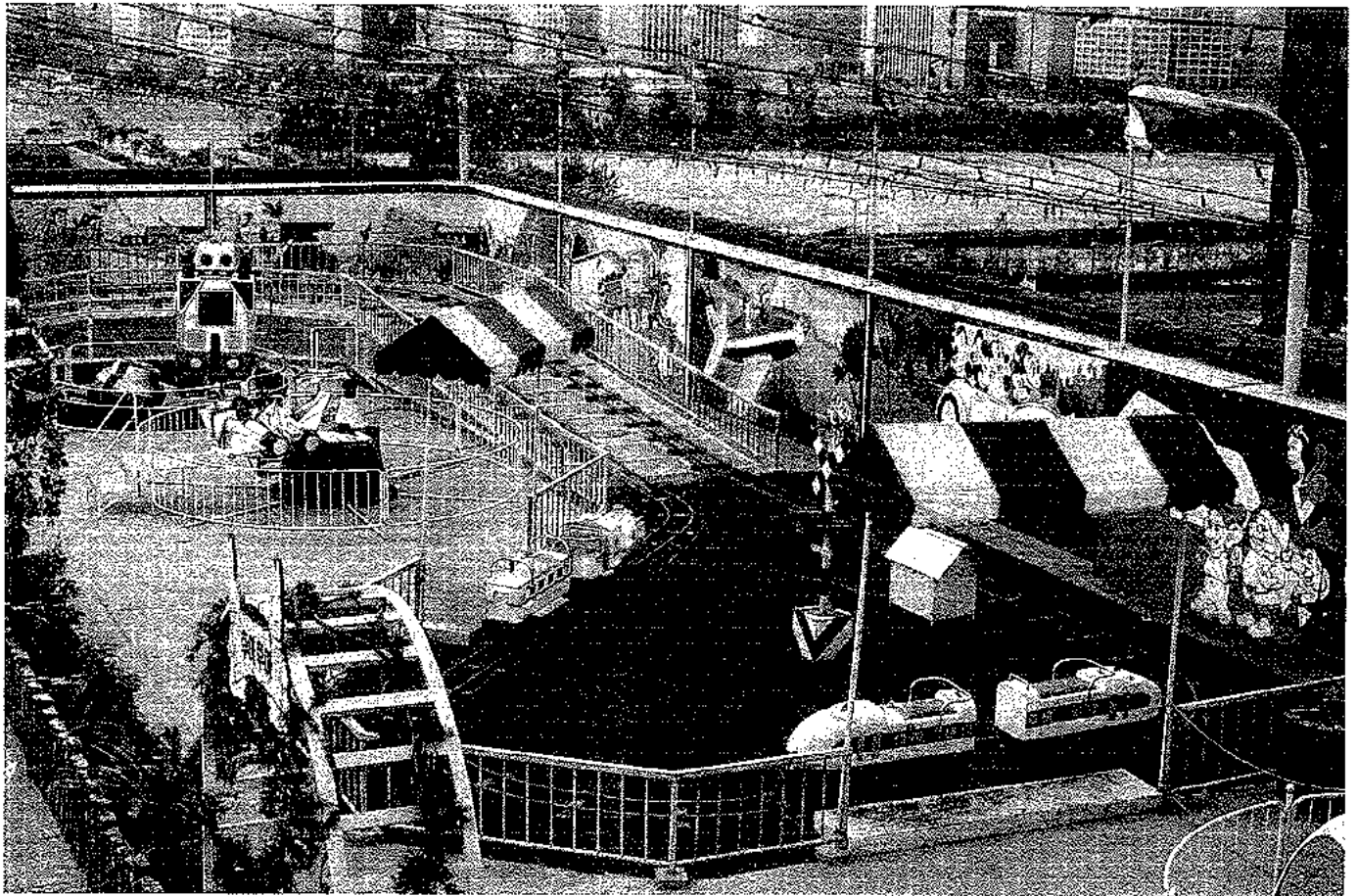


그림-1. 쇼핑 센터 건물 옥상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

외부환경설계

The design of outside environment

- 옥상정원 -

최 기 수

서울시립대학 조경학과 교수

한정된 토지에 인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도시는 생활의 편리로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이용을 극대화되어가는 것과 비례하여 도시민의 주위 환경은 점차로 인공적인 구조물에 쌓여가고 있다. 인공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며, 옥상에 조정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내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방지, 도시기후조절 및 도시미관 개선등을 목적으로 도시민의 휴식처인 여가공간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옥상조경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공지확보외에 시각적인 쾌적함과 더불어 광합성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불가결한 산소공급을 위한 녹지지역을 지표면에 생활의 수단과 이기인 교통공간이나 주차공간에 의해 빼앗긴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을 법규에서 조문화하고 있다. 즉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인 조정면적이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정면적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정면적 경우는 지표 조정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허가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옥상정원은 기원전 3500 년경에 「바빌론」에서 계곡을 조망하고, 주위의 사막으로부터 하나의 지표물이 되도록 가장 높은 곳이 약30m 정도되는 테라스를 만들어 그 곳에 교목, 관목 및 초화류를 심어 마치 전체가 수목에 둘러싸인것 처럼 조성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후기 이태리 양식(약 1670년경)의 하나인「이솔라 벨라(Isola Bella)」는 호수에 있는 섬에 10개의 노단을 만들어 옥지로 부터 양질의 토양을 채워 넣고 식재 및 경관적인 시설을 하여 호수로 부터 뿐만 아니라 그 노단을 거닐면서 정원을 즐기도록 계획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성장으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해 옴에 따라 녹지확보 및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한다든가(그림-1), 사무실 건물에서 직장인들이나 보행인들이 여가시간에 공원에서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내기 위해 조성하고 있다(그림-2).

1. 옥상조경의 특성

옥상조경은 옥상이라는 인공지반위에 인공환경이 조성되는 정원으로 지표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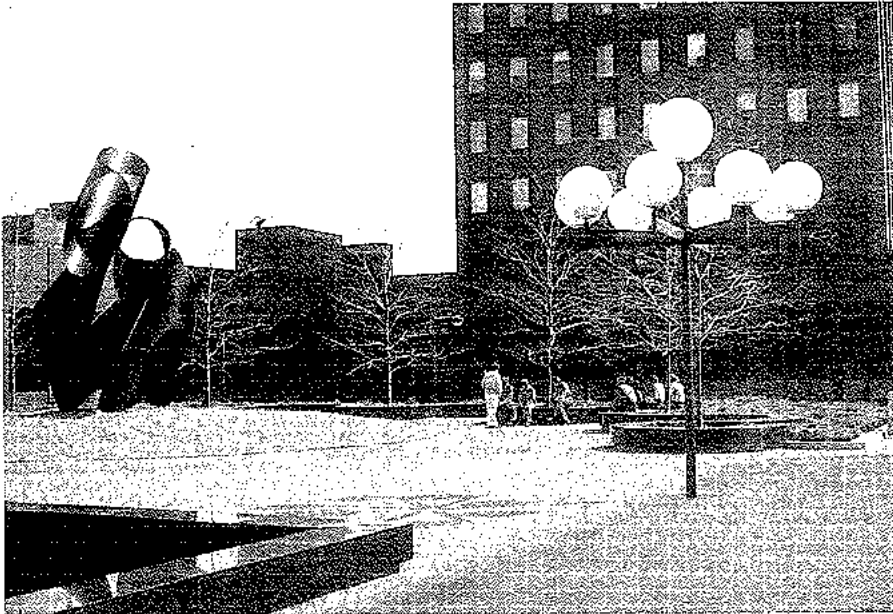


그림 - 2. 사무실 건물의 옥상정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식물재료를 사용한다면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즉 토양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림-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층은 자연토양이 갖고 있는 보수성(保水性), 투수성(透水性), 통기성(通氣性), 배수성과 단열성등이 현저한 차이를 갖어 올 수 있다. 즉 구

조물에 의해 자연토양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관수와 배수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연토양은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토양내의 공기와 습도등을 조절하며, 토양의 노쇠화등이 조절되나 인공지반위에 토양의 경우에는 자연상태와 같이 자기정전기능(自己耕轉機能)과 자기시비기능(自己施肥機能)

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옥상조경시 수목의 생육깊이에 따른 이상적인 토양층을 조성해야 한다.

슬라브 즉 옥상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최소한 1:60의 경사를 지니게 하고, 그 위에 방수층이 놓이고, 방수층위에 원활한 배수를 목적으로 자갈로 된 배수층을 놓는다. 배수층위에 여과층을 설치하여 미세한 토양입자들이 배수층의 공극을 막지 않게끔 한다. 배수층위에 이탄층(泥炭層)이 놓이는데 이것은 수분보유 기능을 담당한다. 이탄층위에 표토층이 놓이며, 이 표토는 사질양토가 사용되며, 이것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식생배양층이다.

옥상조경은 건축물의 옥상에 조성되므로 건물에 첨가해서 작용하는 조정시설물, 토양및 수목등의 고정하중과 이용자들과 관리에 필요한 도구에 대한 이동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규모 교목이나 관목을 식재 할 경우는 바람의 저항에 의한 풍하중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토양과 접하는 면에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옥상은 시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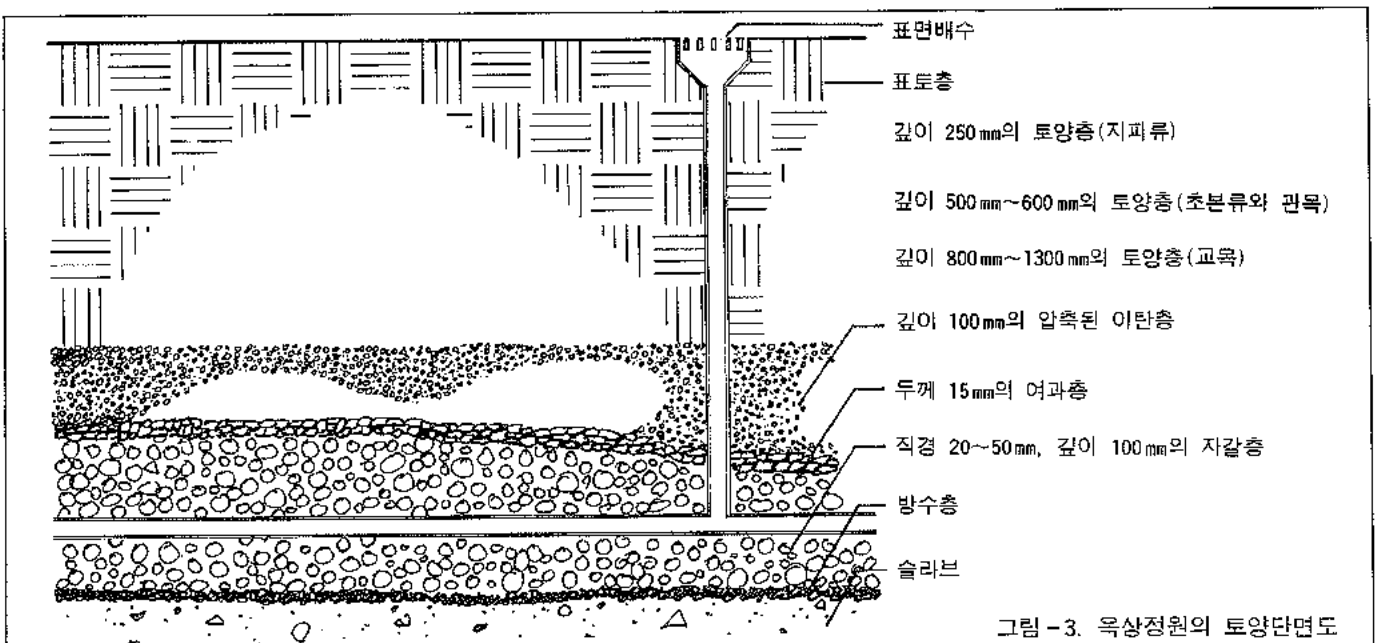


그림 - 3. 옥상정원의 토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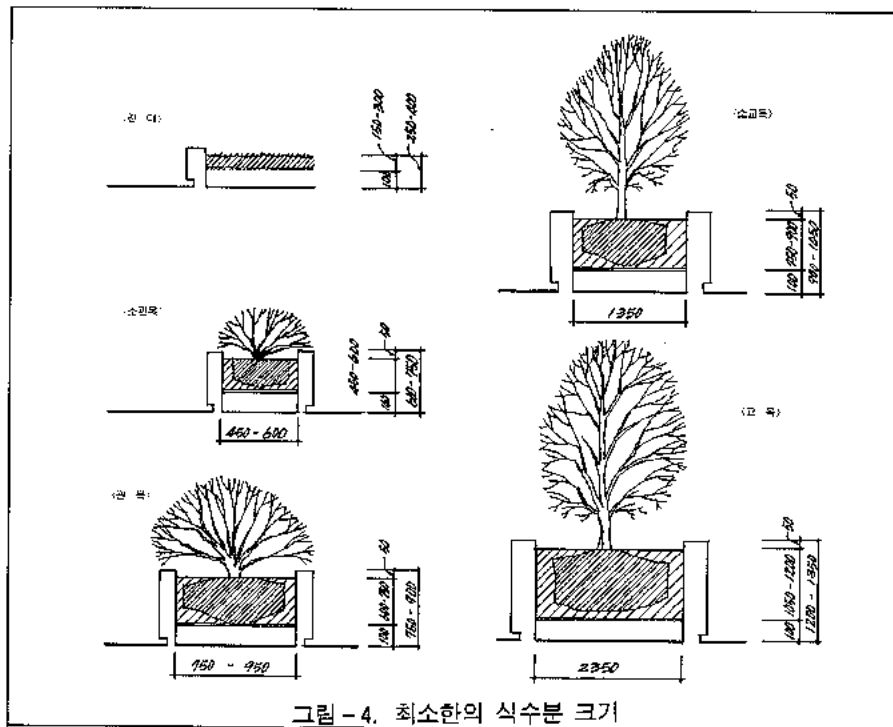


그림 - 4. 최소한의 식수분 크기

로 시각적인 면에서 지표면에 설치된 정원과는 달리 관찰자가 시선을 올려다 보았을 때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수목 및 시설물의 형태가 매우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옥상에 설치된 정원은 다른 옥상 부분이 관찰됨은 물론 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옥상으로 부터 관찰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적인 공간을 창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옥상은 무방비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식 조리로 인한 냄새 등은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어떠한 요인이 발생하는 공간을 만들 때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 옥상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식물이나 흙등의 잔해물이 하층으로 떨어지거나 옥상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시설 보안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옥상조경의 설계

옥상 정원은 지표면에 조성되는 정원

과 같이 이용자들의 정적이나 동적활동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시설물로서 분수, 벤치, 연못, 식수분이나 화단, 퍼골라등을 별다른 구애없이 설치 할 수 있는데 주위의 환경과 이용자들이 관찰자로 부터 관찰되어지는 행위등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옥상의 방수처리는 슬라브 위에 방수막을 형성하고, 그 방수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을 놓고 최종 마감재료로 우수를 배수시키기 위한 구배를 주면서 포장한다. 방수막은 일반적으로 마감재료층이 시공될 때 생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받기위해 방수막과 마감재료층 사이에 얇은 콘크리트와 같은 보호층을 넣어 주어야한다. 또는 보호층과 마감재료층 사이에 모래를 까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모래가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균열로 생기는 누수(漏水)를 모래가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돌과 같이 규격 포장재료는 보통 모래층 또는 모래 아스팔트 층 위에 포장재료끼리 밀착 접촉방식으로 방수시설을 수리하는 경우를 대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포장하여야 한다. 만일 식재지역이라면 뿌리의 성장으로 인해 생기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수시설의 못지 않게 방수시설의 유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방수막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식재지역 밑의 방수지역은 언제나 식생, 토양을 제거하면 접근이 가능해야하며, 연못의 방수지역도 배수를 하면 쉽사리 접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옥상지역에서도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도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난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옥상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공공포증을 일으키는 이용자들도 보호 할 수 있다.

옥상에서는 지표면과 달리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수분의 과도한 증발로 잎이 마르고, 수목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바람막이 벽의 설치가 요구된다. 그 벽은 유리, 나무, 벽돌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전망이 좋은 곳에서는 유리로 바람막이 벽을 만들어 좋은 전망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불유쾌한 주변환경은 벽돌로 된 바람막이 벽을 만듬으로써 차폐시킬 수 있다. 바람막이 벽을 설치함으로써 바람막이 벽 높이의 10배 되는 곳까지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바람막이 벽으로써 완전히 바람을 막아버리면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바람막이 벽을 만들 때 전체면적의 1/3 정도는 틈을 주어 바람이 통과하도록 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재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하중은 식수대(planter)의 무게, 배수층 및 토양층의 무게 그리고 수목의 하중을 들 수 있다. 식수대는 슬라브 자체일 수도 있고 만드는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지만, 식생의 무게가 문제가 된다. 식생의 무게란 뿌리분의 토양무게와 식생의 유기조직의 무게를 합친것을

말한다. 뿌리분의 토양무게가 식생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기조직의 무게를 뿌리분의 토양 무게와 비교하면 대단히 가볍다. 수목의 지상 및 지하부 중량을 합친 수목 이식시에 수목중량은 수고(樹高)가 10m 면 2t, 20m이면 20t, 22m이면 40t(자료: 신조경설계기준 P.9) 정도가 되므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한다. 토양의 무게는 사용된 토양의 성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통기성(通氣性)이 크면 클수록 토양층의 무게는 가볍고, 토양층의 입자가 미세하면 미세할 수록 토양층의 무게는 무거운 법이다.

3. 식물선정기준

일반적으로 옥상은 하루 종일 해가 비치게 되며 슬라브등 포장재료로 인해 과열되기 쉽고, 식재지의 토층은 얇아서 지하로 흡수하는 열량도 없고, 일조와 심한 바람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다. 또한 옥상 표면의 수분은 일조와 바람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줄어들게 되고 지하로 부터 모세관현상에 의해 흡수되는 수분도 자연토층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

로 항상 지표면에서 보다 많은 수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관수 여부에 따라 식재할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관수를 하더라도 옥상식물은 건조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아울러 강한 햇볕에 잘 견디는 종류라야 한다.

고층건물의 옥상은 바람이 심하고, 특별히 방풍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바람에 견디는 힘이 강한 식물이라야 하는데, 옥상정원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토층이 얇으므로, 지나치게 크게 자라지않는 식물로서 바람에 강하고 뿌리는 천근성으로 세근(細根)이 잘 발달한 수종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척박하고 바람이 심하며 건조한 해안 지방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옥상정원에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규칙적인 관수시설이 거이 불가능하거나 건조가 매우 심한 곳일 경우는 사막식물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옥상정원에 적합한 수종을 한국조경학회지 제12권 제2호에 김용근씨의 서울시 간신토로변 조정 수종의 조사내용을 참고로 하여, 몇 그루의 수종을 성장 능력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은 수종도 있어 제외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옥상정원에 적합한 수종〉

분	류	수 목 명	분	류	수 목 명
상	교	섬 잣 나 무	낙	교	벗 나 무
		실 편 백			백 목련
	목	가이즈카향나무		목	은 행 나 무
		주 목			대 추 나 무
록	관	서 양 측 백	엽	관	감 나 무
		향 나 무			산 사 나 무
	목	회 양 목		관	무 궁 화
		사 철 나 무			라 일 락
수	관	등 근 향	수	관	개 나 리
		옥 향			철 쪽
	목	눈 주 목		관	단 풍 나 무
		눈 향			취 똥 나 무
					꽃 사 과
					진 달 래
					황 배 화

일반적으로 산울터리용으로는 사철나무, 쥐똥나무, 개나리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교목은 딱딱한 인공환경을 유효화시켜 줄 수 있는 다간형(多幹形)의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초화류와 지피식물도 이용 할 수 있으며, 등나무나 넝쿨장미와 같은 만경류도 이용 할 수 있다.

4. 유지 관리

옥상정원은 일반정원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유지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충분한 관수가 이루어지며, 철저한 배수체계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며, 수목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옥상정원에서의 대교목은 자유롭게 뿌리가 발달하지 못하므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옥상정원은 일반정원보다 토양층이 얇아 보수력이 낮고, 강한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건물재료와 포장재료로 둘러싸여 있고, 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매우 활발하여 건조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수목의 관수(灌水)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수목의 성장과 관련해 볼 때 옥상정원의 관수는 가능한한 표토에서 가까운 곳에 수분이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천근성(淺根性)수목을 뿌리 깊은 곳에서 수분이 흡수되도록 하면 뿌리는 점차 수분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되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될지 모른다. 반대로, 심근성(深根性) 수목은 너무 얕지 않게 그리고 너무 깊지 않게 관수되도록 하여 뿌리의 성장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주 관수를 하면 토양층속에 영양분들이 물에 씻겨 버리므로 시비(施肥)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재지역에 짚이나 낙엽들을 덮어 뿌리덮개를 해주므로 증산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설계경기의 문제점

The problem of design competitions

박 영 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 정

1958년 국회의사당 현상공모 이래 근 30년동안 지대한 관심속에 무수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88서울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더욱 빈번하여지고 대형화된 현상설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뜻있는 이들이 지면을 통해서나 사석 또는 공개석상에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꾸준히 펴왔고 현실적으로 현저히 개선된 우리의 현상설계 풍토속에서 자칫 진부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거론함이 새삼스럽다는 감도 없지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극히 소수의 건축인들의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의 건축사들에게는 「남의 일」인양 생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상설계의 의의는 여러각도의 시점에서 파악될수 있겠으나 동일한 과제를 대상으로 다수인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작품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에 무관하게 서로의 주장을 비교평가 해 보거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더욱 많은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우리의 건축

문화의 수준을 평준적으로 제고시키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중요한 현상설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대단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그러나 일단 참여한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자신의 작품을 소신껏 완성시킬 수 있다면 더욱 값진 일 일것이다.

근자에 있어서와 같이 현상설계공고나 신문지상을 범람한다면, 혹시, 「현상설계의 A, B, C,」 또는 「현상설계 당선의 지름길」 등의 제목을 갖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상설계」라는 용어가 흔히 통용되고 있으나, 그 속성에 비추어 보거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때 「설계경기」로 표현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어떤 묘수나 각별한 전략을 통해 당선을 피하기 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공정히 평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다수의 참여자가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이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설계 풍토의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의 설계경기규준을 모체로 건축관계 3단체가 함께 마련한 「한국건축설계규준」이 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았을때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여타의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며, 다만, 간곡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현상설계의 주체는 주최자, 참가자 및 심사위원으로 대별되어 파악되는데, 이러한 세개의 집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

현상설계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문제점들을 거론키로 하면, 현상설계는 주최자인 발주자가 경쟁입찰을 급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이외의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 및 작품을 선정하고자 할때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품을 선택하느냐 작가를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국의 어느 도시에 세워지는 미술관의 경우 등을 보더라도 굳이 작품선정에만 치중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최측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입장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설계를 시행함에있어 주최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은 설계경기규준 제4조에 「외무사항」으로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및 설계지침을 확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조건들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 부터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현상설계의 목표설정 및 경기조건의 결정에 참여케 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

직하다고 하겠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담당자의 경험이나 사전 지식의 습득이 불충분한 까닭이었겠지만, 대지조건을 밝히지 않는 현상설계공모가 있어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도 몇차례의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거치는 동안 이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준비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현상설계의 당선작품이 가급적 원안의 취지에 충실하게 발전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특히 설계지침서의 내용이 갖는 중요성은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인,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주 또는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이 원활치 못한 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지어진 많은 건물 가운데 원래의 당선작과는 판이하게 완공된 경우가 더욱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터이다.

현상설계를 「설계경기」라고 표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동감을 표한다면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승복할 수 있는 규칙을 바탕으로 함이 더욱 마땅하다. 현대 스포츠에 있어서도 경기 규칙의 완벽성이 경기 내용의 질적향상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는 사실과 상통한다고 보여진다. 누가보아도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세워놓고 경기를 치룬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닌가? 현상설계가 진정한 제도를 이탈하여 「설계권」 자체가 「이권」이라는 차원에서 악용된다면 주최자나 참가자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일종의 「문화적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설계지침서상에 설계경기규준 제6조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상설계」라는 용어가 흔히 통용되고 있으나, 그 속성에 비추어 보거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때 「설계경기」로 표현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어떤 묘수나 각별한 전략을 통해 당선을 찍히기 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공정히 평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다수의 참여자가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이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명기된 바와 같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상금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최자측이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확고한 취지에 따라 현상설계를 시행코저 한다면,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입수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의 초기투자비용에 해당되는 현상설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만일에 수의계약이 아닌 현상설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의 절감만을 도모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함이 어려울 것이다. 예를들어 현상설계의 시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들을 일반적인 보수요율에 의한 계획설계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주최자의 문화의식 수준이나 본래의 시행의도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자유건축가가 아닌 건축사의 입장에서 경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형편인 것이다. 아울러 순수한 입장에서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대단한 정열을 갖고 작품의 제작에 임하게 되는 많은 참가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이 사명감을 갖는다면 우리의 건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는 너무도 현실을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런지?

한편, 현상설계에 있어 실제로 작업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설계기간이 적절치 못하여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경기」라는 면에서 보아서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단기간 일지라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고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토대로 작품제작에 임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소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작업을 진행시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막연히 충분한 기간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아무리 필요한 경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설계팀만이 최종 당선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자칫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겠고 과연 경쟁을 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명구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의제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설계일정을 감안하여 과업의 범위에 따라 약간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의 입장에서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점 가운데는 주최자가 요구하는 성과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편리하다거나 소요경비의 제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부합되도록 정해지는데, 올림픽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시행된 현상설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나친 재약을 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다. 제출도서의 재질과 규격 및 도면매수는 물론이고 표현할 내용과「레이아웃」까지도 지나치게 획일화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주최측에서 볼때 특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 날 소지를 사전에 없앤다는 의도가 있겠으나 재고하여 볼 문제

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의 표현기법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대체로 채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백색 바탕에 흑색선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트롤 지 위에 먹물로 「잉킹」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에는 인력의 소모가 많고 구식이 되어버린 느낌이 앞선다. 최근에 사용빈도가 부쩍 높아진 사진재판술을 이용하는 방법등은 무리한 비용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현상설계가 중복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인쇄사가 시중에서 동이 나거나 몇몇의 인쇄소에 작업 의뢰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모 인쇄소 사장은 「내가 최초의 심사위원이다」라고 공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작품 내용에 있어 충실을 기하기애 앞서 표현수단의 개발이나 물량공세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경기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볼때, 좋은 내용의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겠지만, 작품에 담긴 내용이나 의도가 「심사」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는가를

우려하는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자신의 작품을 제한된 규정안에서 최대한 돋보이게 치장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저하는 참가자들의 지나치게 조장된 경쟁심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과다 비용지출을 억제하는 기본방침에 충실하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을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과업의 규모와 참여 가능한 범위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나,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도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작업시간의 단절과 장기화 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설계의 당선작 발표가 있을때면 으레 개운치 않은 뒷소문과 함께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과연 어떤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적당하며 몇명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그 명단은 어느 단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 이런 명제들을 놓고 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은 결국 사람에 의해 정해진다」는 단순론리 뿐 아니라 시행되는 현상설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설계경기규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가들이 주체가 되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인들이 많으며 다만 소수의 비전문가들만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설계경기규준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고 있지않은 실정이다. 건축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신뢰도가 못미치는 형편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유재산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총체적 자산의 일부인 점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수용하는 지도계층의 의식 수준이

“헌상설계의 당선과 탈락이 있을때면 으레 개론치 않은 원소들과 함께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과연 어떤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적당하며 몇 명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그 일단은 어느 단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그 논란이 벌어져 않는 것은 「사람의 입은 결국 사원에 의해 통제된다」는 단순논리 뿐 아니라 시행되는 헌상설계의 성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음이다.”

· 항상되지 않는 이상, 실효없는 주장만 되풀이 될 뿐이다. 다수의 비전문가에 의해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건축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주최측으로 부터 두터운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표방하여 심사위원회외의 전례의사가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문제와 공개하는 시기에 관한 견해는 각 주체집단의 입장이나 이익에 관련하여 다르게 나타나 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가급적 초기 단계에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물론, 현상설계공모시에 함께 발표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왕에 있었던 대부분의 건축인들이 주장했던 바와 일치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상당히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있는 문제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든 현상설계 참가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야하며 모든 심사과정을 통하여 작품제출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었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문제이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현상설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많은이들이 현상설계가 갖는 여러가지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회의론을 갖는 부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당연히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당선작품이 선정될 것이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안목이나 지식의 수준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정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숫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가들을 위하여 심사초기에 제출된 작품을 놓고 전문가들이 해설을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을 정하지 않거나 당초의 규정을 무시한 채 기작 및 당선작의 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그대로 시행하기에 마땅한 작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합리화 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차라리 시행절차상의 재반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최측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작품의 우열을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상설계공모 과정을 통하여 기념비적인 작품이 빛을 보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간절한 기대를 외면한채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무난한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더욱 허다함은 불행한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기왕에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면서 많은 경비를 들여 시행하여 얻어진 작품이 좀더 높은 수준이어야하며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가장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시행한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을 정하지 않거나 당초의 규정을 무시한채 기작 및 당선작의 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그대로 시행하기에 마땅한 작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합리화 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차라리 시행절차상의 재반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최측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일단 당선작이 결정되어 발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심사과정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당선작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신춘분에발표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헛된 소문이나 의문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가장 적절한 특효약이 될수있을 것이다.

최근에 시행된 현상설계에 있어 참가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중에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 또는 그 사무실이거나 협력자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선작이 작품자체로 그치기 보다는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동안 떠돌아다녔던 작가의 자격 논쟁이 대두될수도 있겠으나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인으로서 건축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작가의 동반자이거나 조력자이기 보다는 건축사 자신이 작가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 가운데는 당선되는 경우에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자격이 없거나 공공연히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합작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함은 건축사의 명예를 걸고 적극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관계 3단체중에서 특히 법적인 보장을 받아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체회원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建築과 環境彫刻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sculpture

安 瑛 培

서울시립대학 교수

건축과 시각예술

건축은 일반적으로 회화, 조각, 공예 등 여러 분야의 視覺藝術과 협동하여 이루어 지는 綜合藝術로 인정되어 왔다.

미국의 저명한 건축평론가인 빈센트 스컬리(Vincent Scully)는 “건축은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고립된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만 관련된 판단 기준에 따라 건축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이 회화나 조각을 배척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이 인간의 생활공향을 형성하는 가장 큰 構造物임에는 틀림없지만, 회화나 조각 작품들과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을 때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활기있게 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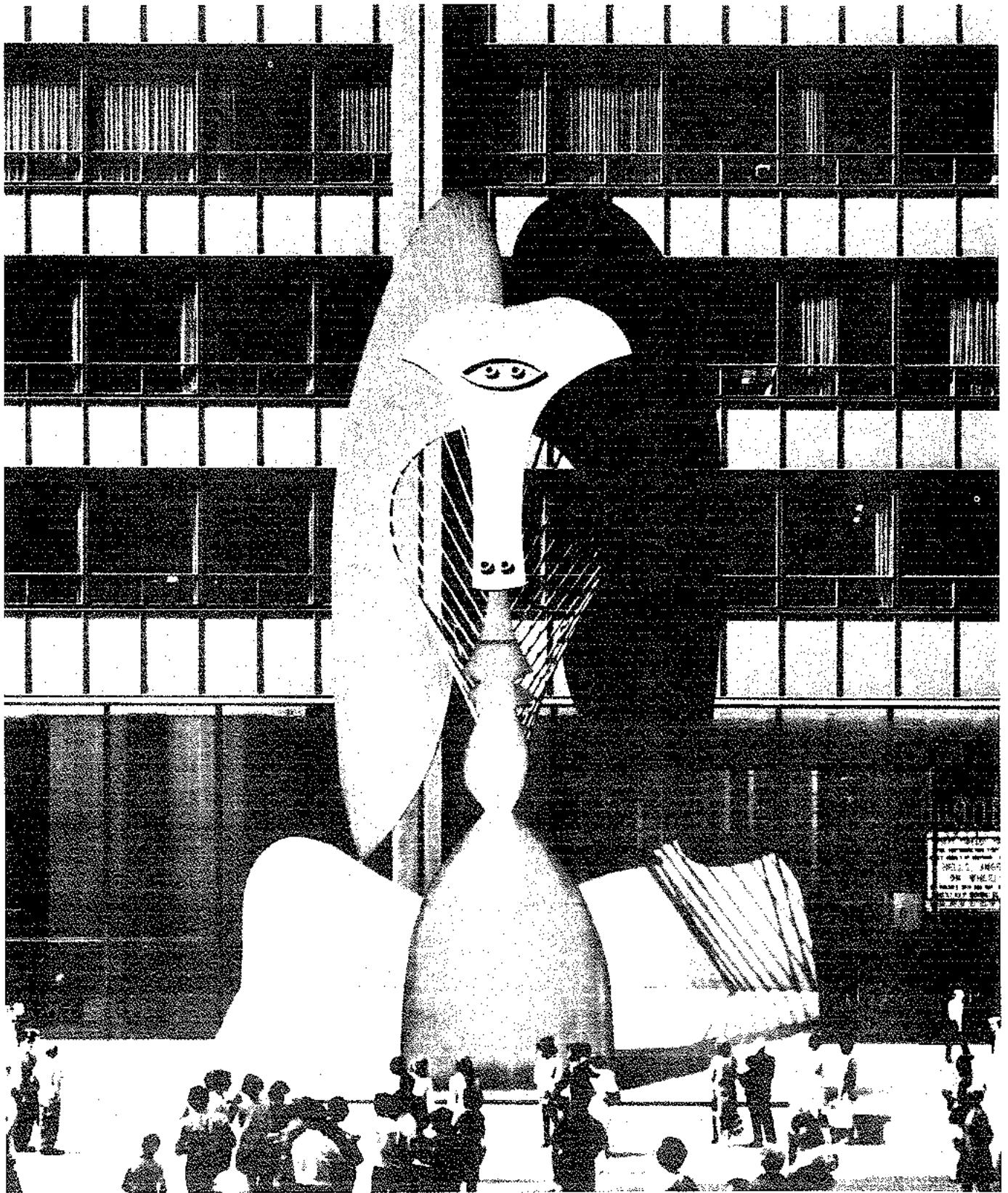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건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인도의 부라매스와라사원이나 이집트의 아부심벨 등은 건축에 속하는지 조각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조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스 건축의 특징은 건축물과 조각물의 배치가 시각적으로 미묘한 動的均衡을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건축물과 조각물보다도 서로를 연관시키는 배치개념을 더욱 중요시 하였다. 아크로폴리스, 올림피아 알레스 펠로잔 아테네 등이 좋은 실례들이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의 건축양식들은 사실상 일반 회화 및 조각의 樣式區分과 동일한 것이며 건물의 벽면과 천장이 바로 회화를 위한 배경이 되고 건물의 부분부분에 조각물이 위치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된다.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주의가 풍미하게 된 근대건축에서도 예술이 건축에서 완전하게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건축의 거장들인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델 로에, 프랑크 라이트 로이드, 윌터 그로피우스 등은 모두가 건축에 다른 視覺藝術을 도입해 보려고 노력했던 건축가들이었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를 창립하여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협동하여 종합화된 성과를 중시하였다. 르 코르뷔지에는 초

기에 화가로서 취득한 방식에 따라 건축조형을 조절하였고 후기에는 거의 조각화된 건축물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미스도 조각과 회화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건축과 함께 병용하여 밝고 무게 없는 특유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환경조각의 실례

현대에 있어서 건축이 다른 예술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대표적 예는 環境彫刻이 될 것이다. 현대의 환경조각은 주로 인체의 스케일에 맞춘 과거의 조각과는 달리 거대한 도시공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된 것이 많다. 자칫 무미건조해지기 쉬운 도시공간에 대규모의 조각품을 위치시킴으로써 공간에 독자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킨 대표적인 예로서 시카고 시빅센터의 앞광장에 놓여 있는 피카소의 조각 “Untitled”(그림 1)를 들 수 있다. 1967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작품은 높이가 18m 인 철제 추상조각품으로 사람들은 이것에 호기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기나 사진을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필자가 수년전 어느 여름날 오후 5시경에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마침 옥외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가수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전체 광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활기에 차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都市民의 広場이구나 하고 느낀적이 있다. 피카소의 이 조각은 크기가 지나치게 거대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 후면의 큰 건물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건축조형과 조각이 서로 돋보이게 된 좋은 實例라고 할 수 있겠다. 피카소의 이 작품과 더불어 마이스가 설계한 Federal Center 앞에 있는 알렉산더 칼더의 조각품인 “Flamingo”(그림 2)는 약동하는 듯한 오렌지색의 작품으로 기묘스런 건물과 주변의 광장에 활기를 주고 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실례로는,



(그림 1) 피카소 "United" 시카고시빅센터 1967



(그림 2) 알렉산더 칼더 "Flamingo" 시카고, 1974

- New York의 Chase Manhattan 광장에 있는 Jean Dubuffet의 조각. (그림 3)
- Hales Boggs 정부청사의 광장에 있는 C. Meadmore의 조각.
- Orland 정부청사의 앞에 위치한 Geoffrey Naylor의 조각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품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형건물에는 반드시 총 공사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설치규정의 법적근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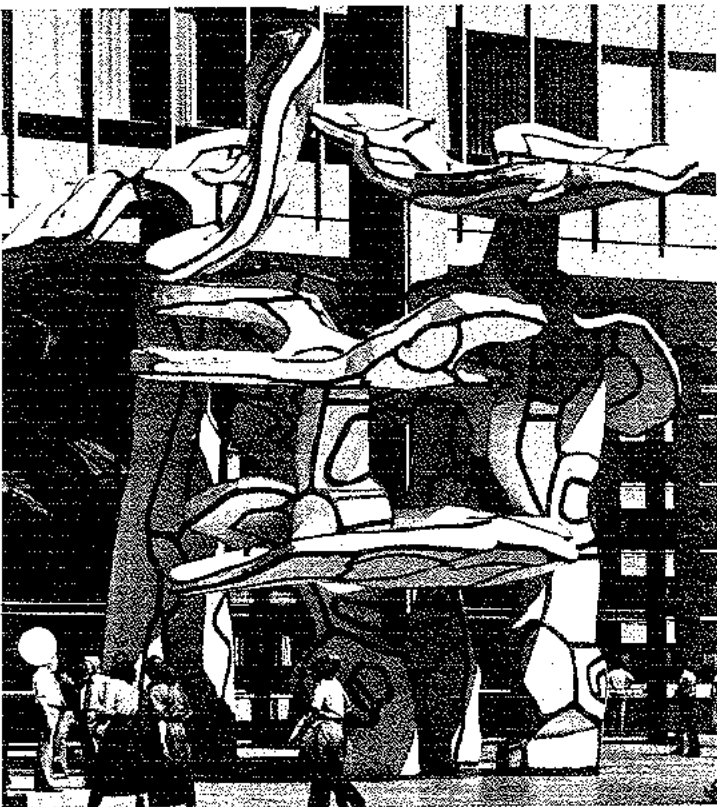
서울시 건축조례 제 19조 제5항에 의거한 시장지시 제 133호(84.7.19)에 의거하고 있다. 이 조항이 비록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都市美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될 것이지만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는 벌써부터 시행되었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이 10,000㎡ 이상의 건물이며 공동주택과 공장용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 예술품의 종류는 조각, 회화, 벽화, 분수, 조명등, 시계탑, 기념탑등으로 구분되며 그 설치시한은 건축물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술품

의 설치시한이 건물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는 점이다. 예술장식품의 설치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 이것을 제작하게 되는 미술가들이 충분한 시일을 두고 구상해서 제작할 수 있다면 그 주변의 환경에 조화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준공공사가 임박해서 설치를 서두르기 때문에 작품을 구상해서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그 결과 기존의 이미 제작되어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장소에 잘 調化되는 작품을 선정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술 장식품의 크기와 형태는 그 작품이 놓여지게 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사전에 구상해서 제작한다 하더라도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이미 제작된 작품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藝術作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環境彫刻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즉 작품만으로 보면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도시환경속에 설치하게 되면 왜소해서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섬세한 人體의 具象彫刻인 경우에는 도시환경속에서 거대한 건물의 매스와 조화되기 힘들며, 무턱대고 규모를 크게 한다면 휴먼 스케일과 조화되지 않는 문제가 뒤따른다. 그렇다고 인체의 조각이 모두 좋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놓여질 장소와 무관한 순수한 작품으로 제작된 것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작은 규모의 인체조각을 주제로한 경우라 할지라도 프린스턴 대학가에 있는 독서하는 소녀상이나 George Segal의 "식당"(그림 4)이란 작품은 독특한 환경의 조성에 성공하고 있다. 독서하는 소녀 모습의 조각상은 프린스턴 대학가의 은행



(그림 3)
Jean Dubuffet
"Group" of Four
Trees
Chase Manhattan
광장 뉴욕, 1972

옆에 위치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화단에서 신문을 읽으면서 앉아 있는 모습과 잘 어울리고 있다. Buffalo의 정부청사 건물 주변에 있는 "식당"이란 조각도 식당을 연상케하는 벽돌벽과 창문 안쪽에 청동으로 된 세계의 인체조각이 친근한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요컨대 환경조각은 그 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장식품의 설치계획은 적어도 건물의 착공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술품에 대한 가액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이다. 규정에는 건축공사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藝術作品을 정확하게 가액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미술협회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한국미술협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美術團體이며 여기서 평가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하나는 미술장식품의 제작자가 한국미술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 나타난다. 한국미술협회의에서는 비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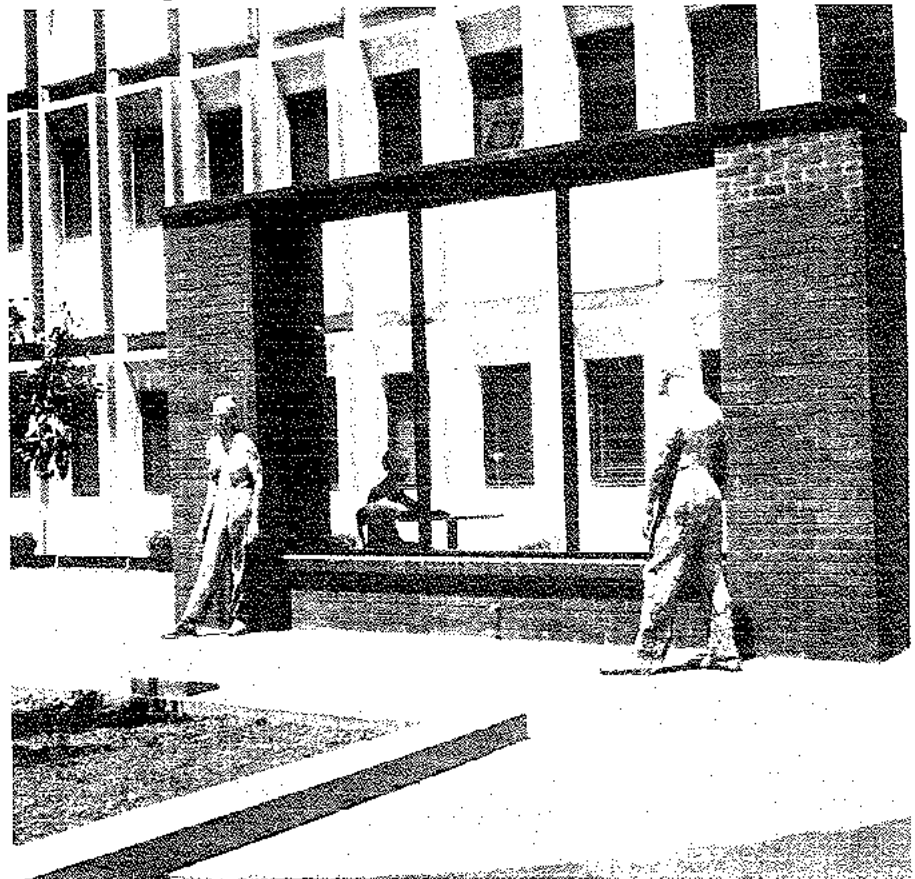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종종 있어왔다. 특히 미술장식품중에서도 분수, 조명등, 시계탑등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국미술협회의 회원이 아닌 建築家나 일반 디자이너들이 담당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 건축사협회나 한국건축가협회에 의뢰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얼마전에는 모빌링 옆에 계획된 시계탑과 모백화점 앞에 설치된 코끼리상이 미협에서는 그 작가가 회원이 아니며, 또 그 구조물도 미술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작품들이 예술적인 차원에서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도시경관의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축물, 또는 예술품이 가지는 가치를 단독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울렸을 때 형성된 전체적인 環境에 따라 評價하는 새로운 이해방식에 눈을 돌릴 시기이다.

(그림 4) George Segal "식당" Buffalo, 1976



한국 현대건축의 기본방향

A basic course of Korea modern architecture

조영부
(工博, 中大 講師)

1. 조상의 숨결 - 고유한 실존성의 근원

우리 원시사회는 약 5천년전부터 문명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초기 공동사회를 관리하는 과정에 독특한 민속이 생겨나고, 그 바탕위에서 고유한 민속건축이 발전했다. 오늘날 까지 구전되어온 건축용어와 현존하는 민속건축유산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 구전용어는 한자로서도 표음하지 못했으며, 이 민속건축유산은 중국화되지 않은채 현존하고 있을뿐 아니라 거센 근대건축 양식과도 독립하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 공간구성체계는 과거의 생활양식과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구조양식에는 인접국가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가집과 익공집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겨레의 개성을 강력하게 표현한 민속건축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전통의 주류이며, 기리 기려야할 고유한 실존성이다.

불행스럽게도 과거의 도목들은 건축법식을 기록해두지 않은 채 이미 유명을 달리 했다. 그들의 작품과 건축행위를

우리는 제대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술기와 솜씨가 눈에 보이거나 마음으로써 느끼는 멋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귀솟음”과 “안솔림”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귀솟음이란 평기둥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귀기둥에 이르기까지 기둥높이를 점점 높히는 이른바 생기법을 뜻한다. 안솔림이란 정면과 측면의 열주들을 수직으로 세우는게 아니라 기둥높이 1척마다 몇리씩 안쪽으로 쏠리게 상향시키는 이른바 축각법을 뜻한다. 이런 용주제도가 목조가구 구조를 튼튼하고 짜미추면서 동시에 간수가 늘어남에 따라 커지는 수평착시와 수직착시를 교정하는 기법이었다. “안솔림” “귀솟음” 같은 말이 깨우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자랑스러운가! 또 “명당”이 깨우쳐주는 이상도 어떠한가!

지금 당장 “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처럼 귀중한 건축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설사 말이 존재하지 않아도 다른 존재형식으로서 조상의 술기와 솜씨가 이 땅위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까맣게 잊어버린 오늘날,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자각하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기질이 또 하나의 우리의 실존성일지 모른다.

과거 제각기 집터를 우주의 중심처라고 믿었다. 오행설이 그러하다. 지금도 상양식때에 동·서·남·북·천지의 제신에게 공양을 하면서 그 집과 그 입주자의 부귀영화를 빈다. 대지의 홍망성쇠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한가지로 꿈꾸었다. 이런 사상이 “명당”의 건축을 낳았다. 하여튼, 실용적인 측면에서 집터를 고를때부터 깊이 생각하며, 집과 마당, 더 나아가서 마을과 산수까지 총체적으로 통찰(secret investigation)하던 조상의 숨결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

2. 세계건축으로의 전환

눈에 보이거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민속건축의 실존성과 그 지문적 독창성은 매우 귀중하다. 산수가 굽이굽이 흐르는 우리 대지의 지문적 특성도 매우 귀중하다. 이것들이 한국건축의 중국화와 서양화를 막고 외래수객의 한계를 점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또 다른 방향과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동서양의 모든 나라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백년전의 건축세계나 천년전의 건축세계로 되돌아 갈수 없을 것이다. 건축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설사 되돌아간다는 쳐도, 과거의 건축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하고 구속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사회에 사는 기분을 느낄것이다. 건축은 절대성과 상대성의 양면을 소유한다. 시대나 문화전통에 따라 요구 층층과 질은 변화한다. 우리 시대가 문명사회에서 문명후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지 못하는 변화의 다이너미즘이다.

현재 건축의 발전단위는 국가나 문화의 단위가 아니다. 이 지구상에는, 국가나 문화를 초월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건축이 있다. 이것은 근대 국제건축의 것과도 전혀 다른 경향이다. 양식을 초월하여 인류가 다 같이 동참하여 추구하는 이상상의 추구이다. 지식과 정보, 이미지와 비존, 그리고 건축교육까지도 교류하고 있다. 한국의 건축기반도 바야흐로 세계건축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고유의 실존성과 그 지문적 독창성을 간직한 채, 우리는 세계건축으로서의 한국건축이란 새로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건축기반의 꿈틀거리

유사이후, 우리 건축기반은 세가지 주요 전통요소의 충격을 받고 세차례 크게 꿈틀거리면서 전진하였다(그림 1) :

- (가) 제 1 전통요소(약 5 천년간) : 민속건축 ;
- (나) 제 2 전통요소(약 10여세기간) : 서북아제국의 동양건축 ;
- (다) 제 3 전통요소(약 1 세기간) : 구미제국의 서양건축.

장기간에 걸쳐서 서북아제국의 동양건축양식을 수용한 민속건축은 주로 궁원, 객사, 묘사, 관아, 학원, 병영, 불사, 능원 등 일부 공공건축을 다양화시켰다. 구조양식의 측면에서, 주상포작양식(주심포)과 보조포작양식(다포)이 그러하지만, 우리 포작제도는 결코 중국식과 같지 않으며, 특히 부계병전의 루실구조는 거의 대부분 짝수층에서 반칸 물린 뜰처마기둥을 세운 특이한 비례형태를 채용했다. 외래 동양건축의 영조법식이 정리된 다음에도, 그것을 완전하게 채용한 실례가 극히 드물다. 어떤 분이 “소화불량상태”에서 수용했다고 평하지만, 나는 “복이 하게 소화”했다고 반론을 펴고 싶다. 그 나름대로 기능-구조-형태의 특이한 총체표현을 완성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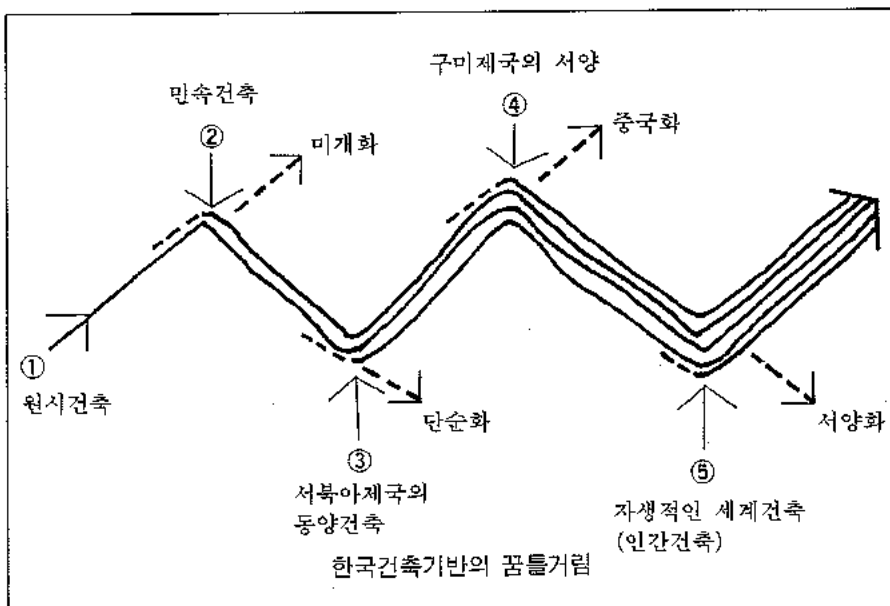
구미제국의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실학이 싹텄다. 다산 정약용이 “정도형 이상도시안”을 제안했고, 김정호가 “대동지지”를 탈고했다. 그 무렵의 “화성”신읍의 경영은 역사적 발전의 차이를 보여준다. 구한말에 이르러 비로소 시농공상의 사민제도가 폐기되고, 동시에 신분에 따라 건축의 간수, 치수, 재료, 구조를 제한하여 규제하던 주거조례가 폐기되었다. 구한말의 건축사회에서 목재

가 가장 적절한 재료인가? 뭔가 새로운 건축을 피할 시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이 무렵 개원과 개시와 더불어 구미제국 고전건축양식과 뒤이어 1930년대에 근대기능주의건축양식이 국내에 들어닥쳤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의하여 고전양식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구한말 탁지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주로 공공건축분야와 상공건축분야에 고전양식을 도입했다. 1934년에야 비로소 고 박길용께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고대석 조본판을 설계했다. 2 차대전 당시 서울시내의 초가집의 지붕개량이 행하여졌다. 석조와 벽돌조에 이어 부력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가 보급되었다. 건축수요가 급증한 6.25동란이후 그야말로 국내전역에 기능주의 건축이 보급되었다. 초기 근대건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완전한 연구가 결여된 채였다. 도시계획의 구상과 유도없이, 무질서한 건축행위는 질의 저하와 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

과연 초기 근대건축(1917~1927) 그 자체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수정당했는가? 1930년대에 이미 풍토적인 지방주의 경향이 생겼다. 서양의 1930년대의 상황과 한국의 1950년대의 상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인가? 이미 1958년을 전후하여 구미제국은 제각기 현대건축시대로 들어섰다.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한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 비록 약 1 세기간 내지 약 반세기간에 불과했지만, 또 하나의 외래건축이 우리의 고유한 실존성과 그 독창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만큼 승리했는가? 남다르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원적인 현존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남다르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원적인 분열의식이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남”, “우리의 것”과 “남의 것”이란 대립의식을 강하게 조성시켜 주고 있다.

우리 건축기반속에는 실제로 온갖 동서양의 건축전통이 들어와 도사리고 있다. 무엇이 남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이나? 어디까지가 남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것인가? 분명히 가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건축 내부생활의 기본구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건축의 존재의미와 건축행위간의 대응관계를 다시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건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실존적 표현법과 새로 생겨난 표현법 가운데에서 주된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주된 것이 그 밖의 것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환경상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시대에는 새 환경상이 표현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새 환경상을 생각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고의 형태적인 설계가 강요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생적인 사고가 또다시 우리의 건축기반을 크게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선 동서양의 온갖 전통양식을 초월해야 한다. 이것은 근대적인 전통거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전통의 진화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제공하는 온갖 가능성들을 채용하는 것이다.

4. 건축의 외적여건

한국 현대건축의 방향을 어느정도 예견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발전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어떤 새로운 재료와 구조공법이 새로이 나타나서 우리 건축을 지배할 것인지도 예견하기 어렵다. 또 어떤 사회개혁이 생겨나서 어떤 건축개발을 강요할지도 모른다(초기 근대건축 시대가 그러하였다). 분명히 오늘의 건축가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건축기능들이 부분적인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건축기능이 현실속에 다시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공간속에 함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역할 때문에 미처 예견할 수 없던 문화적선택을 하여 함체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앞서 환경상의 경우처럼, 건축은 단체적인 해결보다도 도시계획적인 해결, 더 나아가서 조정적인 해결(landscape - architecture)이 아니면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예측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 토지의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건축의 자유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도시계획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다. 건축의 구체성은 점적인 존재인 동시에 그 성격이나 지각형태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확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정상적인 사용이 항상 공해를 발생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도시 시가지 안에서는 건축의 사회적 의의와 그 존재형식이 문제되고 있다. 지구계획 제도와 도시설계지구제도가 그러하다. 각종 제도로서 참다운 건축의 사회적 형식을 되살리려고 꾀한다. 어느 만큼 예외적인 자유가 허용될런지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 조경이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에 개입할지도 모른다.

건축, 도시계획, 조경은 현재 환경의 물리적 개발과 직접 관련하는 것들이다. 거시적인 면에서, 이 삼자간의 유기적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경은 대지를 관리하고, 그 경관을 조성한다. 이 대지는 인간생존에 절대 필요한 토지, 상수, 대기, 식물, 일광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경관은 건축과 도시를 포함하는 복합경관이 된다. 또 도시계획은 시가지를 관리하고, 그 경관을 조성한다. 이것은 시가지 안에 사는 아메니티(amenity)와 즐거움, 취업, 위락, 교통, 경제성 등이 가능한 규모, 구조, 형태를 관리하며, 도시 옥외공간과 옥내공간을 포함한다. 최근 도시옥외공간의 기능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이 소음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공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부여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물의 인동간격처럼, 고밀시가 단위들간에 격역(interstitial space)이 등장할지 모

른다. 일련의 격역이 시가단위들을 연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군도형 불연속 구조가 그러하다. 그리고 건축이 인간생활에 절대 필요한 옥내공간을 관리한다. 건축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고밀시가단위를 단일복합건축으로 처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이 도시 안에 위치하고, 도시는 대지안에 위치한다. 좁은 국토의 이용이 각종 시가단위와 각종 도시척도의 건축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건축의 사회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예견가능한 장래의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건축의 사회성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5. 바람직한 건축행위 유형

건축은 단지 외부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건축은 인간생존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옥내생활활동공간을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구체화한다. 무엇을 어느만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인간이 결정한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의 생존 및 생활활동들과 구체적인 생활공간 간의 대응관계이다. 무한한 활동을 모두 다 대응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일부 활동만을 전제로 한다. 무한한 소망과 활동가운데서 선택한 대응매체가 바로 지금까지 정의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건축에 부여하는 기능은 그 활동의 영속성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취사선택한 하나의 해답의 결과로서 선택되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간화는 일단의 기능들로서 능숙한 것이며, 기능적 수축으로 말미암아 커질 수가 없다. 선행동기가 되는 이런 기능과 달리, 구조요소들의 기능과 그 성능은 기술공학에 속한다. 기능은 인간활동으로서의 기능과 구조요소로서의 기능은 건축단계별로 다르게 쓰여진다. 건축의 구체성은 활동과 공간구조간의 대응관계, 형태를 표현하는 물리적인 구조체계, 그리고 그 공간성격이 확산하면서 주위에 들어내는

지각구조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건축적인 조화는 인간의 전문성과 개성 그리고 영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영감은 소망과 계시가 만나는 데에서 비롯하는 감정이다. 소망은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태동하는 것이며, 계시는 완벽한 존재의 의미를 암시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감이 의미를 창조한 것이 형상이다. 형상은 아무런 실제적 존재가 없는 것이며, 마음 속에 실존하고 있다. 형상이야말로 디자인의 방향을 지시하는 선착자이다. 착상한 것, 구상한 것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디자인은 마음속에 실존하는 형상의 상태로부터 기본조형언어를 구사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기본조형언어 구사의 숙달을 전제로 한다. 창조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은 기능과 형태 그리고 미를 동시에 총합 처리하는 개념일 수도 있으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디자인한다” 또는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착상이 형을 꼬집어내는 가장 귀중한 순간이 처음 기획할 적에 떠오른 최초의 영감의 계시이다.

계시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에 속한 형을 암시한다. 창조한 것은 영감에 소속한다. 건축에 있어서, 구조는

형상을 만들어 내고, 건축은 공간속에 소망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조화로써 만들어낸 것은, 자연의 조화와 달리, 유전인자와 자위조정능력을 갖지 못하며, 그 성능이 기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럴수록 더욱 자연의 유기성과 공존성으로부터 조형의 수수께끼를 베울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건축가는 주어진 과제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학적 접근방법이다. 건축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예술적이고 조형적인 방법 이외에도 새로이 과학적인 방법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며, 공동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도 또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 요구는 장차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요구 자체에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며, 현재 정의한 것들 가운데에도 어지간히 결함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확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국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행위는 다분히 귀납하는 것이 아니라 연석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관찰-연역-

발견-관찰을 끝없이 되풀이 하면서 이 상상에 접근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에서도, 건축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축의 상대성은 그 여건들과 그 변화에서 연유한다. 경제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나라마다 달라질 것이고, 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문화전통이나 지문적특성에 따라서 시대마다 달라질 것이다. 앞서 논한 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사례마다 특이한 표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것이 기계적으로 건축을 결정짓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그것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건축행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가) 첫째 유형이 발견을 앞세우는 절대적인 건축행위이고;
- (나) 둘째 유형이 관찰을 앞세우고 발견하는 전통적인 건축행위이고;
- (다) 셋째 유형이 관찰을 통한 연석을 앞세우고 발견하는 총체적인 건축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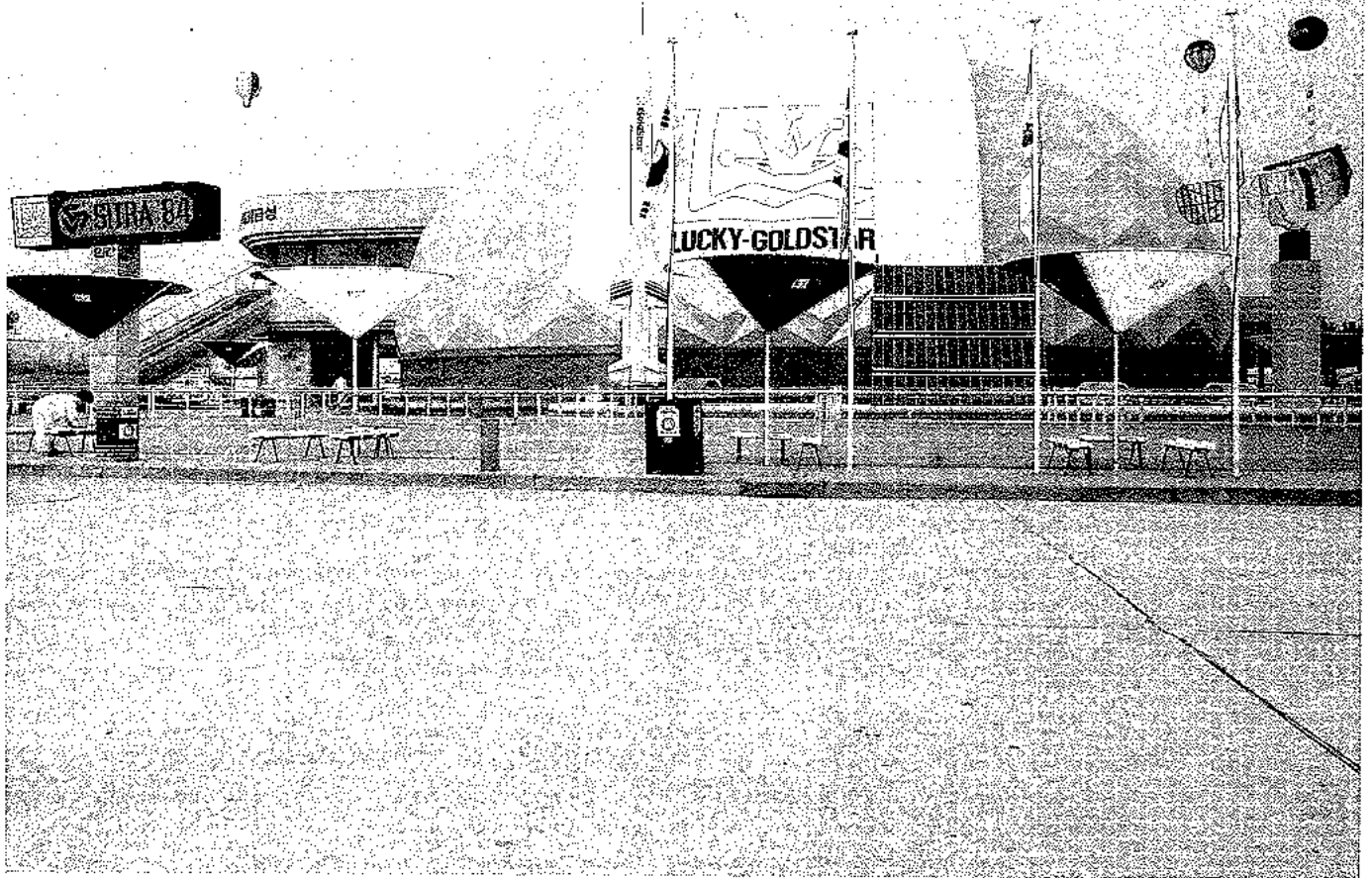
셋째 유형인 총체적인 건축행위 유형을 바람직한 건축행위로서 받아들이고 세계건축의 전제로 삼아야겠다.

大韓建築學會 事務室 移轉

대한건축학회 사무국사무실을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건물 4층 406·408호실 (국민원앞 과학기술회관내 지하철
강남역 하차) 전화번호: 553-4715·4716

낭비없는 알뜰피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SITRA '84 럭키금성관의 외부

창조공간의 도전

Challenge of creative space

-인간·기술 그리고 미래의 럭키금성관-

한 도 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인타 디자인연구소 대표

■ 건 물

- 대 지 : 1,828m² (실외 828m² 포함)
- 연건평 : 1,587m² (480평)
- 층 수 : 2층(영사실 3층)

■ 형태 및 구조

1. 형 태

○외형특징

SITRA의 이미지를 연장하기 위해 SITRA '82에 사용한 돔(DOME) 형의 메로(MERO) 자재와 외장재인 강력 프

라스틱판(FRP)을 재활용하였다. 또한 돔형의 가운데에 노란띠를 두른 타원반 구형으로, 가복이 모양, 또는 우주정류장을 표현하는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입구의 에스컬레이터에는 투명 플라스틱 수지를 덮어 관람객들이 우주선을 타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도록 했다.

○내부특징

첨단기술개발과 풍요로운 미래창조라는 그룹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기위해 영상과 전시면에서, 첨단기술제품들 만

으로 구성했으며, 내부장치에 있어서 관 모양을 고려하여 圓形, 圓筒形등을 중심으로 내부장치를 꾸몄다.

색상은 노랑, 파랑, 회색을 위주로 외부색상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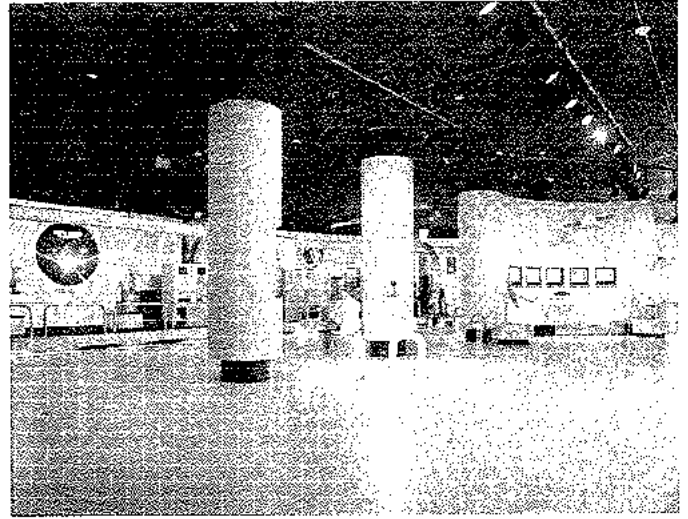
2. 구 조

•외부는 橢圓半球形의 메로구조를 사용하였고, 내부는 2층 철골구조로 영사실까지 3층건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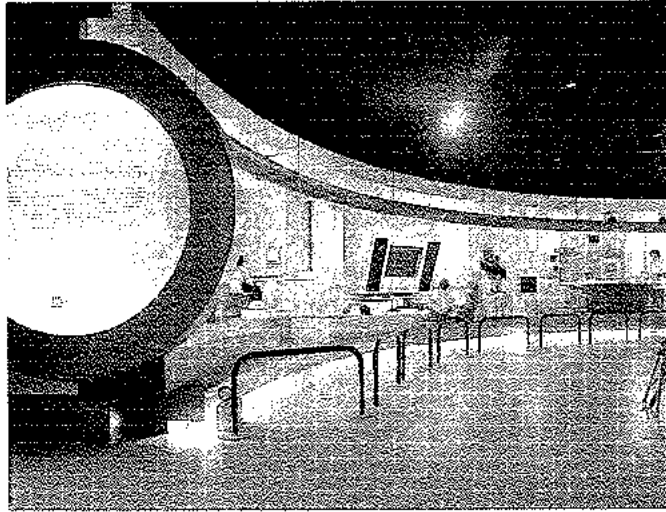
메로공법은 조립, 해체, 재조립이 용이하고, 기둥이 없어 공간활용이 자유로우며, 외관이 미려하여 앞으로 국내건축에도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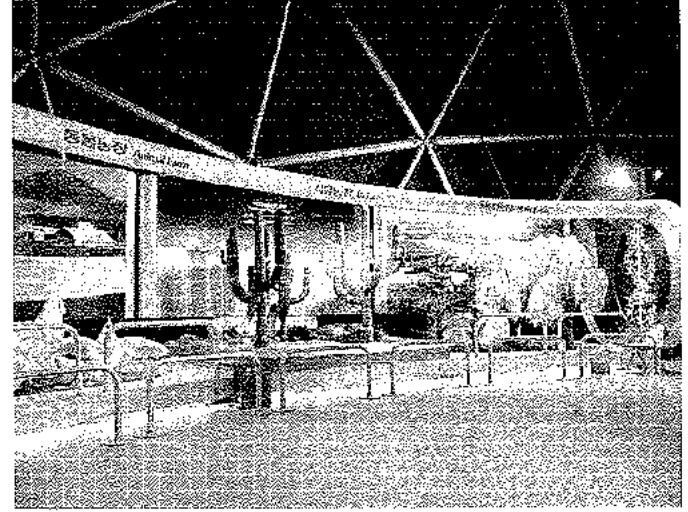
1층 춤추는 로봇코너



1층 전시관 중앙공간의 비디오텍스 및 위성방송코너



1층 미래의 자동화 가정코너



유전공학에 의한 농장코너

■ 전 시

1. 테 마

• “인간, 기술 그리고 미래”로 인공의 표현, 건강과 풍요를 나타내는 인간과, 생명과 전자 우주세계의 도전을 표현하는 기술, 무인화 시대의 표현과, 고도 정보사회를 알리는 미래로 전시테마를 정하였다.

2. 전시기본방향

- 그룹의 사시인 ‘인화’ 이미지를 표현하며,
- 신기술을 창조, 개척하는 그룹의 의지를 반영하고,
- 관람객의 흥미와 인기를 고려하여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도록 한다.

■ 전시공간 구분 및 동선 계획

1. 전시공간구분

- 관은 크게 실외 및 실내 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실내에는 에스카레이타를 타고 입장하는 초대외장, 360° 씨클비전이 상영되는 영화관, 화학, 지원, 에너지코너가 설치된 2층전시관, 전자, 전기, 통신코너가 설치된 1층전시관으로 구분된다.

2. 동 선

• 입구→2층초대의장→영화관→2층전시장→1층전시장→출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관람객은 2층으로 입장, 마치 우주선에 오르는 기분을 느끼고, 영화에서 흥분과 만족감을 가진후, 전시에서 그 여분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즉,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역동선을 취하는 독특한 방법을 계획하였다.

■ 전시계획

각 ZONE 별 전시계획은 다음과 같이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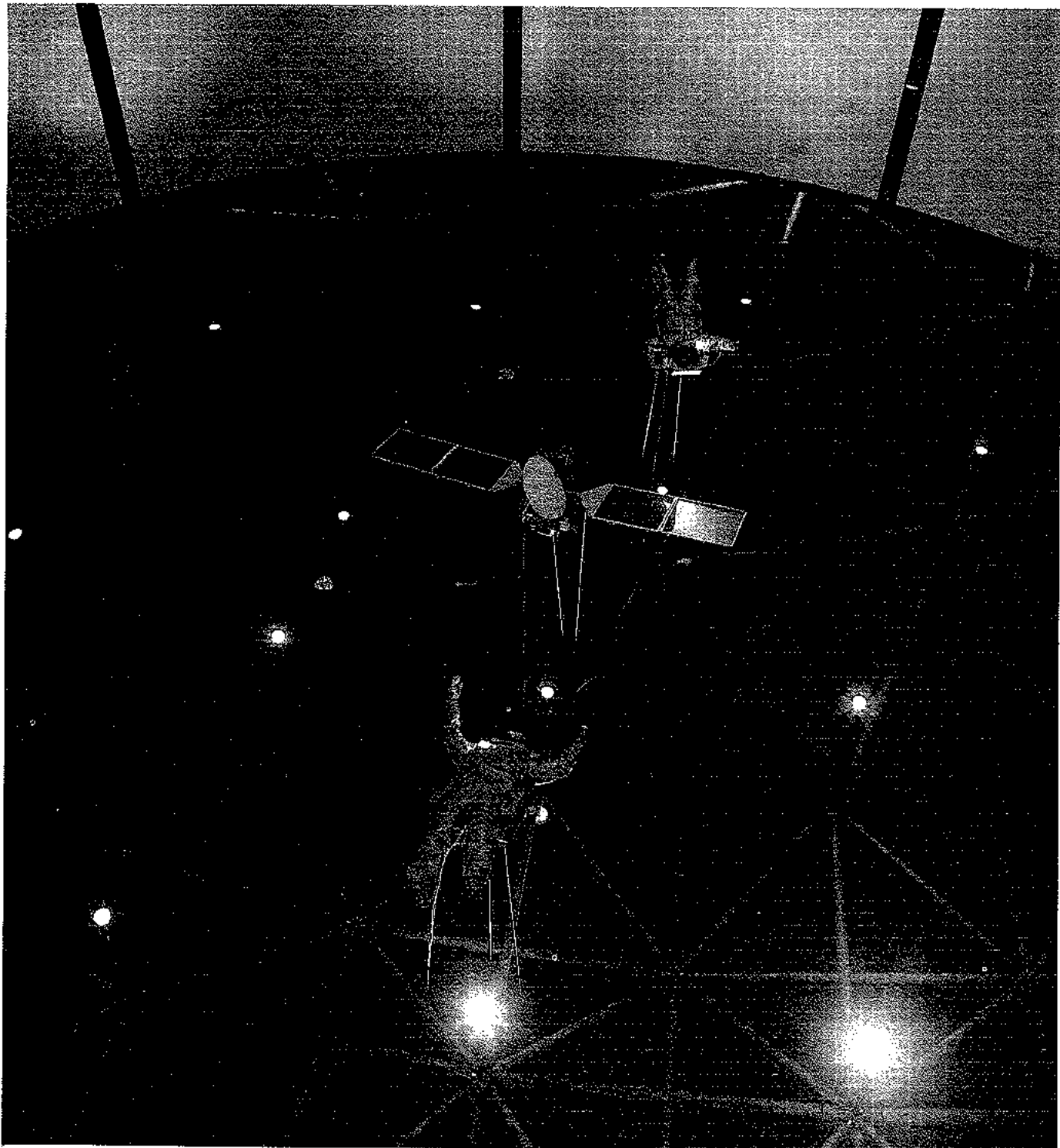
○실외전시장

• 실외에는 컴퓨터를 이용, 문서나 그림을 표현하는 표지판으로 럭키금성관의 입구에서 전시내용을 기다리는 관람객에게 안내역할하는 전자식 표지판을 전시하고, 미래 대체에너지가 될 태양전지판과 전천후 레이다, 농업현대화를 위한 농기계등을 전시,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끄는 동시에 럭키관으로의 유도를 시도하였다.

○2층전시관

• 씨클비전 영상관은 국내최초로 시도한 계획으로 9개 화면이 연결된 360° 원주 스크린에 9대의 영사기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관람객은 전후좌우로 둘러보아야 하므로 서서보는 가드레일을 설치, 영화의 입체감과 박진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화가 끝난후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관객의 혼잡을 덜기 위해 탈춤로봇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 하였다.

영상관을 나오면 맨먼저,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인 정유공장을 축소한 모형울



씨클비전 영상관의 천정부분

전시하는 코너, 신소재의 플라스틱 자동차코너, 유전공학 응용제품코너로 미래에 탄생될 복합동물농장, 식물농장, 미래에너지난을 해결할 석유농장코너를 연결하고, 유전공학의 산물로 생성될 대형 사과를 상징적으로 초대형화하고, 내부를 식물세포의 구조로 장식한 사과터널, 맞은편에는 유전공학으로 인한 의약품및 인공장기를 전시하였다. 이들은 관의 외부모양과 같이 원형으로 연출전시계획을 시도하였다.

○ 1층전시관

•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모든것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편리하고, 환상적인 미래의 가정생활을 표현하고 이들을 로봇트에 의해 설명하는 미래자동차 가정코너가 소개되며, 이들은 최첨단의료기기를 전시하는 코너로 연결하였다. 1층전시관 중앙전면에는 가장 관람객에게 인기를 끈 춤추는 로봇코너를 마련, 초정밀 기계공학과 전자기술을 결합한 개발기술을

소개하였다.

또한 레이저 코너의 계획은 미래의 세계를 연출하는 기술지향성을 의도하는 코너로 표현하였다.

전시관의 공간 중앙부에는 반도체와 광섬유, 비디오전화, 위성방송수신, 자동차무선전화기등의 코너를 마련, 벽면을 따라 전시하는 무료함에서 동적인 공간을 형성하고자 계획,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시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 계획하였다.

사랑하는 마음

권도웅

(주)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국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자라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순국한 독립투사나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산화한 군경 등 애국자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꼭 독립 운동이나, 국방과 관련해야만 애국이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그 일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애국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호구지책으로, 그 일을 배운 탓으로 하는 일이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애국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애국의 척도기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애국의 범위는 넓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조그만 애국이라도 숭선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국가의 번영은 가속화 될 것이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반을 밝혀가며 하는 작업이 우리의 마을과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며 그것이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전하여진다면 그런 일이야말로 첫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작의 대상물은 우리들의 사랑과 애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 출산후 길가에 유기된 영아같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고의 고통이 자식에 대한 애정을 더욱 높이게 한다면 창작의 과정에서 얼마큼 심혈을 기울였느냐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애정의 심도가 결정될 것 같다. 건물의 내구연한까지 건물로서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건물설계, 수년 후의 재개발 대상이 되는 건축물 설계는 우리의 애정 결핍 건축물일 것이며 애국과는 거리가 먼 창작일 것이다.

매일같이 신문에는 외채, 경기침체 등의 단어들만 반복되어 오르내린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내가 하는 일과의 함수 관계를 생각해 보자.

건축사라면 내가 설계한 건물이 팔리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당연하겠으나 외국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도에 부합하는 국내 제품이 없거나 材質에 대한 성능 보장이 어려울 때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외채 상위국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산 애용의 의무를 느껴야 한다.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육성은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 수준 이하의 제품 생산업체는 보호 육성될 값어치가 없으나 일정 수준의 제품은 우리 손에 의해 사용량이 늘어 날때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또한 제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같은 가격의 제품중 국산품이 외산보다 훨씬 다소 떨어진다 해도 국산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타일, 내외장 자기질타일 등이 예가 될 것이며 훗날 우리 시대의 건축산업 수준이 그 건물에 남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일중에 외국어의 남용을 들 수 있다. 하시라, 하리, 고바리, 아시바, 삼보드 등의 일본어를 사용해야 사강에 대해 좀 아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잘못 알거나 PROCESS, VIEW, ANALYSIS, FACADE, ENERGY, CONSERV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설계에 대해 좀 아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느끼는 듯한 오도된 멋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잘못 되었다고 솔직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말로 표현하기 힘든 용어도 있겠지만 대부분 표현이 가능한 우리 말을 외면한 채 외래어를 멋으로(?) 사용하기 즐겨하며 그런 멋(?)이 후배들에게 전수된다면 건축용어의 우리말 사용은 영원히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건축주에게 계획안을 설명할 때 외국어를 사용하면 설계자의 권위를 인정받아 설득이 쉬게 되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는 오산 중의 오산일 것이다. 왜냐하면 외래어를 이해 못한 건축주가 답답함과 지루한 때문에 지설명을 요구한 경우 세련된 내용 설명은 완전히 무시 시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선 설계실에서선 우리 많은 애용한 때 후배나 시공자, 기능공(목수, 미장, 벽돌공 등) 까지도 우리 말을 사용

하게 되어 건축용어의 우리말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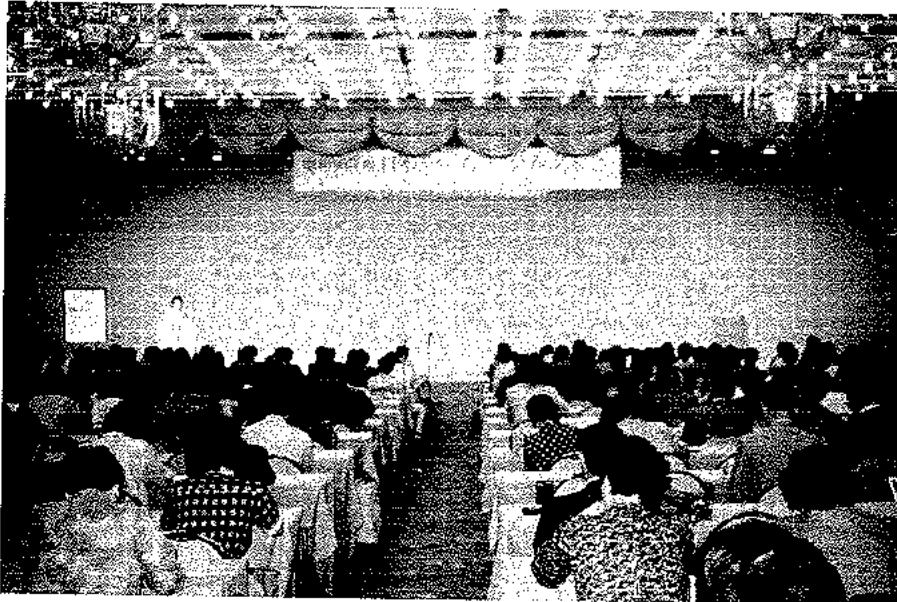
최근 서울의 중심부에는 외국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고층 건물이 준공되었거나 또는 시공 중에 있다. 서울에서만 천여 명의 건축사가 건축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결과가 되었고 국내 설계사의 몇배 되는 용역비를 외화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 자명하다.

왜 일부이긴 하지만 건축주들이 비싼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외국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지 생각해 본다. 사대주의, 외채 선호도, 社勢파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 축적에 대한 불신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닐지…….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설계 역사가 짧으니 기술 축적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미 개발되어 보급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한 그들이 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몇분의 일의 빠른 시간내에 그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배타적인 감정으로 건물의 외관이나 실내 분위기 정도를 주마강산 식으로 구경만 한다면 그들의 축적된 기술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기왕에 설계가 끝났고 시공 중에 있거나, 또는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몇차례 기회가 주어져 개괄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으나 과연 그들이 구성구석까지 의도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본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라는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축적된 기술을 내것으로 만들어 기술축적과 아울러 외화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신념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겠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꼭 필요한 방법의 모색과 제시는 기술 축적의 결과로만 기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참반해야 가능할 것이다. 뱀 다리를 그려왔음지도 모르는 우를 범하지 않는 길— 그것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당장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적은 일에서부터 한 가지씩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것 같다.

주제 : 나무와 인간관계



주제발표하는 필자

黃金比의 극치 李朝家具

배 만 실
이화여대 교수

지난 6월 1일, 日本디자인學會가 주최하는 1985년 제 6회 春季大會에 참가한 일이 있다. 이 회의 기본테마는 “〈나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이었고 본인은 國際學 交流部(International Correspondence) 대표로서 「이조가구의 意匠과 문화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바 있다.

서구는 「石의 문화」이고 日本은 「木의 문화」로서 특징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20세기 중기부터 급속하게 생활의 서구화로 〈나무〉가 점점 생활영역에서 사라져감을 아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

은 이번 회의 테마에 〈나무〉의 요소를 넣게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의 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었다.

즉, 日本은 나무의 문화로서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傳統과 造型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해야하고 그 전통적 미의식을 찾아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무는 수공예나 기계기술에 의해 생활공예품에서 예술품까지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과정은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기술이 있었겠고 이를 찾기위한 조사와 보존 내지 현재의 木工生産의 재확 및 선단기술에 의한 새로운 나무의

조형을 개발해 보자는데 이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일은 日本나무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생산기술을 해외에 알리기도하고 나무기술문화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역사적 연구를 하다 보니 일본가구 즉 단스(簞笥)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李朝시대의 목공가구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말하고 있었다.

이조목공이 가진 直線을 주체로한 조형과 억제된 아름다움, 적당한 기능성을 겸비한 가구가 일본에 도입되어 일본의 材料, 工法내지 미의식을 통해 섬세한 조형의 단스로서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大會長 鍵和田務 氏의 말)

일본의 공예학자 柳完悅 氏는 한국 목기미에 대하여 “글로도 표현키 어렵고 말로서도 할수 없는 인간적으로서 잘 재어지지 않는 미”라고 표현한바 있다.

실로 한국가구미의 표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유출된 자연감각의 조형미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컸던 유교적 사상에서 儉素質外한 형태미를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강직한 직선의 단순미는 20세기 현대 건축과 실내에도 조화와 통일미를 주어 많은 국외인들에게도 극찬을 받고 있으며 수공예적인 소박미는 非整齊性을 특색으로한 鈍厚美와 더불어 鄉愁愛에 넘치는 民藝의 친근감을 다분히 나타내고 있다.

이조시대의 양반들은 고려시대의 귀족처럼 섬세한 미적감각이나 미에 대한 욕구가 없었으며 미에 대해서 오히려 담담하였기 때문에 서민층의 순수한 천생적 미의식을 그들 나름대로 구현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사용자나 제작자사이에 소용된 솔직한 표현으로 한개의 나무토막이 가지는 자연미와 같이 사람의 손을 빌린 造型 이전의 美, 즉 평범하고 소박한 單純美의 경지

에 다달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꾸밈새 역시 당대 崇儒政策에 의한 内外法에 의해 성별이 구분되면서 검소를 기틀로한 界性空間에는 禮를 논하는 선비위주의 文房家具가 많았고 폐쇄적인 女性空間에는 재료에 따라 채색이 약간 깃들일 정도로 담백하였다.

대부분 원목의 木理가 배경을 이뤘던 까닭에 가구장식으로는 金具裝飾이 주된 역할을 하였는데 연대가 오랜 것일수록 무쇠를 썼으며 수량이 적었고 중기에는 놋쇠, 후기에는 백동장식이 출현하면서 수도 늘었으나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金具의 부착기능이 장식적인 것도 있었지만 보강역할도 겸한 것이 특징중의 하나다. 이러한 金具장식은 자연 형태의 문양이 많았는데 당대 불안했던 사회상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정신적 염원이 紋樣化된 것이 많다. 즉 十長生, 長壽紋이 주가되며 四君子와 같이 고고한 선비들의 기상을 나타낸 것도 있다.

조형미중에 또하나 생각해 볼 것은 가구 형태의 比例美다. 方形과 長方形의 반복이 前面構成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추구하여 좀더 분석적인 미의 해답을 얻고 저 약 400여종의 가구에서 全体輪廓比를 찾아내고, 문짝, 서랍, 좌벽칸, 머름칸등의 部分輪廓比에서 실측을 통한 수치를 산출해 보았다. 물론 가구의 개개 형태 뿐만 아니라 종류별, 가구간의 형적, 종적관계 및 실용상의 기능과 실내공간과의 유기적 상황 등도 참작한 것이다.

결과, 美學上 가장 조화되고 균형미가 아름다운 黃金比(1:1.618)가 최고의 빈도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들이 과거 黃金比에 대한 지식은 없었겠지만 타고난 미적성품과 체험을 통하여 동서고금에 상통되는 面分割의 比例美를 체득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당시(英祖1725-1776) 서구문물의 전래, 實學思想으로 인한 자아확립, 과학, 예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상 전환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그 시대의 獨白性이고도 實際의 인 미의식이 바로 조화된 문화를 갖춘 이조시대 후기의 사회를 이룩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조시대는 지세가 구릉이 많고 지질은 화강석이 흔하며 植生學的으로 소나무가 盛했다. 그리하여 木造架構式構造의 單式住宅樣式이 주가 되며 가구도 따라서 소나무材를 많이 썼다. 소나무 외에 여러종류의 잡목도 즐겨 썼는데 이러한 잡목의 자연소재가 좋게보던 순박한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나쁘게 말하면 재료의 포충이 조잡하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樹種은 1000여종에 달하지만 그중 家具材로는 30여종이며, 가장 많이 쓰인것이 松, 梧桐, 烏柳木, 栗木, 皮木, 槐木, 檜木, 楸木, 檜, 杏子木, 丹楓 등이다. 이러한 수종의 원목을 梃目 혹은 板目으로 절단하여 자연문리를 잘 살려 가구를 만든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自然質感과 自然色을 보존키위해 도장은 되도록 식물성油質을 택했고 색채는 태운 나무의 재(灰)나 소피(牛血)를 발라 그 위에 투명된 식물기름 혹은 生漆, 熟漆을 하여 길을 드렸다. 대개 朱漆은 正室用, 黑漆은 중류이상에서 사용하였고 민가에서는 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면 기능과 조형미를 겸한 가구가 많고 收納空間과 裝飾空間을 적절하게 구성시킨 점과 장식과 보강을 요묘하게 나타낸것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가구 특유의 이음과 짜임, 붙임 등의 結構法을 사용하면서 못(釘)을 쓰지않은 것이 또한 독특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가구는 의장, 재료, 기술 등의 측면에서 그 특유한 전통양식과 美의식을 표현한 조형미를 형성해왔다. 이에 비해 日本古家具는 아직까지 거의 전통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된다.

동양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모든 문화예술이 한국, 중국, 일본등에 서로 유사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불교의 통일시대를 거쳐 분리시대에 들어 오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보여준 것 같다.

나무의 造型을 통한 국제교류의 의의는 외국의 근대 목공기술 도입도 중하지만 각기 그나라 특유한 傳統技術과 첨단 기술과의 관계 등을 좀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많이 연구됨이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간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서 나무가 가지고있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삼림전문학자가 학설로 보고한 바 있다고 한다.

〈나무〉와 인간관계, 〈나무〉와 생활환경관계, 〈나무〉와 조형문화의 문제등 우리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냉정하기만한 차가운 재료와 기능적인 생활환경에 묻혀있어 따뜻한 정감이 흐르는 풍부한 생활의욕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푸근하고 푸른 일이 우거진 가로수길을 걷다보면 시각적으로도 정신적 휴식을 얻을 수 있듯이 나무란 인간에게 무궁한 생명감을 주는 것 같다.

6월의 동경시내는 높은 빌딩을 둘러싼 푸른 나무가 매우 울창하게 보였다. 大倉場은 이러한 숲길 어느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京王프라자호텔 에미민스홀에서 옹고 1,200명의 디자인 학회 멤버를 가진 비교적 큰 학회로서 강연, 심포지움 그리고 〈나무와 人間관계〉展示가 다른棟에서 크게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 의미깊은 일은 한국가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하여 회원중 강의가 끝난 후 줄을 지어 질문하여 답변에 고충이 컸던 일이 기억된다. 이국인들의 이와같은 관심도를 보고 사계분야의 우리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함을 절실히 느꼈다.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1, 706호

건축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중 “이수하고”를 각각 “마치고”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6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제4조 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중 “1부”를 각각 삭제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면허증등의 갱신) ①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하며, 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및 면허수첩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면허증 및 면허수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받지 아니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을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 동항제1호중 “관계법령에 저촉여부”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로, 동항제2호중 “설계도서등의 합치여부”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로 한다.

① 단독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는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②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수 이상의 건축사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책임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이하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인이상

2.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인이상

3.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3인이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건축사의 연대책임) 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책임건축사를 정한 경우에는 책임건축사)가 법 제2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범위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련된 건축관계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한다.

제27조중 “건축사사무소내에”를 “건축사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로, “등록증을”을 “등록증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표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보수기준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한 보수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인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종전 제28조) 제2항중 “(합동사무소의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건축사)”를 “(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소속건축사)”로 하고, 제30조(종전 제29

〔별표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구분	등 록 기 준		
	건 축 사	건 축 사 보	사 무 실
단독	1인이상	2인이상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종합	3인(인구 10만이하의 시 및 군이하의 행정구역인 경우에는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이상	4인이상(건축분야의 건축사보 3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토목·전기·기계·화공·통신·환경관리·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1이상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보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제31조 내지 제33조로 하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중 “제24조 및 제27조”를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29조”를 “법 제29조”로, 동호중 “폐쇄명령 및 등록말소”를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및 건축사사무소의 등록말소”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별표1]의 제목 공사감리의 구분·대상·방법 및 범위 다음에 “(제2조관련)”을

추가한다.

[별표1] 중 1. 종합공사감리란의 대상란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위 반 내 용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본직·성명·생년월일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1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2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법 제8조 제3항 50,000이하
2	건축사의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3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5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법 제8조 제3항 10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8조 제3항 300,000이하
3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법 제11조제3항 50,000이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11조제3항 100,000이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11조제3항 200,000이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11조제3항 250,000이하
4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성명·건축사사무소소재지·건축사보)을 변경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일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2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5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10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법 제27조제1항 150,000이하
5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3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5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법 제27조제1항 100,000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	법 제27조제1항 300,000이하

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 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 (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 2조 제 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 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1984. 12. 31 법률 제 3,767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등에서 건축분야의 과목을 전공한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건축사보의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 등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등에 대하여도 새로이 건축사보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완화함(령 제2조의 2 제 3호).

나. 종래에는 건축사의 자격시험중 제 1차시험의 시험과목을 건축구조·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과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建築史를 추가하여 시험과목을 늘림(령 제 8조제 1항 제 1호 라목).

다. 종래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으로서 단독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건축사보 1인 이상,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건축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사 1인 이상, 건축사보 2인 이상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고, 새로이 인정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건축사 3인 이상, 건축사보 4인 이상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령 제23조 제 1항 및 별

표 2).

라.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그 규모가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규모가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한하도록 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령 제 25조 제 1항).

마. 건축물의 내설있는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의 확보를 위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이하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책임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함(령 제25조 제 2항).

바. 행정관청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그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34조 및 별표 3).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 건설부령 제387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의 2중 “도시계획구역중”을 삭제하고, 동조중 “동일건물”을 “복합용도(부속용도를 제외한다)의 건축물(이하 “복합건축물”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중 “제29조”를 삭제한다.

제 4조 제 1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2호중 “도시계획구역중”을 삭제한다.

1.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시설과 공동주택의 피로티에 설치하는 주차시설

제 4조 제 1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특정가구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의 주택이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시설과 동 복합건축물의 피로티에 설치하는 주차시설

제 4조 제 2항중 “제 1항 제 2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물로”를 “공동주택에 제 1항의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건축물로”로 하고, 동조제 3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 제2호의 일반업무시설

제 5조 제 2항을 삭제한다.

제 7조 본문중 “계벽”을 “정계벽”으로 한다

제 8조 제 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2항중 “기준척도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기준척도로 하여 정하여야 하며, 옥상 및 발코니의 난간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적합하여야 한다”를 “적합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품질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난방구획등의 설치) ①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난방구획을 구분하되,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초과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으로 난방구획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하거나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함께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폭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지안의 전체 세대수가 20세대미만인 경우라도 도로의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도로의 폭은 6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대지안의 전체 세대수	도로의폭(미터)
20세대미만	4
2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6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12
1,000세대이상	18

제14조 제2항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도로(이하 “단지내 도로”라 한다)의 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도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의 표의 구분란중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를 진입도로에 이르는 단지내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4항)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5항)중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6항)중 “대지안의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7항)중 “도로”를 “도로(단지내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중 “세탁장등”을 “다용도실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의 행정구역안인 경우”를 삭제한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주된 침실을 말한다)까지 채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마다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사와 난방점용의 연탄이궁이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중 “대지안의 도로의 양측에는 서로 엇갈리게 하여” “단지내 도로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폭 8미터이상의 단지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대지면적은 세대당 0.3제곱미터이상 0.9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그 최소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대지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안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건축물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 예·체능계강습소 및 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제24조 제2항중 “5미터이상”을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안에 수세식 공중변소(대변기1, 소변기2, 세면기 각 1개이상)및 음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이용 가능한 공중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중 “도시계획구역중”을 삭제하고, 동조중 “동일건물로”를 “복합건축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내부, 피로터 및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벽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본문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판매용건축물”을 “의료시설을 판매시설”로,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희망자”를 “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택의 규모”를 “그 규모”로, 동조제2호중 “주택의 규모”를 “그 규모”로, “의원 1개소이상”

을 “의원 또는 병원 1 개소이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일반목욕장) ① 세대별로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1천세대이상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일반목욕장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일반목욕장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목욕장을 판매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일반목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그 대지면적은 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그 최소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이용원·미용원 및 탁구장·태권도장·헬스크럽등의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목욕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 이어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체육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 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안에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등을 1 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또는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시설외에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1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2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정구장 1면이상을 추가 설치하거나,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공동저수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3톤(고기수조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톤 이내의 고기수조 저수량을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하고, 50세대마다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양수시설은 일일양수량이 세대당 0.1톤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0.3톤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제조장·장 의사 및 동물병원을 제외한다)·병원 및 관리사무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별표1]의 제목 단위평면 및 각부위의 첫수 다음에 “(제5조 제1항 관련)”을

추가하고, 동표의 거실 및 침실의 단위평면의 기준척도란중 “1번”을 각각 “각번”으로 하고, 동표의 욕실(화장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엌(식당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식당의 단위평면의 기준척도란중 “1번”을 “각번”으로, “30센티미터”를 “10센티미터”로 한다.

[별표3]의 제목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등의 기준 다음에 “(제9조 제2항 관련)”을 추가한다.

[별표4]의 제목 내부마감재료 다음에 “(제11조관련)”을 추가하고, 동표중 “다만, 품질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5]를 별자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 놀이시설의 종류별 규격 및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놀이시설의 종류	규격	설치기준
그네	높이 2미터이상, 2인용	○50세이하인 경우에는 2종이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4종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세대이내의 증가마다 1종의 시설을 추가하되 그네·미끄럼 또는 씨이소오를 우선하여 설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시설의 중복은 피한다.
미끄럼	높이 2미터이상, 상계판의 넓이 2제곱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	○놀이시설의 주변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모래를 깔아야 한다.
씨이소오	씨이소오판의 높이 0.5미터이하, 씨이소오판의 길이 3미터이상, 씨이소오판 3개이상	○놀이터에는 피고라 및 5인용 긴의자 6개(5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3개이상) 이상을 설치한다.
기타놀이시설	어린이의 유희·건강·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보편·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	
모래판	넓이 6제곱미터이상, 모래 두께 0.3미터이상	○놀이터마다 1개소이상 설치한다.

共同住宅 各種規制 大폭 완화

販賣시설 허용·進入路幅도 4m로
건설부, 새基準 마련 22일부터 施行

건설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 판매시설의 용도를 넓히는 등 각종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시켰다.

이번 완화조치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기준이 마련돼 각종 민원을 야기시켰던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제한 ▲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 진입도로의 폭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난방구획의 분리, 체육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고층아파트의 경우 10층까지는 2개, 11층 이상은 5개층이 초과될 때 마다 1개소씩 추가하고 1천가구 이상에만 설치하도록된 배구장·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5백가구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된 건설기준은 판매시설에는 판매용도와 이·미용원, 의원 등 일부시설만 들어설 수 있던 것을 이를 근린생활 시설로 확대, 대중음식점, 다방, 예·체능계 강습소, 복덕방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및 목욕탕 건물도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유치원은 그 일부를 독서실·예·체능계 강습소로, 목욕탕은 이·미용원·탁구장, 태권도장, 헬스크럽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용면적 35평 이하의 공동주택에도 욕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진입도로를 현행 폭 6m에서 4m로 완화해 주었다.

또 놀이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 도시재개발지구 등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복합건물)에는 옥상이나 실내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하고 공동주택의 놀이터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철봉 등 7개 종류의 시설로 제한하던 것을 바꿔 구름다리 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새로운 건설기준을 22일부터 곧바로 시행키로하고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은 종전기준대로 건립하도록 했다.

주택 관련 지구도 '복합건물'

九老·千戶洞에 첫허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도 복합용도의 건물이 허가된다. 서울시는 사업인가를 내줄 九老2구역(九老洞73의 15일대)의 재개발사업에 상가겸용 복합건물 건축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大林전철역 앞 변전소 옆인 九老2구역 사업은 1만 1백67㎡(3천80평)에 자리잡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15층짜리 상가겸용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하2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사용하고 4층부터 15층까지는 22평형 아파트 1백18가구가 들어서 기존 건물 주인들에게 분양된다.

千戶洞내거리동쪽 간선도로변인 千戶2구역 사업은 9천 1백69㎡(2천 7백78평)에 지하1층 지상11층 건물을 지어 3층까지는 상가로 쓰고, 11층까지는 아파트 1백60가구(23평형 88가구, 28평형 40가구, 36평형 32가구)를 넣은 것으로 이 지역 사업도 86년말에 끝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인가를 내줄 돈암2구역과 上溪4구역 재개발사업도 복합건물 건축을 허용할 예정인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복합건물을 허가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交易·營業 중심지로 개발

三成洞 무역센터 주변 8萬여坪

이 지역을 서울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중인 이 설계안에 따르면 전체 19만 7천평방m(6만평)의 대지에 연건평 약 50만평방m(13만 6천 3백평) 지하3층 지상 54층의 한국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주변 폭 10m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누릴지 이상의 대지를 합병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주변에서 가장 넓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한다는 것.

또 이 일대에는 종합무역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 공동주택, 음식점, 위험시설물, 차고, 새차장, 여관 등을 특성에 맞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짓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蠶室大路와 永東大路 테헤란로 및 泰恩路에 인접한 건축물은 1층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테헤란로 주변에 건립되는 백화점과 호텔 앞에는 폭 35m의 가로광장 및 공지를 조성, 동행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三成네거리 주변과 永東大路변에 가로광장과 조각공원 등을 만들어 보행인의 출입과 휴식활동공간으로 확보토록 돼있다.

이밖에 종합무역센터 서쪽 폭 20m의 도로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泰恩路 주변 경사지에 주차장과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한다는 것.

한국종합무역센터가 들어서는 江南구三成동 159, 154, 148, 147일대 27만 8천 8백평방m(8만 4천 5백평)가 대단위 교역 및 업무중심지구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한국종합무역센터 및 주변 도시설계안을 작성, 해당지주들에게 공람중이다. 서울시는 공람이 끝나면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 오는 9월까지 건설부승인을 받아 확정, 발표키로 했다.

明洞洞 도시설계마련

高德상업지역 9만 1천㎡ 개발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고덕지구 중심상업지역을 고덕생활권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도시설계안을 마련했다. 고덕아파트단지 중앙에 자리한 상업지역은 모두 9만 1천 6백 80㎡(2만 7천평)로 이 지역에 들어설 건물의 위치 용도 및 주차장 휴식공간 등 공공시설을 도시설계로써 마련했다.

이 지역에는 백화점을 비롯 시장, 업무용 빌딩, 숙박,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며 보행안을 위한 전용도로 및 전용광장이 조성되며 단지의 상징조형물도 세워진다.

한편 도시설계가 마련됨에 따라 고덕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필지별로 민간에게 이를 분양하고 주차장 녹지 등 공공부분은 토개공에서 조정해 주기로 했다.

회계

□ 서울지부=△송성기회원/
연우건축사사무소 / 중구충림
동355 / 392-3629

△이종규·김학호회원 / 주식회사삼
용건축사사무소 / 강서구등촌동547-3
/ 603-0121

△김성문회원 / 김정문건축사사무소
/ 강서구등촌동553-6 / 605-2364

△김천복·한선복회원 / 내외건축연
구소 / 강남구논현동249-9
545-0957, 5379

△박배원회원 / 우림건축공간연구소
/ 종로구창성동131 / 723-4410

△유진형회원 / 에일건축연구소 / 은
평구응암동93-5 / 352-0550

△노형래·장영주·김윤식회원 / 건
축사사무소건정건축 / 강남구역삼동
696-35 / 567-4638, 566-2624, 567
-6735

△이태희·우상열회원 / 우림종합건
축사사무소 / 강남구서초동441 / 584-
6171, 584-6172

△유승근·박세웅회원 / 삼신종합건
축사사무소 / 용산구이태원동34-145/
798-9086, 9087

△장태수·최한호·김영중회원 / 중
원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삼성동8
-4 / 545-3075, 546-1806, 545-
6556

△엄덕문·송명규회원 / 삼원건축설
계사무소 / 영등포구여의도동13-25/
784-7378, 784-7379

△이조원회원 / 세기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수표동47-6 / 266-4267

△소진성·홍성일회원 / 홍건축합동
설계사무소 / 강서구등촌동553-8 /

694-3646, 693-9752

△이용의·이규재회원 / (주) 동익건
축설계 / 영등포구여의도동45-15 /
783-7736

△서중석회원 / 이화건축설계사무소
/ 성동구구의동246-14 / 444-0022

△최재철회원 / 태천건축사사무소 /
강동구성내동539-2 / 477-0694

△오정권·김종현회원 / 건축사사무
소정인 / 강남구청담동1 / 545-6193,
6194

△방성·조남현회원 / 예진사합동건
축설계사무소 / 영등포구당산로3가80
-6 / 633-0816, 634-6296

□ 부산지부=△송국용회원/송웅건
축사사무소 / 남구남천동11-13 / 622-
0245

△정진영회원 / 부산종합건축사사무
소 / 남구남천동11-13 / 623-0998

△박영순회원 / 부산종합건축사사무
소 / 남구남천동11-13 / 623-0998

□ 대구지부=△김제수회원/영남건
축사사무소 / 중구대봉동60-10 / 46-
4434

△김주학회원 / 신한진건축사사무소
/ 북구노원1가366 / 352-3388

△한석인·안승재회원 / 한성건축사
사무소 / 중구동인1가116 / 45-6768

△김중배회원 / 서부건축사사무소 /
서구비산동391-3 / 22-5772

△이길웅회원 / 이길웅건축사사무소
/ 서구비산동389-5 / 252-3434

△김영두회원 / 남강건축사사무소 /
중구대봉동60 / 45-4358

△이부상회원 / 정원종합건축설계사
무소 / 북구고성2가33-1 / 352-8445

△박해권회원 / 박해권건축사사무소
/ 서구평리동1072-26 / 52-1900

△최병윤회원 / 부일건축사사무소 /
서구평리동1072-23 / 52-1900

△김용운회원 / 삼보건축사사무소 /
중구동문동9-36 / 44-4678

△오인준회원 / 삼보건축사사무소 /
중구동문동9-36 / 44-2728

△서보광회원 / 동성건축사사무소 /
동구신천3동139-3 / 754-2301

△라정도회원 / 정밀건축사사무소 /
수성구범어동13-17 / 756-3560

會員

△라종택회원 / 라종택건축사사무소
/ 수성구범어동13-17 / 756-4343

△장기웅·홍효용·임윤상회원 / 대
우종합합동건축사사무소 / 중구대봉동
60-10 / 44-7764

△임팔암·이상렬회원 / 동인건축사
사무소 / 중구동인2가52-4 / 44-
8098

△정본진회원 / 세아건축사사무소 /
중구동인1가115-6 / 44-2729

△서상길회원 / 범아건축사사무소 /
중구대봉동60-10 / 45-9891

질서지켜 명랑휴가 분수지켜 건전휴가

△김홍대회원 / 홍익건축사사무소 /
중구대봉동60-10 / 46-0335

△이문환회원 / 한미건축사사무소 /
중구대봉동60-10 / 45-3334

△서종달·유배근회원 / 도시건축사
사무소 / 중구동문동13 / 45-3216

△송창섭회원 / 공간건축사사무소 /
중구삼덕1가55-47 / 423-4200

△김팔섭·김원회원 / 환경건축사사
무소 / 중구공평동13-4 / 45-4450

△홍성규회원 / 환경종합건축사사무
소 / 중구공평동13-4 / 45-4460

△이재덕회원 / 이재덕건축사사무소
/ 부천시원미동88-8 / 652-4291

△조영석회원 / 조영석건축사사무소
/ 김포군김포읍북면리408 / 652-8732

△강석준회원 / 강석준건축사사무소
/ 부천시원미동74-6 / 62-3361

△임정남회원 / 임정남건축사사무소
/ 광명시철산동464-5 / 613-0945

△손원태회원 / 손원태건축사사무소
/ 부천시원미동91-3 / 63-0525

□ 충북지부=△최용묵회원/동서건
축설계사무소 / 재천시중앙동79-8
2-0479

△이금열회원 / 이금열건축사사무소
/ 충주시역전동659-19

□ 전남지부=△이하규회원/대성전
축연구소 / 동구대인동32-10 / 34-
5755

□ 제주지부=△박한석회원/성화건
축사사무소

□ 부산지부=△변규택회원/
남원건축설계사무소 / 여흥/
85. 5. 7 / 금호예식장

□ 인천지부=△김기배회원/대아건
축설계공사 / 장녀 / 85. 5. 24 / 공군
회관

□ 경기지부=△정해준회원/장남/
85. 5. 4 / 북화예식장

△김동명회원 / 차녀 / 85. 5. 12 /
목화예식장

□ 충남지부=△임친구회원/여흥/
85. 5. 12 / 서울꽃가마예식장

△최봉갑회원 / 여흥 / 85. 5. 12 /
예산음신라예식장

△박찬영회원 / 여흥 / 85. 5. 13 /
대전예식원

□ 인천지부=△유복성회원/
유성건축설계사무소 / 부천 /
85. 6. 9 / 녹음정

□ 충남지부=△오영치회원/
모친 / 1985. 4. 30 / 경남영
양군영감면감천동자택

□ 서울지부=△한광희회원/
가산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81-30 / 85. 5. 29

△이강수회원 / 동산합동건축설계사
무소 / 영등포구당산3가228-23 / 85.
5. 24

△김영록회원 / 명성조일합동건축 /
중구홍인동116 / 85. 6. 10

△김기환회원 / 가정건축 / 강남구논
현동237-10 / 85. 6. 17

△경남지부=△안팔경회원/한려건
축연구소 / 경남마산시서성동66-2 /
85. 5. 22

△김주열회원 / 할레루아건축
사사무소 / 강서구화곡동1026
-12 / 85. 6. 1 / 697-2266

△임영희회원 / 대륙건축설계사무소
/ 관악구봉천동1590-7 / 85. 6. 17
/ 877-3166

□ 서울지부=△김병일회원/
서울건축설계사무소 / 강서구
신정동1031-5 / 85. 6. 19 / 696-
5886

□ 서울지부=△신영천회원/
신영천건축사사무소 / 영등포
구여의도동14-35 / 전남 / 85. 4. 20
/ 783-2975

□ 경기지부=△김순세회원/김순재
건축사사무소 / 남양주군미금읍지금리
181 / 85. 5. 31 / 서울 / 7-3544



△박해룡회원 / 신도심건축사사무소
/ 중구교동70-26 / 422-3676

△최성덕회원 / 도심건축사사무소 /
중구교동70-26 / 422-3686

△황용주·이종만회원 / 세화건축사
사무소 / 수성구범어3동1-8 / 44-
0234

□ 경기지부=△최동륜회원/최동륜
건축사사무소 / 성남시태평동3309-465
/ 2-6257

△김창규회원 / 김창규건축사사무소
/ 성남시태평동3309-329 / 3-1708

오손도손 보낸휴가 가족단합 이웃단합

Hawaii Loa Colleg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Pacific Center for the Media Arts

Founded in 1963, Hawaii Loa College is a small liberal arts college, located twenty minutes from Honolulu on the Hawaiian island of Oahu. The principle mission of the College is international education, with a focus on the cultures of the Pacific Basin (Asia, S.E. Asia, Polynesia/Oceania and the Americas). The liberal arts emphasize the literacies necessary for productive survival in the 21st Century: value assessment, computer and informational technologies, imaging and sound media, and cultural literacy.

Toward this mission, the College is establishing a center for the media arts, a facility that will combine state-of-the-art media technology and multi-cultural performance spaces. Uniquely situated in the heart of the Pacific Basin, this center will have several major objective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College's overall goals:

- Study and teaching of media arts* from various cultural perspectives, through the use of media arts.
- Audio/video/data production* that document the cultures of the Pacific Basin.
- Creation of new forms of expression* through emerging media arts technologies.
- Exhibition and performance of media and performing arts* from around the world. The center will be ideally situated for international touring companies.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media tools, media art forms and applications.*
- Archival preservation of media art and research produced at the center.*

The Competition

The College has received funding from the Design Arts program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and the Cooke Foundation, Ltd. to conduct a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design of a building to house the center for the media arts.

The sponsors are conducting a *one-stage, two-board concept competition* for the design of the building. The building, approximately 75,000 square feet, currently has a \$6.5 million construction budget, with an additional \$3 million equipment budget. The building will also have two gardens and a small amphitheater.

Eligibility

The competition will be open to all persons, teams or firms who can: 1) register with Competition Advisor, including the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 on or before 5:00 pm PST, September 17, 1985; and 2) satisfy the design and presentation requirements of the technical building program. Official registrants will receive the Registration Kit which will provide all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competition, including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Prize

The College will award a \$15,000 prize to the winner, and plans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winner for the commission to prepare designs and contract documents for the building. However, the College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the winner to team up with a Hawaii architect for the production and contract administration of the work.

Requirements

Each submission will require a *two-board entry* consisting of an illustrated masterplan, floor plans, a cross-section, and two "eye-level" perspectives. All entries will be anonymous. For an Official Registration Kit, send: 1) a check (non-refundable) in the amount of \$75. U.S. funds made payable to Hawaii Loa College; and 2) name, phone number and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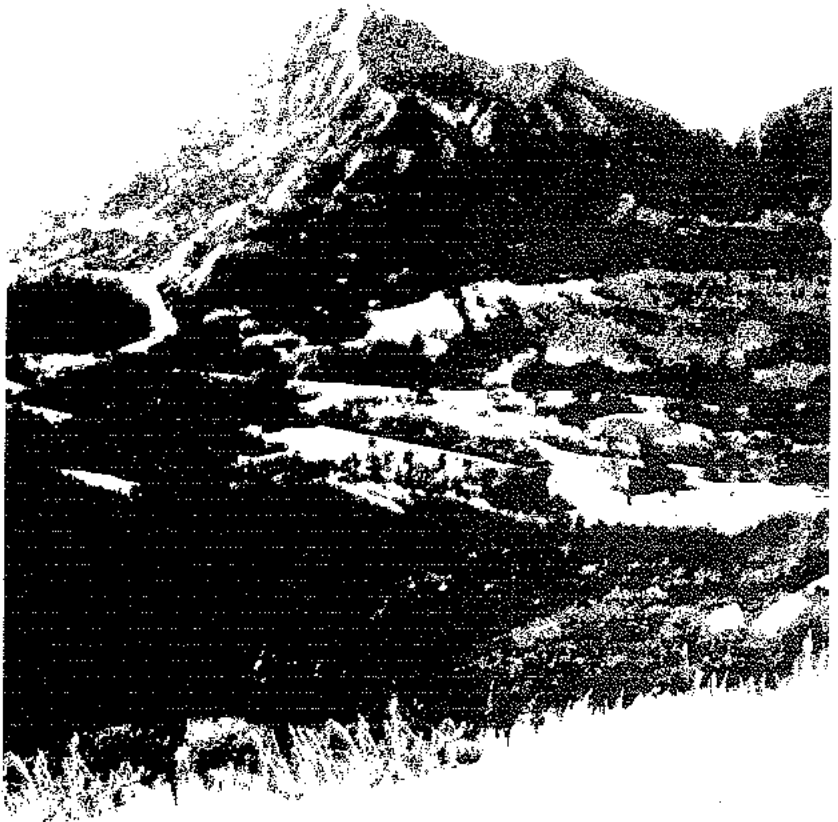
address to which the kit should be mailed to:
Michael Robinson, AIA, AICP
Competition Advisor
c/o Hawaii Loa College
45-045 Kamehameha Highway
Kaneohe, Oahu, Hawaii 96744

Schedule

September 17, 1985	Registration due
October 1, 1985	Registration kit sent to official registrants
November 15, 1985	Questions must be received by Competition Advisor
December 15, 1985	Answers sent by Competition Advisor
January 31, 1986	Entries must be received at Hawaii Loa College
February 17-21, 1986	Entries will be juried
February 21, 1986	Public announcement of winner

Jury

Chairman, Michael John Pittas, AICP, Hon. AIA,
Dean, Otis Art Institute of Parsons School of
Design, Los Angeles, California



John Andrews, Hon. FAIA, John Andrews International, New South Wales, Australia
Philip J. Bossert, PhD, President, Hawaii Loa College, Kaneohe, Oahu, Hawaii
John Morris Dixon, FAIA, Editor, *Progressive Architecture*, Stamford, Connecticut
John M. Hara, AIA, John Hara Associates, Honolulu, Hawaii
Arata Isozaki, Hon. FAIA, Arata Isozaki and Associates, Tokyo, Japan

Competition Management

Vision, Inc.,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Design and Education, 219 Concord Avenue, Cambridge, Massachusetts, is developing the program and managing the competition for Hawaii Loa College. Joyce Meschan is Project Director for the competition. Michael Robinson, AIA, AICP, is Professional Advisor. Barry Levine, Photon Media Group, Boston, Massachusetts is Media Consultant. Camille H. Aimey is Competition Coordinator for Hawaii Loa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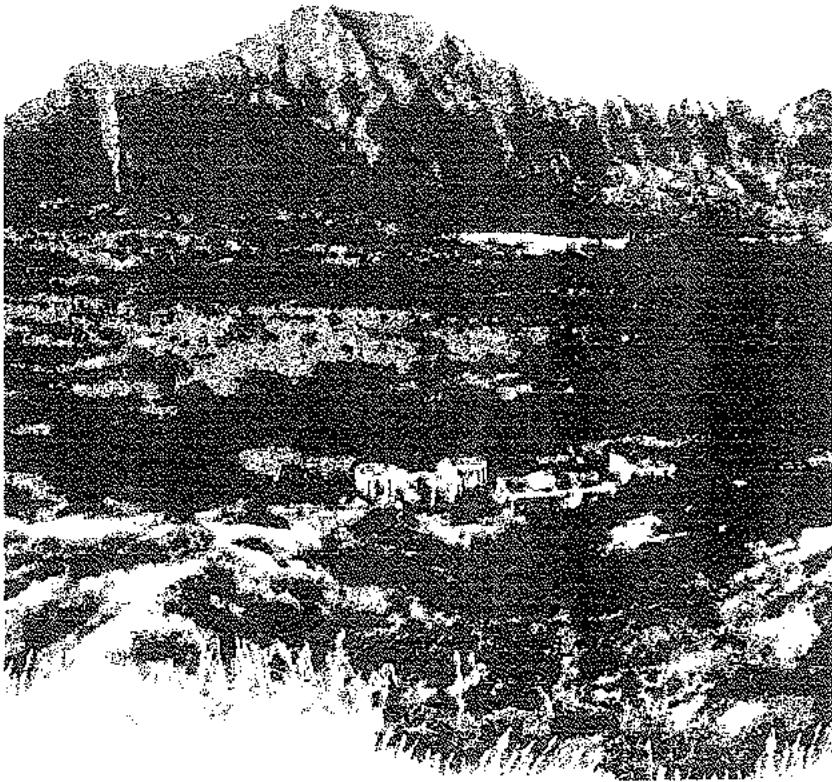
Sponsor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Cooke Foundation Limited
Hawaii Loa College

하와이 LOA 대학

국제설계

현상모집



매체예술을 위한 PACIFIC 센터건립

하와이의 로아대학은 1963년에 건립된 조그마한 학예대학으로 오아후(OAHU)의 하와이섬 호놀룰루로부터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대학의 주요사명은 태평양 연안(아세아, 동남아시아, 폴리네시아, 오세아니아 및 미주)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교육의 실시이다. 학예에 있어서는 21세기의 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읽고, 쓰기를 강조하고 있고 가치평가, 컴퓨터, 정보기술, 영상 및 전한 매체 그리고 문화적으로 읽고, 쓰기 등이다.

이같은 사명을 위하여 본 대학이 매체예술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STATE-OF-THE-ART) 통용하고 있는 매체기술과 다양한 문화적 공연 공간이 합쳐진 그런 시설물이다.

태평양 연안 심장부에 독특하게 위치해 있는 이 센터는 이 대학의 건립목표에 공헌할 몇몇 주요과목들을 갖게 될 것이다.

- A) 매체 예술들을 이용한 여러가지 문화부분에서 비롯한 매체예술의 연구 및 교육
- B) 태평양 연안 문화를 수록한 오디오 비디오 테이타의 생산
- C) 출현하는 매체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표현창출
- D)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연술과 매체의 공연 및 전시

E) 새로운 매체의 용구, 매체술의 형태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F) 이 센터에서 생산된 매체술 및 연구에 대한 기록보존

현 상 모 집

본 대학은 매체예술을 위한 센터를 건립코자 그 설계를 위해 국제현상모집을 하려고 예술을 위한 국가 기부금중 설계예술의 사업계획으로부터 그리고 주식회사 쿠키(COOKE)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그 주최자측은 그 건물설계를 위한 한단계, 두 위원회에서 기본설계의 현상을 실시코자 한다.

그 건물은 약 75,000 스퀘어 피트이고 자금 \$ 6,500,000 예산과 \$ 3,000,000의 설비물의 예산을 갖고 있다. 그 건물은 역시 2개의 정한 및 작은 원형 극장을 갖게 될 것이다.

용 도 자 격

그 현상은 다음 사항을 할 수있는 사람, 팀, 혹은 회사에게 공개한다.

- 1) 1985년 9월 17일 태평양 기준으로 오후 5시 정각이나 그전에 등록비 지불을 포함해서 현상의 교문역과 함께 등록을 해야하고,
- 2) 기술적인 건물 사업계획상에 설계 및 설명요구사

항을 충족해야하고 공식등록자는 자세한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줄 등록양식을 받게 될 것이다.

상 금

본 대학은 당선자에 대해 \$ 15,000을 수여할 것이며 건물의 계약서류 및 설계준비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런데, 본 대학은 당선자에 대해 이일의 계약업무 및 도면생산을 위해 하와이 건축가와 팀구성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요 구 사 항

모든 제출물은 설명자료류 쓴 기본계획, 총괄계획, 단면도 그리고 눈높이의 루시도들로 구성하여 두 위원회에 용도한 것을 요구한다.

1) 공식등록 양식으로서 하와이 대학에 지불보류된 비용 \$ 75(상환불납)의 수표를 보낼것.

2) 그 양식이 회송될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Michael Robinson, Aia, Aicp
Competition Advisor
C/O Hawaii Loa College
45-645 Kame Hameha High Way
Kaneohe, Oahu, Hawaii 96744

일 정 계 획

- 1985. 9. 17 등록예정
- 1985. 10. 1 공식등록자에게 등록양식 송부
- 1985. 11. 15 현상담당관이 제안질문을 받음
- 1985. 12. 15 현상담당관에 의해 해당승부
- 1986. 1. 31 하와이 로아(LOA) 대학에서 옹모접수
- 1986. 2. 17~21 옹모작품 심사
- 1986. 2. 21 당선자 공표

실 사 위 원

p.88의 Jury 項 참조.

현 상 관 리

Vision 회사, 환경설계 및 교육센터로서 Massachusetts cambridge concord avenue 219에 위치해 있으며 본 대학 현상문제를 관리하고 진행해 가고 있음.

Joyce Meschan은 현상을 담당한 이사이고 Michael, Robinson, Aia, Aicp는 전문가이며 Barry levine은 Photon Media Group(Boston Massachusetts)에 있는 매개체의 상담업이고 Camille H. Almy는 본 대학의 현상관계 담당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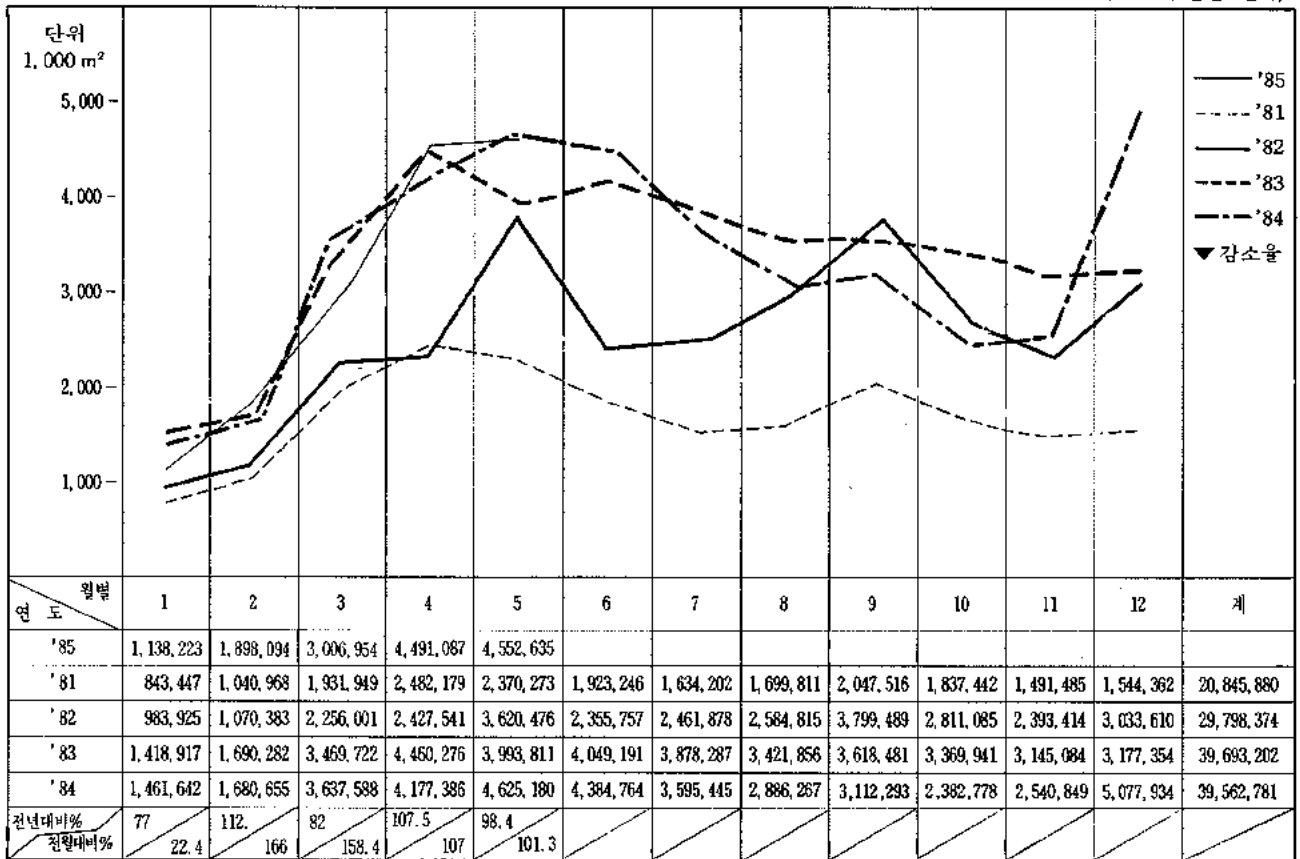
주 최 자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Cooke Foundation Limited
Hawaii Loa College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5. 5 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5. 5 월말 현재)

